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027-10

#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Child Protection Service Manual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안내

본 매뉴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책임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원칙 및 기준·절차 등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참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복지법 제4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매뉴얼 활용범위

- 주 사용자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미배치 지역은 시군구 아동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 참고 사용자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아동복지(사회복지) 담당 공공부문 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민간 아동복지시설 업무담당자, 아동복지 관계자 등

#### • 매뉴얼 활용방법

- 매뉴얼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업무 가이드라인
- 매뉴얼 지침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 관련 담당자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민간 담당자들은 아동보호 흐름과 절차를 인지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업함

##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I.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배경······	3
1. 현황 및 문제점	
2. 그 간의 추진 경과	3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4
Ⅱ.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5
1. 아동	
2. 보호대상아동	
3. 피해아동	
4. 보호자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6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g
- 1. 개요·····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4.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전후 조치 사항	
V.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	54
1. 아동학대 등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2. 빈곤 등 위기가구 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상담·조사·사정 ········	63
1. 개요 ·····	63
2. 수행주체	63
3. 수행시기	64
4. 수행방법	64
II. 보호계획 및 결정······	72
1. 개요 ·····	72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72
3. 사례회의 운영	77
4. 보호조치 결정(사례결정위원회)	78
Ⅲ. 보호조치 ······	84
1. 개요 ·····	84
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계획 수립·제공······	84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89
IV. 종결······	98
1. 개요 ·····	98
V. 사후관리 ····································	109
1. 개요 ·····	109
2. 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한 아동	
3. 연령 초과로 종료된 아동(자립지원)	



## 제3부 부록

١.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119
	2. 사례결정위원회('21.6.30.~) ·····	123
ΙΙ.	아동위원 제도 운영	127
	1. 목적	127
	2. 운영 방안	127
Ⅲ.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131
	1.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개요	131
	2.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절차 (예시)	
	3.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표준내용 (예시)	133
I\/	인양기과 혀화	136







# 제4부 서식

ĺ	. 아동보호 서비스 서식	137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141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보호대상아동)	145
	[서식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입양대상아동)	147
	[서식 3] 욕구조사표	149
	[서식 4] 일시 보호 의뢰서	161
	[서식 5] 친부모 상황 점검표	163
	[서식 5-1]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170
	[서식 5-2]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172
	[서식 6] 아동 상황 점검표	173
	[서식 7] 아동카드	180
	[서식 8] 개별보호·관리계획서 ·····	183
	[서식 9] 양육상황 점검표	187
	[서식 10] 가정 복귀 점검표	190
	[서식 11] 가정 복귀 의견서	194
	[서식 12] 종결심사서(사례결정위원회 상정)	196
	[서식 13] 양육계획서(보호자용)	198
	[서식 14]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200
	[서식 14-1] 사례회의록	202
	[서식 15] 보호결정(변경) 통지서	204
	[서식 1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206
	[서식 1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207
	[서식 17-1] 사후관리 점검표	208
	[서식 18]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210
	[서식 19]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211
	[서식 20]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213
	[서식 21]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214
		PROPERTY

# 

[서식	22]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215
[서식	23]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216
[서식	24]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217
[서식	25]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218
[서식	26]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219
[서식	27]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220
[서식	28]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221
[서식	29]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222
[서식	3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223
[서식	31]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224
[서식	32]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225
[서식	33]	입양동의서 ····	226
[서식	34]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27
[서식	35]	입양동의 철회서	228
[서식	3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229
[서식	37]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230
[서식	38]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231
[서식	39]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233
[서식	40]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235
[서식	4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236
[서식	42]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237
[서식	43]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아동보호전문기관)	238
[서식	44]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보호자용)	241
[서식	45]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보전용)	242
		-1]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서식	46]	가정환경 조사서(아보전용)	244
[서식	4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247





## 표 목 차

〈표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 29
〈표 3〉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
〈표 4〉 아동보호수행 인력별 역할 ···································
〈표 5〉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사례관리 기준         55
〈표 6〉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준 55
〈표 7〉사정 시 고려사항······· 68
(표 8) 사례회의 종류78
〈표 9〉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80
〈표 10〉 가정위탁 절차······ 85
〈표 11〉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86
(표 12)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91
(표 13) 아동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91
〈표 14〉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 113
〈표 15〉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주요비교 ····································

## 그림목차

〈그림 1〉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1	7
〈그림 2〉아동보호 저담인력별 주요 역할	1	8



##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 Ⅰ.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배경

#### 1. 현황 및 문제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지자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현실에서 미작동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 시·군·구당 보호대상아동(평균 196명) 담당 인력은 평균 1.2명('19.4월)
-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 의뢰한 후 민간기관 위주의 보호가 지속되고, 보호자 의뢰가 없는 경우 아동 상황 변경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 및 원가정 복귀 절차가 지자체 내에 부재

#### 2. 그 간의 추진 경과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16.3. 개정, '18.3. 시행) ※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양육상황 점검,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제정 및 지자체 배포('17.6.)
- 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반영('17.7.)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 보호전담요원(334명) 시·군·구 배치('20.10.~)
- <u>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21.1)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190명 추가, 총 524명)</u> 배치('21.10~)

####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고 적절성 평가 및 변경하는 환류체계 구축
  - (상담 및 가정조사) 보호조치 결정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 환경에 대한 조사
  - (개별보호·관리계획)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 (양육상황 점검)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및 종결 여부 지속적으로 확인
  - (사후관리) 연령도래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아동의 분리 사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및 필요한 조치 수행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보호조치)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 보호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유형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
  -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피해아동 등에 대한 가정복귀가 적절한지 여부 등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보호조치 종결을 결정
-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투입 범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별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
  - (통합정보시스템) 아동에 대해 지자체-민간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 지원
  - (원가정 복귀 지원) 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통해 아동이 원만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아동-부모 간 만남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 도입



## Ⅱ.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 1. 아동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
  -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
- 보호 필요성, 아동 욕구, 서비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보호대상아동 기간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

#### 2.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넓은 의미로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이하 '취약 아동'이라 함)
  - ※ (예시)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부모의 수감·알콜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 3.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8항)

#### 4. 보호자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



##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 **Tip**

- ◆ 부모 등 보호자 가운데 가족과 관계가 있는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사례의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함.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 보호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결정
-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 개정. '16.3.22. / '18.3.23. 시행)

#### 3.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함
  -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u>5항</u>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 4.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3월)

#### 5.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우 화경에서 보호

####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원칙

- \*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
- 우리나라는 '91.11.20. 비준
- (2조: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 (3조: 아동 이익 최우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6조: 생존·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 (12조: 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 1. 개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원가정 복귀 → ④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u>친족에 의한 보호·양육</u>,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u>친족에 의한 보호·양육</u>,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형 보호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최대한 연계·지원하도록 함
  - 원가정에서 보호가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되, 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친족에 의한 보호·양육</u>,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의3)

####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 가 원가정 보호(복귀)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 주요 내용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연계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u>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드림</u> 스타트에 우선적으로 연계
  - 만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나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 주요 내용 : 「민법」제777조제1호(8촌 이내의 혈족) 및 제2호(4촌 이내의 인척)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친족의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드림 스타트에 연계(만 13세 이상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 <u>다만, 아동을 보호할 친족의 가정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법</u> 제15조제3항의 가정위탁 신청 가능

#### 다 가정 위탁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참고

#### 라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4호
- 주요 내용 :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고려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u>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로 연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등 장애인복지전달</u>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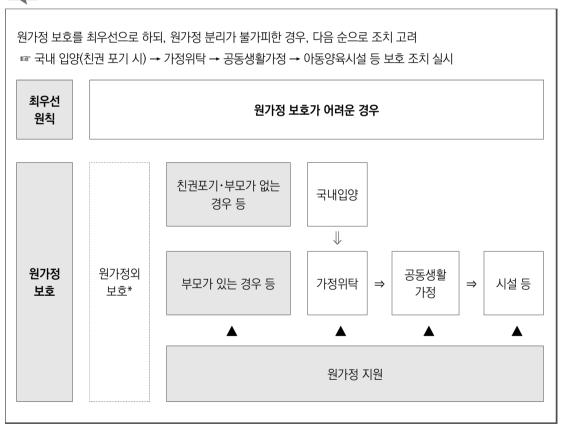
#### 마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
- 주요 내용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

#### 바 입양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입양특례법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호자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도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원가정 보호, 대안 양육 제도 등을 설명하여 보호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를 위해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판결로 입양 성립

#### 참고 아동보호 조치의 기본원칙



#### 참고

####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개요

#### [개념]

- (사업목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아동복지법」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 (사업대상) 0~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등)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다만, 만 13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연령도래 종결시점(만 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시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가능
  - 만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부터 의뢰받은 경우 청소년 지원 기관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실시
    - ※ 만 13~18세 미만의 취약계층아동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우선 의뢰하되,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미배치 시·군·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수행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아동통합사례관리
- 대상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 (수행주체)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부서에 배치된 보건·복지·교육 분야별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사업수행
- (영역별 지원내용) 보건·복지·교육 등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영역	지원내용 예시				
신체/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산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				
부모/가족 통합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2021,6,30, 시행〉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12. 29.〉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 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20. 12. 29.〉
- ①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 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상담·조사·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 접수상담 - 일시보호 - 욕구조사/상황점검	<b>&gt;</b>	-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 사례회의 - 보호조치 결정	<b>&gt;</b>	<ul><li>아동보호 및</li><li>서비스계획수립</li><li>및 제공</li><li>양육상황점검</li></ul>	<b>•</b>	- 종결	<b>•</b>	- 사후관리 - 자립지원

#### • 1단계: 상담·조사·사정

- (접수상담) 최초 방문자를 통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결과에 따른 대상자 접수, 서비스 연계
- (일시보호) 접수상담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보호
- (욕구조사 등) 아동과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 보호서비스 제공 및 방향 등 사정
- 2단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여부)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상담·조사·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사례 관리 등 계획을 수립
  - (보호결정)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

#### • 3단계 : 보호조치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의 분리보호 시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 가정, 양육시설, 입양기관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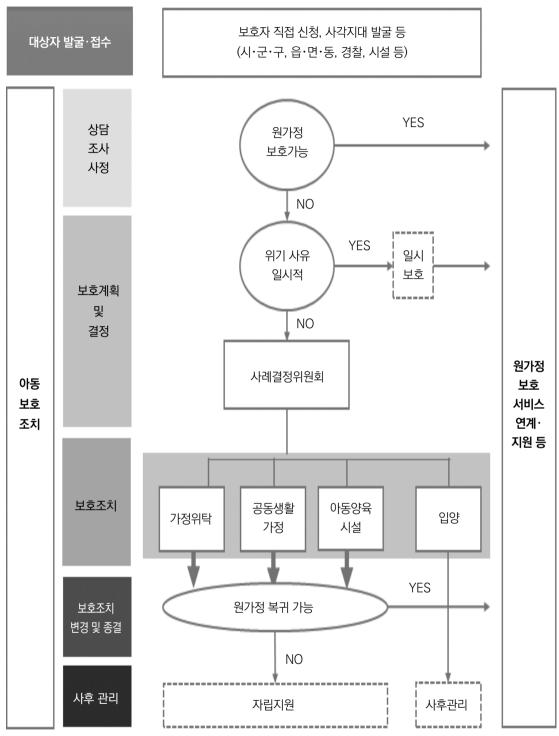
#### • 4단계 : 보호조치 종결

-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u>사례결정위원회</u>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 • 5단계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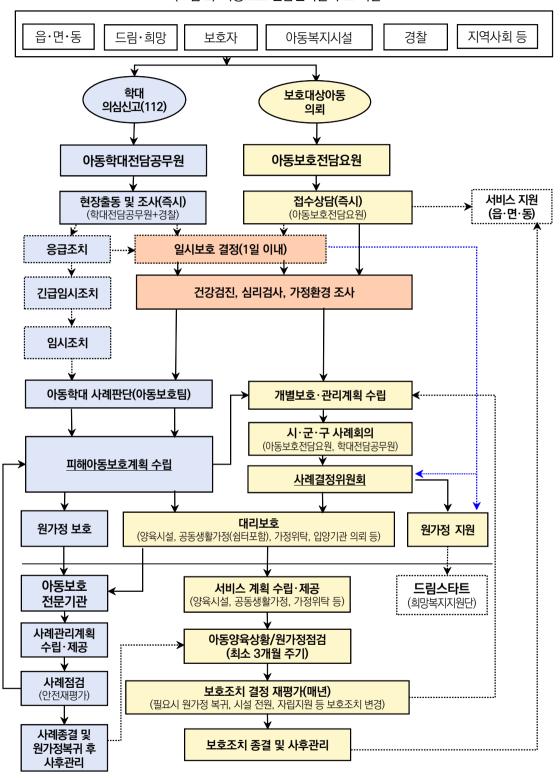
-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복지기관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 보호조치시 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가정위탁·입양)을 먼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설형 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양육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형 보호로 보호조치 변경 노력

〈그림 2〉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 4.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전후 조치 사항

#### 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분리보호 필요한 아동

• (신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신고

#### 아동학대 의심사례(예시)

#### 〈아동, 보호자, 가정 내 관찰〉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신체적 상흔이 관찰되거나, 상흔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고함, 욕설을 퍼붓거나 무시하는 등)가 관찰되는 경우
-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태도 : 대화 과정 중에 보호자 눈치를 과도하게 보거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경직(긴장)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눈빛·표정·언어 등으로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 청결 상태: 머릿니, 손・발톱 등에 묵은 때, 가정 내 쓰레기 등 방치
- 기타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의 발육부진, 마른 체형, 계절·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 등이 관찰될 경우

#### 〈주변인 보고〉

- 아동(초등 이하)이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집 밖에 오래 서 있는 등)
- 싸우는 소리(고함, 욕설, 폭력 등)나 아동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림
- 평소 아동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집 안팎에 위험한 물건 방치 또는 냄새(악취)가 나는 것 같음
- (현장출동 및 조사)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신고되거나 경찰로 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을 통보받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현장출동 및 조사 실시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조사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학대조사 수행 불가
- (응급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은 현장에서 학대피해로 인해 피해(의심)아동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인도)
  - 피해(의심)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일시보호하기 적절한 보호시설로 인도 하거나,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실시
  -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설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시 협의 통해 관할 내 피해아동이 입소 가능한 시설을 파악해야 함

- 응급조치 후 아동복지법상 <u>일시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가 진행되는 경우</u>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일시보호의뢰서( 서식4 )를 작성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 <u>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u> <u>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u>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일시보호)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인력,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 외부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협조요청
  - ※ 아동학대 특성상 사전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조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보호조치 후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진행

#### 참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20.3.2 개정, 20.10.1 시행)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응급조치 3호(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실시 후 해당 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응급조치에 따른 임시조치(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72시간을 경과하여 아동의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일시보호의뢰
- (피해아동보호계획) <u>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조사내용 및 사례판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u> <u>피해아동보호조치 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u> 전반적인 보호·지원계획( 서식43 피해 아동보호계획서) 수립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u>경찰</u>,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통합적 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 ※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관련서식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동의서, 아동보호동의서, 피해아동보호계획서 활용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 조사 및 상담결과, 피해아동보호계획(개별보호·관리계획) 바탕으로 보호조치 전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5 ), 아동 상황점검표( 서식6 ) 작성 및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준비
    -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친부모상황점검 생략가능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 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불필요하나,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 보호계획 공유
    - ※ 아동의 일시보호(즉각분리)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제1항제3~6호)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사후관리 대상임

- <u>단</u>,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은 분리보호 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변경·보호종료 외의 안건상정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직접 안건상정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6호(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 등)의 분리 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담당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연계 실시
- (사례관리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기면접 및 사정 등 통해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에 대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공유
- (양육상황점검/원가정 점검) <u>피해아동을 원가정외 보호 시</u>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협조하여 아동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 ※ 아동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에는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공동 방문
- (보호 종결 또는 변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중 아동의 가정복귀 가능여부를 평가,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시·군·구에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u>가정복귀 프로그램</u> 진행 완료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u>가정환경조사서</u> 제출, 가정복귀가 가능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가정복귀 결정
    - ※ 원가정 복귀는 아동학대 사건처리가 진행되어 해당 사건 법적처분이 종료된 경우 진행가능(보호처분, 집행유예, 조건부기소유예 등 사건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가정복귀 불가)
    - ※ 피해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에 의한 분리보호 후 원가정복귀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
    - ※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관련 서식: <u>보호자의 양육계획서,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u> 가정복귀계획서 (아보전용), 서식45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보전용), 서식46 가정환경조사서(아보전용) 활용
  - <u>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 아동</u>학대전담공무원이 종결여부를 판단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 ※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의 원가정복귀가 가능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황 공유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원가정복귀 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 피해아동의 조치 시 유의사항

- \_ <u>피해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보호조치 결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u>
- <u>다만 부득이하게 즉각분리 (일시보호)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상정 보호조치 점검하여 일시보호 연장 또는 장기보호 전환, 가정복귀 등 조치 결정함</u>
- ※ 일시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원조치 필요

보호절차 사례예시

#### 신고·접수

#### 112접수

- 아동 부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
-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학대신고를 통보하며 동행을 요청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조사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학대발생의심 장소(아동가정)로 출동
- 아동 가정은 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3인 가정이었음.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피해 아동(중2/여)과 학대행위의심자인 아동 부에 대한 분리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아동 모와의 조사도 실시
- 아동 부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알콜문제, 아동의 비행문제(술, 담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 내 존재하고 있었고, 신고 당일 아동 부가 아동의 비행문제에 대한 훈육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아동의 온몸을 폭행을 하게 되었음을 진술함. 평소에도 아동 부가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손바닥을 이용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을 원가정보호 할 경우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과 합의하여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도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 부는 비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아동을 폭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고, 아동 또한 화내고 때리기만 하는 아동 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밝힘.
- 경찰은 아동 부의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해 임시조치를 청구하였고, 더불어 입건하여 수사 개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응급조치 효력이 종료되는 시설입소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후의 추가 보호를 위해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를 실시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 아동보호팀

- 아동학대조사 결과를 기초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여부 판정,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팀 내 시례회의(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를 통해 논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조사결과 및 피해아동보호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u>사례결정위원회</u>에 참석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보호절차 사례예시

#### 학대 예방 및 가정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보호계획에 따른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 보호전담요원과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함. 아동의 원활한 시설적응 및 아동 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아동 부의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 가정 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 모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부모교육을 전달
- 학대사건이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결정으로 아동 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위탁명령 6개월 떨어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부에 대한 상담위탁 수행하였고 아동 부는 성실히 참여
- 10개월 후, 아동 부는 지자체에 가정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아동이 가정복귀를 거부하여 시설에서 지속적 으로 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아동 부 및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지속 설득

#### 학대 예방 사례관리 종결

####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전문기관

- 15개월 후, 아동, 아동 부는 주기적인 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종결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양육상황점검을 계속 실시

#### 양육상황 점검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방문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해 아동과 아동 부의 주기적 면회 여부 및 관계개선,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 36개월 후,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원만해져 가정복귀하기로 함

#### <u>사례종결 및</u> <u>원가정 복귀</u> 후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의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공유하였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 및 결과 제공을 요청함
- <u>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이후 3개월 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사후관리 진행하고 이후</u> 단독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함(사후관리 총 1년)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월 간의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충분히 개선 되었음을 확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u>사례결정위원회</u> 결정이후 아동이 가정복귀 후 3개월 간(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가정 내 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 하고 있는지 확인함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u>아동의 가정복귀가 문제없음을 확인</u>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및 가정으로 복귀를 결정함

#### 나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보호 의뢰된 아동(비학대)

- (발굴·접수상담)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의뢰(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된 경우 최초 발견 담당자가 접수(초기)상담( 서식1 )실시
  - ※ 보호자(부모)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제 원인인지와 함께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도 동시에 면밀히 파악
  - ※ 접수상담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기상담지 등 사용 가능
  - 접수상담 결과 아동의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 하여 일시보호시설(일시위탁)입소(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후속조치 실시)
  - 복합적 욕구·문제가 있거나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 서비스제공 등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 드림스타트로 의뢰
  - 긴급지원 및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 읍·면·동 등으로 의뢰
- (욕구 조사) 읍·면·동(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에서 실시한 욕구조사(서식3)를 참고하고 필요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층적 상담 및 조사
- (가정환경조사 및 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사정결과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부모상황점검표( 서식5 ) 및 아동상황점검표( 서식6 ) 작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 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보호유형 및 서비스 계획을 담은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사례회의 시 원가정외 보호기관 참여요청 가능
-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u>사례결정위원회</u>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u>사례결정</u>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은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워가정외 보호기관은 서비스 계획 수립 후 시·군·구 보고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읍·면·동, 타 사례관리기관, 원가정외 보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서식9 )을 실시(최소 3개월 주기)

보호절차 <u>사례예시</u>

#### 발굴·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방법①)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퇴거 명령을 받은 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원양어선에 취업하게 되어자녀 (첫째 10세, 둘째8세)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민센터에 방문

####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화문의(방법②)

• 모의 사망, 부의 원양어선 취업으로 자녀 양육에 공백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청에 전화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보호전담요원

#### 접수상담

- 3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모가 병세 악화로 사망함
- 모의 투병기간 동안 부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모를 간병해 왔으며, 고액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해결하다 대출금 연체로 2주 전 담보 주택에서 퇴거 명령을 받음
- 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 원양어선에 취업할 예정이며, 원양어선 재직기간 동안 자녀들을 돌봐 줄 수 있는 주변 친인척이 없어 2년간 자녀들을 맡길 곳을 찾고 있음
- 부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커 부채만 해결되면 자녀들과 함께 살 계획임

#### <u>아동사정</u> 및 가정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은 접수상담 결과로 대상 가구의 사례관리 필요성 확인
- 아동의 분리보호 요청 관련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의뢰

####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 욕구조사 및 아동과 친 부모 상황점검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보호조치 방안 모색 ※ 방문일정조율로 방문 최소화

#### <u>개별보호·</u> <u>관리계획</u> 초안 작성

#### 아동보호전담요원

- 부의 부채상환 및 자립 시 까지 아동 보호가 필요하므로 가정위탁보호(2년) 조치
- 아동들의 환경 변화 최소화를 위해 전학 없이 보호 가능한 위탁가정에 배치
- 모의 사망 및 부와의 갑작스런 이별로 심리 정서적 불안이 높은 아동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1년)
- 신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과 부의 정기적 교류 지원(2년)

#### <u>시·군·구</u> 사례회의

####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팀, 읍·면·동 접수상담자, 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과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결과 동일 위탁가정 내 형제 배치 필요성 도출

#### 보호조치결정 (사례결정 위원회)

#### 사례결정위원회

- 사례회의 결과를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아동 2명 모두 가정위탁보호 결정(동일한 위탁가정 배치)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과 친부, 위탁가정의 정기적 교류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확정된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보호절차

#### 사례예시

#### 가정위탁지원센터

#### <u>서비스 계획</u> 수립 및 제공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하여 시·군·구 보고
- 위탁아동들이 전학 없이 배치 가능한 위탁가정 연계 및 친해지기 프로그램 실시
- 00시 아동용품구입비로 아동 필요물품 구입(이불세트, 의류, 식기도구, 아동도서)
-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위탁가정 인근에 00심리치료센터 주1회(1년) 인지치료 등
- 분기 1회 친부와의 교류(유선 등) 지원(직업 특성 상 상시 연락 어려울 수 있음)

## 양육상황점검

#### 가정위탁지원센터

- 담당 상담원은 배치초기 1개월 이내 가정방문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 가능)
- 분기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들의 양육상황 점검
- 연계한 심리치료센터의 아동 변화정도 보고(월 1회)를 통해 아동들의 변화상태 확인
- 부의 휴가(연 1회) 시 아동들과의 교류 지원, 원가정 복귀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 배치초기 1개월 이내 가정방문 실시(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근거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모니터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 위탁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심리치료 진행에 따른 불안감 해소 확인
- 원가정 복귀 가능성 모니터링

#### <u>보호아동</u> 재평가

####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보호 2년 완료
- 친부의 부채 상환 및 원양어선 퇴사 후 국내 재취업 완료
- 아동들과 친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애착관계 유지 및 원가정 복귀 준비 완료
- 사례회의(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실시하여 원가정 복귀 의견 제시
- 원가정복귀 점검표(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원가정복귀 의견서(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자는 양육 계획서 작성

#### 종결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보호 목적을 달성하여 원가정 복귀 의견을 사례결정위원회 상정 및 복귀 결정

#### 사후관리

####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원가정복귀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최소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공동수행하고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단독으로 수행함(가정방문, 내방, 전화)
- 아동이 원가정 복귀는 하였으나 친부가 양육과 근로를 병행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드림스타트로 사례이관

# 다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된 아동

- (경찰신고, 건강검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 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없이 신고 등 조치 후 건강검진
  - \*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
  - \*\*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아동·장애인복지·정신보건시설 등)
    - ※ 신고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 지자체의 장(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서 (서식37)를 작성하여 경찰 제출 및 신고 접수서를 5년간 보존
    -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 신고 접수서를 지체없이 폐기하고 폐기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자체 이외의 자가 아동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은 신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호의뢰
- (일시보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건강검진 후 아동을 일시보호시설( 서식4 일시 보호 의뢰서) 등에 일시보호
  -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상카드( 서식38 ) 작성하여 지자체의 장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 각각 제출
    -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 신상카드( 서식39 )를 작성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송부하며, 실종아동 등으로 확인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함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무연고 아동)은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경찰청장·지자체의 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 확인 시 신속히 실종 아동의 가정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등 인수 확인( 서식40 )
    - ※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등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장과 협의하여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성본창설 및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보호조치 결정
  - ※ 해당 아동의 성본 창설이 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보호자 확인) 유기 등 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유기아동의 부 또는 모 등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서식 40)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한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시설 보고 또는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본창설이나 미혼모(부) 지원, 아동 양육 교육 연계 등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
    - ※ 아동복지시설 보고 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 아동의 성본창설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6.5.2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내용 적극 설명

#### 〈표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16.5.29 개정〉

내용	규정	주요 개정 내용	
네용		개정 전	개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변경	「가족관계 등록법」 제14조, 제15조	기존 증명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모두 표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되는 '상세 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 가능

- 아동 주소지 시·군·구 <u>아동보호전담요원</u>은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주소지 시·군·구 <u>아동보호전담요원</u>에게 그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 등 조치(상담결과 등 송부)
- 의뢰받은 시·군·구 <u>아동보호전담요원</u>은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조)의 방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이나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함
-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 의뢰 또는 협력하여 수행하되, '욕구조사표( 서식 3 )' 등 활용



◆ 친권 포기, 부모가 없는 등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유기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5호 보호 조치를 하면서 제6호(입양)를 병행하여 조치하여 추후에라도 영구적인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시설에 공유하는 제반 서류(입양대상아동확인서 등)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 관리시스템(ACMS)에 등록하여 입양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기타 필요 사항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고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실종신고 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관계 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신상카드 작성ㆍ제출여부 지도ㆍ감독     관계 장소 출입ㆍ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ㆍ징수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 제출
다중이용시설의 장	<ul> <li>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li> <li>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li> <li>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li> </ul>

#### 발굴·접수

#### 경찰

- 공원 공터에서 울고 있는 여자 영아 목소리를 듣고 인근에 사는 주민이 경찰에 신고
- 경찰은 즉시 출동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유기아동 발생정보 공유 및 시·군·구(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인계

#### 접수상담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을 인계받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건강검진 실시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의뢰서 작성 및 일시보호시설장에게 아동 일시보호 요청

## 일시보호

#### 아동보호전담요워

•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7일간 보호 의뢰함 (보호조치 전까지 아동은 일시보호 상태 유지)

#### 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을 일시 보호하며 아동 건강, 행동 등 체크함
-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시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필요시 유전자 검사 의뢰)

### 개별보호· 관리계획 작성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이 유기된 점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안)을 작성
-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전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몸무게 미달, 영양부족상태임을 확인함

### 시· 군· 구 사례회의

####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개별보호·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팀장, 드림스타트, ○○가정위탁 지원센터, ○○양육 시설 담당자, 전문가 참여하여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결과 아동이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의견도출

## 보호조치결정 (<u>사례결정</u> <u>위원회)</u>

#### 사례결정위원회

- 사례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위탁보호로 결정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에게 맞는 위탁부모 추천 요청(최근 6살 아동을 3년 정도 가정위탁한 뒤 원가정 복귀시킨 위탁부모에게 아동양육을 요청)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u>사례결정위원회</u>에서 확정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가정위탁지원센터(원가정외 보호기관)에 통보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하여 시·군·구 보고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에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00시 초기정착지원금, 결연지원금 및 영유아 관련 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상황점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을 가정위탁 배치 후 가정방문 등 아동의 사례관리 실시
- \* 연 1회 이상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 방문 가능
- 위탁부모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 동행함

####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실시
- \* 연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상황 점검 실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 분기별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함(유기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원가정 점검 제외)

# 보호아동 재평가

####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1년이 지난 시점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어 아동에 대해 장기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현재 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장기보호 가능성 확인함

### 종결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재학 중 미용자격증 취득하여 졸업 후 집 근처 미용실에 취업함
- 아동의 연령도래(18세)로 인해 종결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상정하여 종결함(아동보호 조치의 종료신청)

# 사후관리

####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5년 동안 자립수준평가에 대해 안내(전화, 내방, 가정방문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사후관리 후 아동의 특이사항이 발생 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 미아·유기 등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자체 조치사항

- ◆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중 무연고자 점검 철저
- ※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시 해당 시설의 입소·전원·퇴소 신상카드 제출현황 파악 등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
- ◆ 공무원의 관계 장소 출입·조사(실종아동법 제10조)
-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
-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실종아동 등의 가족 등을 동반 가능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

### 성본 창설

- 유기아동 등을 발견한 사람 또는 발견 통지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 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 연월일시, 성별, 출생추정 연원일, 아동 상태 및 보호자 관련 사항 등 그 밖의 상황을 조서(또는 신상카드)에 기록하여야 함. 이 때 조서를 신고 서로 봄(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시(구)·읍·면의 장은 시(구)·군 아동복지 담당 등을 통해 유기아동 발견 시 아동복지법 제15조상 보호 조치 결정을 위해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립,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야 함
  - ※ 시(구)·군 의뢰 시 조서(또는 신상카드)는 해당 시(구)·군 및 보호조치한 시설 등의 관할 시(구)·군에 각각 송부
-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 ※ <u>성본창설의무가 있는 시(구)·읍·면의 장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등의 관할 시(구)·읍·면에 아동의 성본</u> 창설을 요청할 수 있음
- 성본창설을 위한 절차 예시
  - ① (아동보호과) 관할 경찰서에 '요보호 아동(기아)의 성본창설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붙임파일: 요보호아동 현황 및 요보호아동 성본창설 기록내용
  - ❷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공문 회신
    - \* 붙임파일: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기아발견조서
  - **3** (민원행정과) 관할 가정법원에 '요보호아동 성본창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4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 허가 심판문' 공문 회신
  - **⑤** (아동보호과) 일시보호시설 등에 성본창설 심판문 공문 발송
- ※ 아동의 성본 창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후견인 지정·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이전 또는 동 절차와 병행해 추진
- ※ 아동의 성본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찾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 참고 성본창설 관련 법령

####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워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 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민법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참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제3조(후견인)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I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참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민법」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제19조, 제20조)

- (후견개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불가능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 및 후견인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
- (임시 후견인)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이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 발견

- 친권자 사망 또는 친권행사 제한 및 상실로 친권행사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
- 후견인 미지정 및 후견인 지정취소 등

발겨↓

발견↓

- 자치단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검사
- 아동복지시설의 장
- 학교의 장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

법원 직권↓

#### 법원

- 청구에 따른 후견인 선임 법원 직권으로 후견인 선임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절차

#### 심판결정

- 법원: 결정문 및 재판서 등본 송달
- 후견인: 미성년후견개시 지자체 신고, 아동의 재산목록 법원제출 ▶
- •시(구)읍•면사무소: 미성년 후견개시 신고서 접수, 아동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 공시

#### 후견인 직무 수행

• 후견인: 연 1회 후견사무보고서 법원제출

#### 후견인 직무종료

- 후견인: 관리 계산, 긴급사무처리,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
- 시(구)읍·면사무소: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서 접수 및 종료 통지
- ※ 아동이 성년도달로 인한 종료 신고 제외

#### 참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

#### ◆ 후견인 지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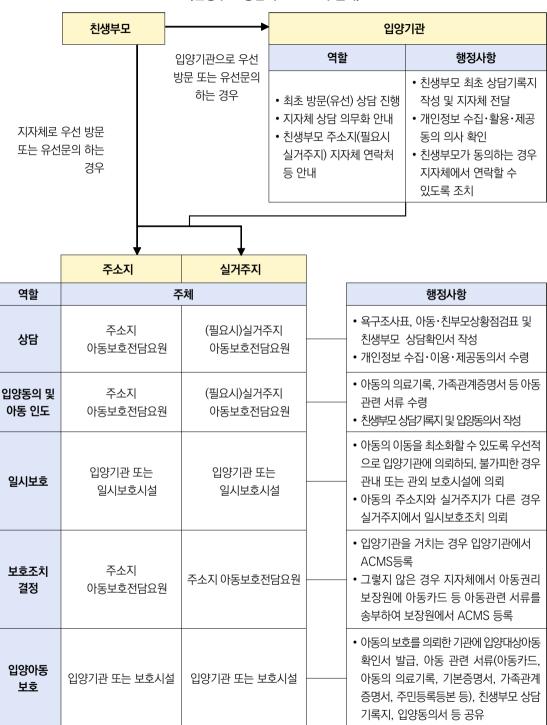
미성년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주체	후견인 지정절차	필요한 서류
	국가·지자체	따로 없음 법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인이 됨	-
고아인 미성년자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 제출 ②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제출 ③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ul><li>후견인지정신청서</li><li>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li><li>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li></ul>
	국가·지자체	①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 제출 ②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 자확인 공고문 제출 ③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견인지정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 제출 ②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 제출 ③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제출 ④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견인지정신청서     후견인지정서     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 ◆ 후견인 지정취소

- 1.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 법원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으로 후견인이 되었으므로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 지정을 취소함
- 2.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 ① 법원의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
- ② 보호시설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청구권자임
- ③ 후견인 지정을 허가한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
- ④ 허가가 취소되는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시켜야함. 또한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그 후견인이 즉시항고 할 수 있음

※ 출처: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년

#### 〈친생부모 상담 후 보호조치 절차〉



•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지자체, 입양기관))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원가정 보호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양육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 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을 의뢰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 지원과 입양에 대한 상담 제공(대면 필수)
  - ※ 친생부모(아동)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거주지 또는 친생부모가 상담을 원하는 타 지자체 아동 보호전담요원이 상담·조사 진행(다만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은 주소지에서 담당)
  - ※ 친생부모 상담 시 최대한 신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별도 구축된 상담장소를 이용
  - ※ 친생부모가 지자체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모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담하도록 최대한 노력
  - ① 원가정 양육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우선 진행
    - 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 친생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원가정 보호 가능성 또는 추후 원가정 복귀 가능성 파악(임신 중일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서비스 안내)
    -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력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예시 :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지원 등)
    - 친생부모가 미혼모·부인 경우 : 미혼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자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연계
      - ☞ 원가정양육을 위한 추가상담 필요시 여성가족부의 미혼모 상담체계 연계(가족상담전화, 건강가정지원 센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 ☞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와 아동을 모자시설에 의뢰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 전국 미혼모자시설 현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 ☞ 자녀양육 관련정책 및 서비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② 입양절차, 입양의 동의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기관 안내 등 입양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
    - 입양 동의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친생부모에게 안내

-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아동의 출생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가 제출되어야 함을 친생부모에게 주지시켜야함
- ▷ 친양자 입양신고 효과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입양허가 이후 양친이 친양자입양신고(입양특례법 제15조)를 하면, 친생부모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는 아동 기록이 삭제되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기족 관계등록예규)」 제3조(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자인 경우 발급 가능
- ▷ 아동이 입양 전 사망하게 되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동기록이 계속 유지 되고, 입양 후 파양되면 다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됨
-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동 기록이 유지됨을 친생부모에게 분명히 전달하여야 함
-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심문 또는 조사관 조사를 요구·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함
- ③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표( 서식3 ), 아동상황 점검표( 서식6 ),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5 )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 친생부모가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서식 5-2)를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며, 시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제출
- ④ 입양의뢰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도 받아야 하며,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 입양절차
  - ▷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 ▷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 ⑤ 친생부모가 먼저 입양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시·군·구 상담이 필수적임을 알리고,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대면상담 받도록 안내
  - ※ 입양기관은 필요시 실거주지 또는 친생부모가 상담을 원하는 지자체에서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친생부모에게 해당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연락처 제공
    - ☞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친생부모 연락처 및 최초 상담기록지[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7-1] 공유

#### 〈 입양기관의 의무 〉

- ▷ 친생부모의 이름, 연락처, 주소지, 실거주지 등 기본 사항 파악하여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 작성[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7-1]
- ▷ 친생부모가 상담을 희망하는 지자체(주소지 또는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요원 연락처 제공하고 대면상담 받도록 안내
- ▷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입양실무매뉴얼 참고 서식 7-1] 공유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자의 입양 동의 및 아동 일시보호)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1) 보호자의 입양 동의 및 아동 인도
- 원가정 양육 관련 상담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친생부모는 친생 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면하여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서식5-1 ), 입양동의서, 친생부모상담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를 작성하고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보호시설로 아동 인도
  - ※ 친생부모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이 어려운 경우, 실제로 상담을 받은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입양동의서 작성 및 아동 인도에 대해 협조 요청
  - ※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를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며, 입양동의서와 함께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친생부모 주소지)시 제출
-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을 일시 보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 등에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전입
  - 이 때, 입양기관에 우선 보호조치 의뢰 후 어려운 경우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의뢰
  - 입양기관에 보호조치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친생부모는 입양기관에서 만나 아동을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하고,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입양 확정판결 전까지 아동 면접 가능 하며, 가정법원 절차 진행 중에 친생부모에 관한 보정명령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 추가 상담 진행
  - ※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입양기관·일시 보호시설·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조치(친생부모 실거주지 등 상담한 시·군·구에서 일시보호의뢰서 제출 등 절차 수행)
  - 입양기관에 보호되는 아동의 경우 보호 의뢰 시점부터 위탁가정 소재지 또는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생계·의료급여 등 지급

#### 2) 입양 동의 시 유의사항

- 입양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 ☞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상담 시, 입양정보공개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지 않도록 유의(입양정보공개동의서는 입양 후 입양인이 가족찾기를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친생부모가 정보공개 동의의사를 통보하는 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의 소재불명이 증명되지 않는 한 '친생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고지하여 양친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친생부(미혼부) 또는 친생모(미혼모)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입양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취소 청구 가능
- 유기아동으로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 상실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친생부모의 직접적인 입양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증명이 될 만한 서류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입양동의일 현재 만 19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 중 일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 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소명자료로 제출, 다른 일방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입양동의를 받아야 함

#### 3) 입양 동의 시 제출 서류 및 물품

- 입양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①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다음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③ 출생신고 증빙서류 등 (아동의 기본증명서, 아기수첩, 아동의 출생 당시 의료기록, 친생부모 정보가 기록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생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④ 아동소유 물품(물품인계리스트 작성 필요)
  - 이 때, 친생부모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

#### • (아동 보호조치 결정 및 인수)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친생부모 상담 내용 및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초안)을 작성하고 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유형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논의
  - ※ 아동카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서식 7 ]
  -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입양)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결정
  - ※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4호의 조치 병행 결정 필요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보호조치(입양) 결정 후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을 입양기관 또는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
  - ※ 시·군·구는 아동보호 의뢰기관에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아동 관련 서류(아동카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의료 기록지, 아동의 기본증명서, 친생부모 정보가 기록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생부모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욕구조사표, 친생부모 상담기 록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서 등 공유
  - ※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우선 원칙(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있을 경우 입양기관으로 보호조치 변경)
  - 이 때, 아동을 입양기관이 아닌 타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 요원은 양육시설에 공유하는 제반 서류(입양대상아동확인서, 아동 및 친생부모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 본부)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등록하여 입양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는 양자가 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급권자 :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확인·발급
-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내용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결과(부양의무자 출현 여부) 포함
- 입양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입양대상아동확인서가 발급된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됨.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입양대상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친권자가 입양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수 있음
- 입양기관 및 양육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입양대상아동의 인적사항, 친생부모 배경, 아동발달, 진료상황 및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 등을 아동배경보고서에 기록하고 아동주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고
  - ※ 친생부모의 상담기록, 입양 전 양육담당자인 위탁부모, 보육사 상담을 통해 작성함

# 참고 입양특례법(제22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아동 주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입양절차 완료 전까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입양기관이 아동에 대해 작성한 아동양육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양육상황점검 실시
  - ※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중인 경우, 아동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중인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 등과 재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보호조치 변경 : 입양절차 진행 중단, 아동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을 포함
  - 입양대상아동 상황변경 보고(위탁가정 변경 등)를 받은 관할 시·군·구(입양담당부서)는 위탁 가정 소재 시군구의 생계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업무 소관 부서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문 제목을 '00년 0월 생계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자격정비 요청(입양대상아동)'로 통일
- (입양 동의 철회)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12조제5항~제6항,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입양동의의 철회시기 및 절차
  - 입양기관에 아동을 인계한 후라도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이 있기 전에는 입양동의철회가 가능함
  -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친생부모는 입양 의뢰할 당시 상담을 진행한 지자체에 문의하여 입양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는 현재 아동의 주소지 지자체에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철회서를 전달
    - ※ 입양동의 철회서( 서식 35 )
  - 친생부모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현재 아동의 주소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입양기관 또는 양육 시설과 협력하여 '가정 복귀 의견서'를 작성하고 원가정 복귀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 심의 진행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의 철회에 따른 아동보호 비용은 입양기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사후관리) 입양기관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연 6회)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입양기관은 입양가정에 입양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후관리 이루어진다는 것과 목적, 방법, 횟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는 양부모로부터 사후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36 )를 수령해야 함
    - ※ 이사·연락처 변동 등 고지, 가족관계 변화 등 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미리 안내
  - 입양기관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월 진행된 사후서비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당월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입양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하여 해당 입양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또는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입양허가 후 아동 주소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소로 사례이관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인지하였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 보호전문기관)), 입양대상아동 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2021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라 신고, 보고, 조사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하여야 함

### ⟨표 3⟩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구분		그 사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동상황	담당	진행순서	
입양의뢰 아동	입양기관	① 친생부모 초기 상담(유선 또는 대면, 친생부모 초기 상담기록지 작성) ② 친생부모 주소지(필요 시 실거주지 또는 친생부모가 상담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파악 하여 해당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제공하고 대면상담 받도록 안내 ③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7-1] 공유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구분		
아동상황	담당	진행순서
	시·군·구	④ 친생부모 추가 상담 실시(유선 및 대면(대면 1회 이상 필수))  - 원가정 양육 및 정부지원 등 정보 제공  - 필요 시 입양기관 동행 방문 협조 요청  - 주소지 시·군·구에서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에서 실시 가능  ※ 상담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첨부  ⑤ 친생부모가 작성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입양동의서를 제출 받고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친부모 상황점검표 등을 작성 ⑥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입양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의뢰  ※ 의뢰한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하도록 안내 ⑦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및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아동 주소지)  - 입양 결정(입양대상아동):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 장소 결정
입양대상	입양기관 등 아동의 보호를 의뢰받은 기관	<ul> <li>⑨ 아동의 보호</li> <li>- 시・군・구에서 입양기관 및 양육시설 등으로 아동보호를 의뢰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전입신고 및 아동 보호 및 아동배경보고서 작성</li> <li>※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친권의 효력은 정지)</li> <li>: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수할 경우 후견인이 되나, 입양허가 전 친부모가 귀가 의사를 밝히면 친권이 살아나고 후견직무가 종료됨</li> <li>: 입양기관은 시・군・구에 후견인 증명발급을 공문으로 신청하고 시・군・구가 이를 승인 하여 발급함</li> <li>⑩ 입양대상아동의 아동양육상황보고서 매월 작성 및 분기별 시・군・구 제출 등 양육상황점검 협조</li> <li>※ 사망, 학대(의심 포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해 및 중질환 등 중대한 사항에 따른 변동 발생 시 시・군・구 보고 그 외 아동보호 방법・장소・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등 아동의 상황에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시・군・구 보고</li> </ul>
아동	시·군·구	<ul> <li>⑧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아동의 주소는 보호의뢰기관) 및 아동의 인수</li> <li>친생부모의 아동 보호가 가능한 경우 친생부모가 우선적으로 보호, 불가능한 경우 입양기관 및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li> <li>입양기관이 아닌 타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 시설에 공유하는 제반 서류(입양대상아동확인서, 아동 및 친생부모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등록하여 입양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li> <li>⑩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실시</li> <li>(위탁가정) 입양기관이 제출한 아동양육상황보고서를 통해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지체없이 아동학대 신고</li> <li>(양육시설 등)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 시 직접 방문 실시하고, 입양기관 주소지와 상이할 경우 시설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협조 요청</li> </ul>
입양완료	입양기관 입양 부모	① 입양아동의 인도 및 입양기관 주소지 시·군·구 보고 ② 입양 성립 후 사후관리(1년) 및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아동 주소지 시·군·구 제출 (전월 진행된 사후서비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당월 10일 이전에 제출) ② 친양자 입양 신고(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아동	시·군·구 (입양 부모 주소지)	(② 심의위원회에 보호 종결 사후 보고 (③ 입양 성립 후 입양기관이 제출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통해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1년) -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지체없이 아동학대 신고

# 입양기관(○○ 주소지)

- 임신 8개월 된 ♡♡(21세)(이하 친생모)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키울 수 없다며 출산 후 입양을 의뢰할수 있는지 전화 문의함
- 친생모는 현재 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으며,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까봐 직장 문제라고 둘러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함. 현재 직장은 퇴사한 상태로 수입은 없음. 친구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한 차례 받았지만, 정기진료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함
- 입양기관은 현재 상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묻고, 출산(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및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미혼모부 지원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대해 안내
- 입양의뢰는 주소지 시·군·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한다면 현재 거주중인 시· 군·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아동 출생 후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친생모가 직접 양육 후에 가능 하다고 안내함
- 친생모는 임신기간 40주, 3.4kg 여아를 ◇ ◇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시·군·구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 신청하여 산후조리원 7일간 있었음

# 입양기관(○○ 주소지)

- 출생 후 8일 시점에 친생모가 입양기관에 직접 방문함. 숙려기간동안 많은 고민을 했으나 도저히 아동을 혼자서 책임질 형편이 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며 아동을 입양보내기 원함
- 친생모는 주소지가 너무 멀고 고향에 알려지기 싫어 현재 거주중인 □□구청을 통해 입양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입양기관에서는 친생모의 주소지, 실거주지, 연락처, 상담을 원하는 사군구 등을 파악하여 친생부모 초기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고 친생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군구에서 직접 연락할 것임을 안내함
- 입양기관은 친생부모 초기 상담기록지를 해당 □□구청에 송부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모 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아동보호전담요원(□□구청)

- 이틀 후 실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구청)은 친생모와 직접 대면하여 추가상담(욕구조사, 긴급복지지원 제도, 아동양육비 등 양육관련상담 및 입양정보제공)을 진행함
- 친생모가 입양을 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동의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개인정보 수잡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친생모로부터 아동의 기본증명서, 의료기록, 기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음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부의 정보를 파악하여 친생부의 동의를 받고,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부모 상황점검표 및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작성

# 아동의 인도 및 일시보호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 친생모가 취직 준비로 더 이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호조치 결정 이전까지 관내 양육시설로 일시 보호 의뢰 및 생계·의료급여 등 지급이 되도록 조치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모의 주소지인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입양 의뢰 아동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서 입양동의서, 친부모 상황점검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및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에 관한 서류를 인계함

접수상담.

친생부모 상담 (입양동의)

임신 중 입양문의

개별보호· 관리계획 초안 작성

####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

•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입양) 초안을 작성

시· 군· 구 사례회의

####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업무담당 팀장, 입양기관 담당자와 사례회의 실시 및 입양으로 의견도출, 아동이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입양 전까지 **입양기관에서 관리하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

#### 보호조치결정

#### △△시 사례결정위원회

- 사례회의 결과를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및 입양결정
- 입양을 의뢰할 입양기관에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안내
-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입양기관의 주소지인 ○○구청으로 관련 서류를 사례이관

# 양육상황점검

#### 입양기관(○○ 주소지)/○○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 입양기관은 아동배경보고서(인적사항, 친생부모 배경, 아동발달, 진료상황 및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를 작성하여 ○○구청에 보고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내용 및 입양진행상황을 공유받고, 필요시 입양 기관과 협조하여 입양기관에서 관리하는 위탁가정에 방문 및 양육상황 점검

#### 양부모결연

#### 입양기관(○○ 주소지)

•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후 가정조사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함. 양부모의 서류 준비 및 가정방문, 양부의 회사로 불시 방문 등 실시 후 입양가정 승인 완료함

### 입양허가 (가정법원)

#### 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에 예비양부모의 입양 서류를 접수 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짐
- 가사조사관은 예비 양부모가정 방문, 상담진행 후 재판부는 신문기일 지정
- 예비 양부모 가정법원 출석(아동과 예비양부모 적응 상황 모니터링)
- 가정법원의 입양판결 확정

#### 종결

#### 입양기관(○○ 주소지)

• 아동 인수 및 친생자 입양신고(아동 인수 시에 현재 아동의 적응상태, 수유, 수면상태, 배변 및 목욕상황과 발달상태 등 보고서 작성해서 전달.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과 정기적으로 체크한 신체 치수 기록 등 함께 전달)

#### ○○구청 사례결정위원회

- 양부모가 입양 신고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에 서면·사후심의로 안건 상정
- 사례결정위원회는 입양완료에 따라 종결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을 요청(양부모 주소지인 ©©구청에 사례이관)

#### 입양기관(○○ 주소지)

- 사후 상담 및 가정 방문(1년 내에 총 6회의 사후보고서 작성. 3회는 가정방문 실시)
-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황, 이름 변경 상황 등 확인
- 사후 관리 시마다 아동의 건강상태 파악, 예방접종 기록 확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적용하는지, 학대나 방임 정황 없는지 확인
- 양부모에 대한 대면교육(아동학대예방, 영유아 양육, 입양아동의 특성 등) 실시 (사후서비스 제공확인서 발급)
- 입양기관은 전월 진행된 사후서비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당월 10일 이전에 제출하여 아동 주소지(양부모 주소지) 시· 군·구(◎◎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고함

#### 입양아동 주소지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 입양기관은 입양아동 주소지(양부모 주소지) ◎◎구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 진행(입양기관은 사후관리 진행 후 10일 이내에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

#### 사후관리

# 참고 <u>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u>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ul> <li>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산부 100만원)</li> <li>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120만원 지원</li> </ul>	<ul> <li>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은행</li>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li>건강보험공단 ☎ 1577-1000</li> <li>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li> </ul>
	산모건강관리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등	• 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임신 · 출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게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ul> <li>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li>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출산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70만원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 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ul> <li>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li>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미혼모 시설 (기본형)	•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ul> <li>해당 시설 및 지자체</li> <li>한부모상담전화</li> <li>☎ 1644-6621</li> <li>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li> </ul>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추가 아동양육비·학용품비·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한부모기족 증명서(중위소득 60%)	<ul> <li>주민센터</li> <li>한부모상담전화</li> <li>☎ 1644-6621</li> </ul>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옥비 등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아동양육비(월 35만원)·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 교육비·자리지원촉진수당·한부모가족 증명서(중위 소득 72%)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런 위기사유(이혼, 실직,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ul> <li>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li>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양육 · 돌봄	사회적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지원 등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업무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 1819     ★ 1819     ★ 2 1813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 그램·자조모임 등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급	• 주민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상담센터 ☎ 1600-0777
	가족역량강화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에게 사례 관리, 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등 제공 및 서비스 연계	<ul> <li>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li> <li>☎ 1577-9337</li> <li>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li> </ul>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관계 없음) 대상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ul> <li>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에게 검사비 지원</li> <li>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의료비 등 지원</li> </ul>	• 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 대상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ul> <li>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li> <li>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바우처)</li> </ul>	
	아동수당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	• 법거소 및 즈미세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대상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비용지원	<ul> <li>보건소 및 주민센터</li> <li>보건복지상담센터 ☎ 129</li> <li>복지로 누리집         <ul> <li>(www.bokjiro.go.kr)</li> </ul> </li> </ul>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바우처)	
	가정양육수당 지원	• 가정양육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수당 현금 지급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 임산부 대상 통합서비스 제공	•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66, 누리집 (www.dreamstart.go.kr)
	아이돌봄서비스	<ul> <li>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li> <li>소득구간별 정부지원</li> </ul>	• 주민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 1577-2514, 누리집(idolbom.go.kr)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지역아동센터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 상담센터 <b>☎</b> 129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ul> <li>주민센터/사회보장정보원</li> <li>☎ 1566-3232</li> <li>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li> </ul>
	가사·간병 방문지원	• 질병·생활고 등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바우처)	• 주민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 복지·보건·고용 등 연계·제공하여 탈빈곤 및 자활 지원	<b>☆</b> 129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 그램 운영 등	<ul> <li>육아종합지원센터 고객센터</li> <li>☎ 1577-0756,</li> <li>누리집</li> <li>(central.childcare.go.kg)</li> <li>보건복지상담센터 ☎ 129</li> </ul>
	공동육아나눔터	•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웃과 함께 자녀돌봄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 지원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 ☎ 1577-9337, 누리집 (www.familynet.or.kr)
	초등돌봄교실	•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지 원 등	• 재학(입학예정) 초등학교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등	• 시·군·구청
시설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지원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주거	공공주택 지원	<ul> <li>주택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li> <li>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li> </ul>	시·군·구청/각 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누리집(www.lh.or.kr)
교육 • 취업	학생 미혼모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대상 위탁 교육 지원	<ul> <li>해당기관, 시·도 교육청 대안 교육 담당자</li> <li>한부모상담전화</li> <li>☎ 1644-6621</li> <li>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li> </ul>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등 지원	• 새로일하기센터 상담전화 ☎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saeil.mogef.go.k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대상 급식, 보충학습, 상담, 체험활동 등 운영	<ul> <li>주민센터/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www.youth.go.kr/ yaca/index.do)</li> <li>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li> <li>☎ 02-330-2831~4</li> </ul>
	자녀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ul> <li>주민센터/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li> <li>교육비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li> </ul>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대상 상담·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등 지원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누리집(www.nyhc.or.kr)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누리집(www.kosaf.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한부모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80%, 7개월부터는 50% 지급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금융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 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ul><li>대한법률구조공단 ☎ 132</li><li>한국가정법률상담소</li><li>☎ 1644-7077</li></ul>
법률	근로장려금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홑벌이 가구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 매년 5월 국세청 인터넷
	자녀장려금	•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지급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앱 및 ARS 🏗 1544-9944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소액보험 (저소득층아동보험2)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 생계/ 의료급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ul> <li>서민금융콜센터 ☎ 1397</li> <li>아동보험2 전담센터</li> <li>☎ 02-3471-5116</li> <li>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li> </ul>
	미소금융	•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대출	아동보험 접수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희망키움통장 (ㅣ, ॥)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매칭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꾸준히 근로하여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주민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장려금, 수익금 지원	• 자활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 출생신고 과정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대한법률 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ul> <li>대한법률구조공단 ☎ 132</li> <li>한국가정법률상담소</li> <li>☎ 1644-7077</li> <li>한부모상담전화</li> <li>☎ 1644-6621</li> </ul>
	스포츠 강좌 이용권	<ul> <li>만 5~18세 유·청소년</li> <li>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li> </ul>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 누리집(svoucher.kspo.or.kr)
기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0만원)	•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누리집(www.mnuri.kr)
710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시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 문화재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02-6450-3837
		•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용 쌀 할인 지원(기준가격의 60~92% 할인)	• 주민센터
	요금감면	•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ul> <li>주민센터/산업통상자원부</li> <li>☎ 1577-0900</li> <li>(전기) 한국전력공사</li> <li>☎ 123(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li> </ul>

구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이동통신요금 감면	주민센터/각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     복지할인 전용 ARS ☎ 1523, 고객센터 ☎ 114
		• 과태료 50% 이내 감경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 가족 80%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수도요금 감면	• 주민센터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 정책 정보 안내서 (여성가족부)



# Ⅴ.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 1. 아동학대 등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보호조치 등은 시·군·구 아동보호팀 중심으로 업무 수행

### 〈표 4〉 아동보호수행 인력별 역할

-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ОПСІМ	시·군·구		
업무단계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접수	보호대상아동(아동학대 외) 발생 시 접수상담     원가정 보호 가능 시 읍·면·동 또는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의뢰	• 아동학대신고 접수	
조사·사정	가정환경조사 및 욕구조사      ※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학대전담공무원 조사로 갈음      아당 및 친부모상황점검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생략 가능      아동의 일시보호 지원	• 현장출동·동행요청(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조사(피해의심아동, 학대행위 의심자, 주변인 등)     • 응급조치, 일시보호 관련 조치     ※ 아동학대 사례판단(사례회의)	
보호계획 수립 (피해이동보호계획, 개별보호·관리계획)	• 학대이외 사유로 보호조치 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전담요원·아동보호 전문기관 통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		
조치결정	아동의 보호조치(사례회의)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피해아동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학대 처벌법 47조 등)     학대행위자 고발 및 사법절차 진행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원가정외 보호기관으로부터 서비스 계획 확인		• 사례관리계획서 검토 및 의견 공유(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단계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점검 및 재평가		<ul> <li>가정위탁, 시설입소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최소 3개월마다)</li> <li>사례회의 등 통해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등 변경 검토</li> </ul>	• 정기적 사례점검(피해아동)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		
보호 조치	피해아동 사례종결 (보호유지)	<ul> <li>가정위탁, 시설입소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최소 3개월마다)</li> <li>사례회의 등 통해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등 변경 검토</li> </ul>	아동학대사례 종결 결정     종결사례 중 장기보호아동 사례이관(아동보호 전담요원)	
종결	보호조치	•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결정	
	종결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자립지원 모니터링 • 원가정 복귀 아동 대상 읍·면·동 또는 드림 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의뢰	_	

# - 읍·면·동 과 드림스타트

업무단계	읍·면·동(원가정)	시·군·구	
·	급·전·중(편기명)	드림스타트(원가정, 원가정 내 아동)	
접수	보호자 방문 또는 의뢰받은 경우 초기상담     위기아동 발굴(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학대 의심 시 112, 시·군·구 긴급전화 신고     보호조치 필요 시 시·군·구 의뢰	초기상담     보호조치 필요 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의뢰	
조사·사정	• 의뢰대상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결과 이관 • 필요시 시·군·구 가정 방문 동행	• 의뢰대상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결과 이관	
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보호계획, 개별보호·관리계획)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		
조치결정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_	• 분리보호 후 복귀한 아동의 원가정(부모, 가정 내 보호아동) 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опсы	O 대 도(이기대)	시·군·구	
업무단계	읍·면·동(원가정)	드림스타트(원가정, 원가정 내 아동)	
	• 양육상황점검 지원 –		
점검 및 재평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		
보호조치 종결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사후관리	• 필요시 사후관리 지원	• 필요시 사후관리 협조	

# - 지역사회(아동보호전문기관, 원가정외 보호기관)

	지역	사회		
업무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원가정외 보호기관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접수	• 상담	보호자의 보호조치 신청 시 상담 및 읍·면·동보고 ※ 보호자가 읍·면·동 상담에 동의한 경우     긴급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접수상담 및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 보고		
조사·사정	조사동행(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판단 의견 공유(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재신고 사례는 필수	_		
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보호계획,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신 및 의견 공유(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피애이동모호계획, 개별보호·관리계획)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			
T 구 건 저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지원	-		
조치결정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시·군·구 보고 • 원가정 지원(부모교육, 상담 등)		
• 정기적 사례점검(피해아동) •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 <u>분리보호 조치된</u>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 전담		• 양육상황 시·군·구 공유 • 시·군·구 양육상황점검 협조		

업무단계		지역사회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원가정외 보호기관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요원과 공동 수행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		
보호 조치 종결	피해아동 사례종결 (보호유지)	종결 사유 발생 시 종결회의     분리보호(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유지 시 관련 내용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이관	_	
	보호조치 종결	<ul> <li>가정복귀 필요 시 상황공유(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li> <li>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및 가정환경조사 서 제출(아동학대전담공무원)</li> </ul>	• 아동가정복귀 의견서 제출 (양육계획서(보호자용)동봉)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		
사후관리		• 가정복귀 후 사후관리 공동수행(아동보호전담 요원)	사후관리 협력     연령도래아동의 자립지원	

# 2. 빈곤 등 위기가구 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 가 읍·면·동 아동복지(또는 사회복지) 담당

- 보호자 의뢰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보호대상아동 발굴 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또는 사회복지 담당(이하 "아동복지담당 등")이 초기 상담( 서식1 : 접수상담지)
  - 시·군·구에 보호자가 직접 보호의뢰 요청할 경우 시·군·구에서 우선 초기상담 실시 후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
    - ※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시설에서 보호 후 24시간 이내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 보고
- 초기 상담 결과 해당 가구에 통합적 서비스 지원 필요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읍·면·동 복지 허브화 미실시 지자체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여 욕구조사( 서식3 : 욕구 조사표)
- 필요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력하여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 나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등

-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하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로 연계
- <u>원가정에서 분리</u>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 및 초기(접수)상담 실시
  -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하는 경우 기존 담당자가 방문 동행하는 등 협조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 시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욕구조사결과 등을 포함 하여 의뢰함

#### 〈표 5〉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사례관리 기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ul> <li>원가정에서 보호되며, 대상가구의 주 대상자가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지원 서비스가 주된 욕구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li> <li>부모의 양육태도·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li> </ul>	초기 상담 또는 욕구조사의 주요 문제에 아동학대가 있어 학대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대정황은 없으나, 부모의 건강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동을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u>욕구조사</u> 결과에 따라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가구단위 고난도 사례는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하여 사례관리

※ 방문 필요 시 가급적 아동보호전담요원, 드림스타트 등과 방문일정을 조율하여 불필요한 가정 방문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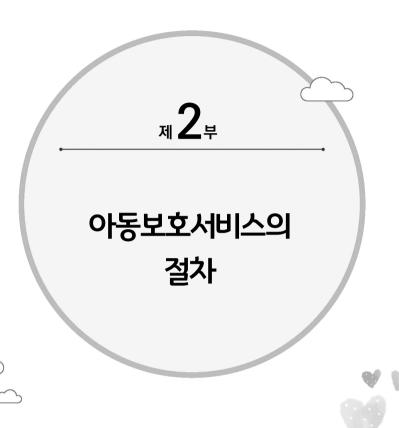
### 〈표 6〉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준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 대상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고용, 건강, 안전 등 두 가지 이상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가 있으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소재와 이용 방법을 스스로 찾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고난도 사례 ※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에 '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과 '정신 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복지 지원법 상의 위기상황사례,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 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 다 시·도 아동복지 담당

• 보호아동이 발생한 시·군·구와 보호 주소지 시·군·구가 상이하거나 아동의 보호장소를 타시·군·구로 변경하는 등 시·군·구 간 역할 조정 및 총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시·도 <u>아동복지</u>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등에서 수행

#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I. 상담·조사·사정

#### 1. 개요

#### 상담·조사·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사후관리 종결 - 접수상담 - 개별보호관리계획 - 아동보호 및 - 종결 - 사후관리 - 일시보호 수립 서비스계획수립 및 - 자립지원 - 욕구조사/상황점검 - 사례회의 제공 - 보호조치 결정 - 양육상황점검

- (목적) 아동 및 부모(보호자)의 의뢰동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읍·면·동 및 타 사례관리의 상담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의뢰
  - 필요한 경우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추가조사 하되, 불필요한 방문을 가급적 최소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받아 보호조치를 의뢰하되, 필요한 경우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상황 점검을 추가 실시

## 2.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의 <u>주소지</u>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주로 실시
  - <u>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u> 조사 실시
  - 그 외 보호자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대상아동을 발견한 담당자 또한 초기(접수)상담 및 욕구조사 가능

- 타 사례관리기관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기존 접수상담 및 욕구조사로 갈음 가능하며, 친부모 상황 및 아동 상황 점검표 등 필요사항은 추가 조사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하되,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상담 및 지원 받도록 안내
  - ※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에 상담 의뢰
  - ※ 다만,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시설에서 보호 후 24시간 이내 관할 시·군·구(또는 시·도)에 보고

#### 3. 수행시기

- 보호자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 보호신청을 받은 경우
  - 보호신청 받은 경우 즉시 접수상담 실시하되. 조사·사정은 접수 상담 후 1주 이내 실시

### 4. 수행방법

## 가 접수상담( 서식1 ) 및 접수

- (보호자 직접 의뢰) 보호자가 유선 또는 내방하여 보호의뢰 하는 경우 접수상담지를 바탕으로 보호의뢰 사유 및 가구 내 주요 문제 등에 대해 상담 실시
  -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선 읍·면·동(또는 드림스타트)으로 의뢰
  - 아동에 대한 방임, 폭력 등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상담내용 전달 및 신고
  - 학대로 의심되지 않으나 양육의지가 결여되고 분리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 상담 실시
- (읍·면·동 및 드림스타트 등으로부터 의뢰) 기존 사례관리 아동 중 원가정에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로 의뢰
  -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하는 경우 기존 담당자가 방문 동행하는 등 협조할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 시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욕구조사결과 등을 포함하여 의뢰함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타 사례관리의 조사 및 상담내역 또는 욕구조사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가정방문 또는 읍·면·동, 시·군·구 내방 최소화
  - <u>친생부모가 접수상담을 입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u>, 입양기관은 친생부모 주소지 시·군·구 상담이 필수사항임을 안내하고,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대면상담을 받도록 안내

\* 친생부모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대면상담도 가능하다는 것 반드시 안내하고, 상담을 받기 원하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연락처 제공



#### 입양 의뢰한 친생부모 상담 시 고려사항

- 미성년 친생부모, 혼외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환경 조성 등에 최대한 배려(필요 시 입양기관 담당자와 동행하여 실시)
-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 강요 등은 지양
- 부모 등 보호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답변을 강요하기 보다는 특이사항란에 '확인 불가' 등으로 기재하고 넘어가도록 함

## 나 아동의 일시보호

- <u>아동학대전담공무원</u>은 학대·유기 등으로 보호조치 결정전까지 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위탁 또는 일시보호시설 등에 일시 보호의뢰( 서식4 )
- <u>아동학대전담공무원</u>은 일시보호 중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적극 협조)
  - 부득이하게 일시보호(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 장기보호조치로 전환, 가정복귀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
  - ※ 아동의 일시보호(즉각분리)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사후관리 대상임
- <u>아동학대 이외로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u>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다 가정 방문 방법 및 사전 준비사항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방문상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및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을 위한 일정 협의

-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 ※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시·군·구 공무원 등 동행 협조
  - ※ 보호대상아동 이외 가구원에 대해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과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동행 방문
- 접수상담 및 기존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전정보를 숙지하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

## 라 욕구조사표 활용(서식3)

- (목적)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총 10개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권익보장) 조사
- (조사방법) 직접 의뢰받는 경우 가정방문하여 실시하되,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기존 자료 활용 가능(단, 필요 시 별도 욕구조사 가능)
- (욕구파악) 대상아동 및 필요 시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주요 원인, 원인 제공자 등에 대해 파악
- (주변 환경 파악) 가족의 경제 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특징, 장애물과 함께 사회 관계망에 대한 파악
- (잠재적 자원) 욕구영역별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 완화 또는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강점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파악
  - ※ [서식3]에 붙임 설명 참조

## 마 아동상황점검표(서식6)

- (목적)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의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호유형을 결정
- (정신건강·의료적 욕구) 아동의 장애 및 질병 유무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확인함
- (사회적 욕구)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성인과의 관계가 연령 및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에 맞게 적절하지를 확인
- (교육적 욕구)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보호조치로 인한 전학 가능성 확인



- ◆ 학습부진,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및 특수교육배치 여부 파악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을 파악
- ◆ 관할 구역 내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가능성 파악
- ◆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 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함
- (취약점) 아동의 섭식상태. 충동조절. 발당장애. 학습의욕 등을 파악
- (분리보호 관련)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호조치 될 가능성 여부 및 아동의 보호 희망형태를 파악하고 보호조치 필요성 여부 평가

## 바 친부모상황점검표(서식5)

- (목적) 친부모상황(가정 및 주변환경, 양육태도, 보호조치)을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함
  - 부부관계, 직업 및 소득 정도, 부채여부, 자립가능성, 알콜 등 약물문제
  - 부모의 현재 및 과거의 지지체계, 가족사, 자기보호와 성숙 등의 영역에서 강점을 파악
- (작성방법)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
  - ※ 아동을 의뢰받을 당시 이미 친부모가 사망·연락두절되어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중인 경우 현 보호자를 대상으로 친부모상황점검 실시
  -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친부모상황점검 생략가능



부모역량 사정 시 부모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함. 부모의 일시적인 경제문제나 양육환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예시: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특히 부모의 자립이 지체되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장기보호 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음

- (가정환경 등) 가정의 경제 상황, 결혼 상태 등을 파악
  - ※ 일부 사례에서는 재혼 등의 이유로 인해 아동이 부부 및 새 가족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보호자(부모)는 주로 다른 사유로 아동을 보호해주길 요청하기 때문에 최근의 가족관계 변화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정할 필요가 있음

- (주변 환경) <u>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u>, 아동 및 보호자의 현재 및 과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파악
- (아동학대 여부) 보호자(부모)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며, 학대 정황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
- (양육태도·의지) 양육태도, 아동과의 관계, 자녀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변화가능성 등을 파악함

## 참고 양육태도 점검 시 참고사항

- 아동에게 애정을 자주 표현하는가?
- 아이에게 잘못을 꾸중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가?
- 아동이 실수할 경우 엄하게 훈육하는가?
-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는가?
- 체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예: 아동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성숙도에 맞지 않는 지나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 아동이 행동에 꾸지람의 기준이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혼자 의사결정 하도록 하는가?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을 파악함
  - ※ 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의서(예: 가정 위탁보호동의서)를 작성하게 함. 이때 구상권 청구(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함
- (지속적 연락 여부)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함을 안내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추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표 7〉 사정 시 고려사항

구분	아동	부모(보호자)	환경
1) 우선적 고려사항	<ul> <li>아동안전</li> <li>장애여부</li> <li>특수욕구</li> <li>가정보호우선조치 대상자 (2세 미만)</li> <li>한국 국적 취득여부</li> </ul>	아동학대 여부     양육의지     보호역량     가정환경(경제상황, 주거환경 포함)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 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여부	• <u>친족에 의한 보호·양육</u> ,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 사회적 자원

구분	아동	부모(보호자)	환경
2) 기타	<ul> <li>보호배치에 대한 인지 및 참여</li> <li>교육적 욕구</li> <li>사회적 욕구</li> <li>문화적 욕구</li> <li>강점 및 취약점</li> </ul>	• 부모의 성장배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고려사항		• 지속적인 연락여부	여부

## 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는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 시설 등과 연계 시행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 참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방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 [상담·사정·조사] FAO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아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아동이거나, 적절한 양육화경을 제공 받지 못하여「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제6호에 따라 분리보호를 하고자 하는 아동
  - \* 가정위탁아동,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입양의뢰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
  - \* 만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다만「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따라 분리 보호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 일시보호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의 학대피해아동쉮터.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가정위탁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인근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 가능

#### O 아동의 주소지와 일시보호하는 시설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관할 시·군·구는 누구인가요?

- A 아동의 주소지에서 상담·가정환경 조사, 보호계획 수립,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까지 수행하고 시설 주소지에 이관
  - \* 일시보호기간 동안 급여 제공을 위해 아동의 주소지를 일시보호시설 주소지로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 아동의 주소지에서 수행(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른 피해아동 관할 시·군·구도 변경 전 아동의 주소지로 동일)
  - 다만 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은 필요 시 일시보호시설 주소지 시·군·구 협조 가능

#### O 건강검진은 어떤 항목을 검사받으면 되나요?

- Α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되,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강 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
  - \* 기본검진, 전염성 질환(결핵, B형간염, 피부질환),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 O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피해아동 관련 현장출동·동행해도 되나요?

- Α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조사 수행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학대조사 수행이 불가
- 다만, 아동학대 현장조사 후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경우 상담·건강검진 등 수행 지원 가능
- Q 입양의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 또는 친생모만 등재되어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Α
- 입양 동의를 하지 않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추후 인지 청구를 통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측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
- 다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 미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만으로 입양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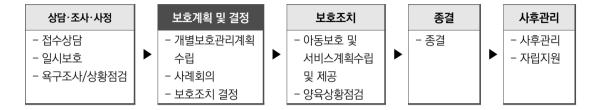
### O 외국인 부모의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출생신고 안내 → 직접 양육 시 지원 안내 → 보호조치 안내(입양, 가정위탁, 시설)
  - ②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
    - 해당 국가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해당 국가 법률상 보호조치 요청
  - ※ (참고) 미등록 외국인도 시설보호 가능(단, 지방비 또는 민간자원 필요)
  - ③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아동을 학대한 경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 ※ (참고)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의4, 아동의 비자확인 관련 정보는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비자포털 등 활용



## Ⅱ. 보호계획 및 결정

#### 1. 개요



- (계획수립)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 (보호계획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 결정

##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가 주체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성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에 적절한 보호 장소가 부재할 경우 우선 보호대상아동 주소지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타 시·군·구에 의뢰
    - ※ 보호대상이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협조요청
-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총괄하여 수립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 보호를 의뢰할 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과 협업하여 작성
  - ※ 아동을 보호하게 될 원가정외 보호기관은 서비스 계획 수립 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 나 수행시기

•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다 수행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준비사항
  - 지자체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워 및 민간기관 자원을 파악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친부모)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확인
  - 입양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입양기관 소재 여부, 미소재 시 협조 가능 입양기관 사전 파악

#### • 목표 설정

- 단기(1개월)와 장기(<u>1년 이내</u>)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 (단기목표) 아동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설정하고,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다만,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단기목표는 입양아동의 보호방법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장기목표) 아동보호 조치 후 1년 이내의 개입을 통해 아동의 상황 변경 또는 아동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표 수립
  - ※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맞추어 단기·장기 목표 달성 시기 결정



####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시

- 접수상담,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점검 등을 종합하여 욕구 영역별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 접수상담. 욕구사정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의 변화목표가 논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고려
- 보호조치의 장단기목표, 서비스 개입 목표, 제공서비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기
- 대상자 변화를 장단기목표로 수립하되 대상자 관점으로 목표 기록하기

욕구영역	우선순위	단기목표	장기목표
안전	1	원가정 분리조치	대리양육으로 아동안전 확보
건강	8	건강검진 실시	해당 나이 신체 평균 도달
가족관계	6	주1회 부모상담 실시	정기적 부모 상담으로 가족 간의 관계개선
사회적 관계	5	학교 집단따돌림교육 실시	또래관계향상프로그램 참여로 교우관계 개선
경제	4	디딤씨앗통장 가입	매월 5만원 입금 연 120만원 저축하기
교육	2	학습지 신청	매월 학습지 지원 및 향상정도 점검
생활환경	3	난방기구 설치	벽지 및 창호 교체로 주거환경 개선, 책장·책상 지원으로 아동의 공부방 확보

-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 서식8 )
  - 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의 종합평가를 기록
  - 보호조치 유형, 적정보호 기가을 결정하고 보호조치로 인해 전학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 아동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
    -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보호계획서( 서식43 ) 작성하고 <u>이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u> <u>아동학대 처벌법 제47조·제52조에 따른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u>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공유받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으로 갈음
  - 욕구 영역별 개입목표(단기, 장기)를 수립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 결정, 욕구 영역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주기 등을 명시
  - 원가정 및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또는 보호조치 변경을 위한 재평가) 주기를 설정 하고, 보호 대상아동과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날 수 있도록 원가정 지원(복귀)계획 수립
  -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 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 보호조치 유형

- ◆ 원가정 보호: 아동을 원가정 내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지원, 필요시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및 이관
- ◆ 원가정외 보호
- 입양 :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조치
- 가정위탁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며, 지속적인 원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조치
  - ※ 만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
-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가 어려울 시 고려하는 보호조치
- 아동치료시설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설 및 요양원 등의 입원·입소를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관련 동의
  - (친부모 등 보호자)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따른 급여 변경 등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면·구두로 이용 동의를 구함
    - ※ 유선(구두)으로 동의 시 계획서에 유선(구두) 동의 일시 등 기재하고, 계획 변동 시에도 동의절차 이행

- (아동)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최소화
  - ※ 설명내용 및 일시 등 개별보호·관리계획에 기재

## 참고 작성예시) 개별보호·관리계획

##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시유 (※ 중복 체크 가능) [ ]아동학대 [ ]유기 [ ]미아 [ ]비행·가출·부랑 [∨]미혼부모·혼외자 [ ]부모 빈곤·실직 [ ]부모 사망 [ ]부모 질병 [ ]부모 이혼								사진		
	신원 <u>※ 신원불명시「실종이동법」신상카드 작성</u> 182신고 [ ∨ ] 신원 확인 [ ] 신원 불명 [ ] 유 [ ∨ ] 무									
아동	성명 김소희		성별 [	]남 [	[ ∨ ]여		생년월일	실 2015년 7월	월 17일	
(학대피해	주민등록주소자	기 경기도 수원시 (	)O7 OO	로 ()()			연락처(집	일/휴대전화)		
아동)	실거주지 동일						없음			
보호자	관계 모	성명 김지영		성별	[ ]남	[ \	]여	생년월일 199	97년 9 <del>1</del>	월 18일
(아동학대	주민등록주소자	경기도 수원시 (	00 700	로 00				연락처(집/휴대	내전화)	
행위자)	실거주지 동일							010 - 000	00 -	0000
	□소년소년가	 구 □한부모가구	□부부중	심기구	□ 주손가	구 ■	미호모부	 가구 ㅁ공동차	 ルルフ	
가구유형	ㅁ장애인가구							11 -00		- 11( )
가족사항	관계 외조모	성명 한 명 순	Ş	생년월일 	1970년	8월	8일 (50	직업 )) 파출부		동거여부
	아동의 욕구(유	 2선순위)								
	[ 1 ]안전	[ 2 ]건강	[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	사회적	관계
	[ 3 ]경제 [ ]기타	[ 3 ]교육	[ ]	고용		[	]생활환경	<b>d</b> [	]법률	및 권익보장
욕구 조사	관찰된 아동(I 집중력 부족,	l해아동)의 특성: 아 모와 갈등	동안전에 둔	에, 아동	등 연령에 및	맞지 않	은 발육상	태, 아동의 어린	신이집 젖	잦은 결석, 주의
결과	보호자의 욕구	(우선순위)								
	[ ]안전	[ 1 ]건강	[	4 ]일성	l생활 유지		[ 3 ]가	족관계 [	]사호	회적관계
	[ 2 ]경제	[ ]교육	[	]고용	<del>)</del>		[ ]생	활환경 [	]법률	물 및 권익보장
	[ ]기타									
	-	의 특성: 모(김지영) 지하며 생활함. 이 <u>년</u>				으로 일	!상생활 O	l려움, 무직으로 -	<u> 인</u> 한	경제적 어려움.

	보호조치(아동	복지법 제15조)					
보호계획	[ ]상담·지5 [ ]아동복지,		의한 보호·양육(2호) 라기관·요양소(5호)		·정위탁(3호) ·상(6호) [	]기타 ( )	
	보호조치 일자	2020.10.23	보호의뢰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정위탁지원센터	
	욕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 내용	
	안전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안전한 주거공간 유지		가정위탁(2년)	보호	
a.=	건강	건강검진 및 영양제 섭취	또래 아동 성장발달도달	글	식단관리, 영잉	제 섭취, 운동(주 3회 이상)	
아동 서비스 계획	교육	주의집중력 및 학습진단	학습지원		아동학습지지원 및 학습도우미 지원		
	74.11	디딤씨앗통장기입	디딤씨앗통장 매월 유기 (1년 120만원)	۲Į	디딤씨앗통장 :	관리 지속으로 자립을 위한 저축	
	경제 국민기초생활수급 책정		수급비로 생활지원 안전한 가정		안전한 가정위	위탁보호를 위한 생활지원	
	[ V ]상담	[ V ]사례관리 연계	[ ]금품지급 [ V	]기타(	) *	중복체크 기능	
원가정 지원(복귀) 계획	<b>지원(복귀)</b> 지원 내용						
담당자 의견	보호자의 정신적인 문제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호자는 우울증 치료에 집중하며 이후 아동양육기술, 가족 <b>담당자 의견</b> 관계 기술 교육이 필요함. 아동의 안전적인 보호조치(가정위탁)를 위해 수급비 책정 및 아동 연령에 맞는 학습 및 기타 지원 필요, 이후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보호자 상담, 면담이 필요함.						
수립일		2020.10.23					
소속 경기도 수원	원시청	직급(직위) 아동보호전	담요원 성명 정	성진영		(서명 또는 인)	
						040 007 [0]HIGTI 00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3. 사례회의 운영

##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이 참석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과 팀원(<u>아동학대전담공무원</u>, 아동보호전담요원, 시설담당공무원 등)은 전원 참석 원칙
  -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보호가 가능하거나, 분리보호가 필요하더라도 가구 내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참석 가능
  - 보호대상아동을 분리 보호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호조치 관련 기관(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계자) 참석 협조
  - 그 외 사례를 의뢰한 읍·면·동 담당자 또는 타 시·군·구로 아동을 보호 의뢰할 경우 해당 시· 군·구 담당자 참석 요청 가능

## 나 수행시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변경·종결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u>사례결정위원회</u> 안건 상정을 위해 실시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결과 관련 논의 등 필요 시 수시 개최

## 다 수행방법

- 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 사정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하고 혐의함
  - ※ 자료 공유 시 보호대상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여부 확인,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 사례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한 회의자료 수거하여 파기
-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유형과 보호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보호·관리계획( 서식8 )에 대해 현장 실무자와 협의 및 조정
  - 특히, 원가정외 보호기관(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방법(제공 횟수 및 시간) 등을 확인 및 협의

-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내에서 보호하되 조사·사정과정에서 나타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자워 연계 등 혐의
- 보호조치 후에도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과 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 및 진행상황 점검
  -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시 서비스 개입 여부, 서비스 내용, 아동 및 가정의 변화, 장·단기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내용 포함

#### 〈표 8〉 사례회의 종류

보호조치 결정 사례회의	모니터링(사례점검) 사례회의	보호 변경/종결 사례회의
<ul> <li>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정 결과 공유 및 분석</li> <li>보호조치 필요 여부 판단</li> <li>(보호결정 시) 보호유형 및 보호기관 등 논의</li> <li>(가정내 보호 결정 시) 서비스·자원 연계, 사례관리 이관 여부 논의 등</li> <li>장·단기 목표 등 보호계획 논의</li> </ul>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주기, 적절성 등 논의     아동의 욕구 및 태도 변화 등 점검     원가정 양육환경 변화 점검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장·단기 목표 점검 및 신규목표 수립	<ul> <li>재평가결과 분석 및 보호조치 변경/ 종결 여부 판단</li> <li>사례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 및 가족의 변화 논의</li> <li>사후관리 계획 논의</li> </ul>

## 4. 보호조치 결정(사례결정위원회)

## 가 수행주체

#### • 사례결정위원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종료 등에 관련된 심의 업무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전 위원에게 미리 심의자료를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
-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u>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등), 아동보호</u> 전문기관, 원가정외 보호기관은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할 수 있음
  - ※ 사례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결정위원회 전반적 운영 지원
- 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보호종료 외의 안건상정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직접 안건상정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6호(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 등)의 분리 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담당

## 나 수행시기

- 보호조치 심의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심의 의뢰 후 1주 이내에 개최하여 보호조치 결정 완료
  - 다만, 학대피해 또는 긴급하게 보호해야할 사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우선 일시보호 및 필요한 조치 후 심의 가능
  -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일시보호(3개월 이내) 후 가정복귀 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음 ※ 역시보호(즐각부리) 조치가 부들이하게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역시보호 연장 장기보호조치로 전화 가정복귀를
  - <u>※ 일시보호(즉각분리) 조치가 부득이하게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 장기보호조치로 전환, 가정복귀를</u> 결정할 경우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상정
-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
  - ※ 아동학대조사결과에 따른 현장판단(판단척도 사용),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결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 또는 판단결과를 변경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법기관의 결정, 추가증거확보 등)에는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가 가능함

## 다 심의 내용 및 방법

- (심의 내용)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립한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결정
  -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기간 등 적합성 논의 및 결정
  - 보호대상아동 및 해당 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논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내에 사용 가능한 자원 확인 및 조정 등
  -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시 〈표 9〉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건상정
- (심의 방법) <u>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u>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호조치 결정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적시에 아동의 보호조치 심의 및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
  -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그 외 아동보호를 의뢰받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세부운영방법은 '사례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 참조
- (결정 통지) <u>사례결정위원회</u>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보호조치 결정통지서( 서식15 ) 송부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결정통지대상(보호자)을 구체적으로 명시(예: 아동 보호전문기관, 검사, 변호사 등)
- 결정통지대상이 학대행위자인 경우, 보호결정통지서 상 '시설(기관명)' 제외하여 송부

〈표 9〉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주요 항목	실형	맹 여부	비고
1.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가?(만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	아니오	
2. 아동상황점검표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아동상황점검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4. 친부모상황점검표에 따라 보호자의 상황이나 욕구를 충분히 파악했는가?	예	아니오	
5. 친부모상황점검표 이외에 보호자 상황, 가구 여건 등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보호조치 기간 수립 시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7.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시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를 먼저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u>예</u>	아니오	
8.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졌는가? 아닌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가?	예	아니오	
9. 아동이 질병, 장애, 학대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 내용이 보호계획에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10.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후 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1.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2. 아동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예	아니오	



####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7번 항목 부가설명

※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먼저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지를 최우선 고려하고, ❷차선으로 가정형 보호 (입양, 가정위탁)를 고려하며, ❸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시설형 보호를 진행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

#### 〈시설형 보호를 하기까지의 고려사항(가상 시나리오)〉

- 원가정보호 가능 여부(1호): ex) 가정방문결과 가정환경이 두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고. A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가정 보호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됨
- ⇒ 2-1 친인척보호 및 가정위탁 가능 여부(2호·3호): ex) OO시 시설담당공무원 및 OO도 가정 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1.7.1. 기준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위탁가정이 OO시 및 인근 지자체에 없고, A가 오랜 기간 가족과 왕래가 없어 자녀를 맡아 가정위탁을 신청할 친족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임
- ⇒ 2-2 입양조치 가능 여부(6호): ex) A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 까지만 자녀의 보호조치를 원하므로 입양은 고려할 상황이 아님
- ⇒ ③ 시설입소 가능 여부(4호·5호): ex) 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OO시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양육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형 보호로 보호조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함. 사례회의('21.6.30)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함



- ◆ <u>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부족, 타 지역 아동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의뢰(전출・입 등)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u>
  - 특히, 시·군·구는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도록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도록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제2조) 취지를 감안, 타 지역 아동이라는 이유로 관내 시설 입소를 제한 및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 방지 조치

〈출처: 아동분야 사업안내 1〉



◆ 친권 포기, 부모가 없는 등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유기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5호 보호 조치를 하면서 제6호(입양)를 병행하여 조치하여 추후에라도 영구적인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시설에 공유하는 제반 서류(입양대상아동확인서 등)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 관리시스템(ACMS)에 등록하여 입양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계획 및 결정] FAO

#### ○ 피해아동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나요?

- A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립한 피해아동보호계획으로 갈음 가능
  -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워은 학대로 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상담. 욕구조사. 아동 상황점검 등 추가 실시
- 시·군·구 사례회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 A 아동의 주소지 기준 아동보호팀장 주관하에 진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결과, 가정환경조사 등을 바탕 으로 보호계획 초안 작성 및 논의
-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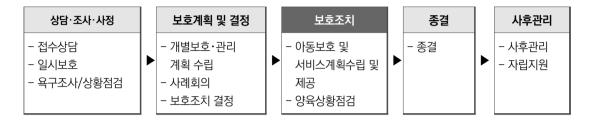
  - A 시·군·구 내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팀원 전체 참석 필요
    - 그 외 보호계획에 따라 ① 아동을 보호 의뢰할 시설 담당자. ② 아동 또는 가정에 사례관리를 의뢰(ex.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할 담당자. ③ (타 시· 군·구 시설 입소 시) 시설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 사례회의 후 원가정 보호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Q 무엇인가요?
- 아동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취약계층아동 (만 12세 이하)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드림스타트에 우선적으로 연계
  - \* 만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Q 사례회의 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A 아동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워단) 또는 지역내 복지기관에 연계, 단, 보호자 동의 필요
- ① 타 시·군·구로 아동을 보호의뢰 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주체는 누구인가요?
  - A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주소지에서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입소할 시설 주소지 시·군·구에 이관
- ① 피해아동으로 판단된 후 학대와 무관하게 아동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외 사유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보호자 정신질환, 주거환경 등)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 후 보호조치를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의뢰
    - ②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상정
    - ③ 심의 결과(장·단기보호)를 토대로 양육상황점검 실시
      - \* 장기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가정복귀 필요성 점검



## Ⅲ. 보호조치

### 1. 개요



- 사례결정위원회의 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수행
-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아동보호전담요워은 서비스 이행상황, 양육상황 및 아동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계획 수립·제공

## 가 수행주체

-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기관 등)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사례관리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필요시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지원

## 나 수행시기

-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후
  - 다만, 아동학대 등 긴급한 보호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전 보호조치하는 경우, 우선 보호 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가능

## 다 수행방법

- 아동보호전담요워은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워가정외 보호기관에 아동보호 요청
  - 심의 결과에 따라 위탁부모 및 아동복지시설장에게 아동 인도
  - (가정위탁) 가정위탁 신청 절차는 〈표 10〉을 참고하여 수행
    - ※ 읍·면·동 및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조치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서식27 ) 발급 요청 시 즉시 발급 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내역을 기록·관리

#### 〈표 10〉 가정위탁 절차

구분	절차
읍·면·동(시·군·구)	(1) 접수상담 실시(욕구조사 실시 가능) (1)-①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아동 건강검진·심리검사 실시 (2)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동의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아동의 친권자 동의(친권자의 사망·소재불명일 경우 소재불명조사복명서로 대체)
시·군·구	(3) 시·군·구 사례회의 실시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4)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 관련 서류 발송하여 위탁가정 연계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5)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부모를 시·군·구에 추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위탁부모 희망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시·군·구	(6) 위탁부모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위탁부모 주소지 관한 경찰서 장)→범죄경력유무확인(조회회신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조회 실시 (7)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8) 가정위탁 결정을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및 관련 서류 발송 * 시행규칙 별지 1호~4호, 접수상담지,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아동・친부모상황점검표,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사항 및 개별보호・관리계획서

- (양육시설, 치료시설 등 입소)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서식30 ), 아동입원 의뢰서( 서식31 ), 아동카드( 서식7 : 시행규칙 별지 4호)신청서 제출
  - ※ 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등 상세 절차는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참고
- (입양 신청) 아동보호를 의뢰한 입양기관 또는 양육시설 등에 아동에 대한 입양의뢰 및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 서식32 ) 송부
- ※ 필요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4호·제6호 병행 보호조치 결정 가능 (입양성립 시 제4호 종료)
- ※ 아동에 대한 성본창설이 필요한 경우 성본창설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입양대상아동확인서는 사회복지전산 관리 번호로 우선 발급 후 성본창설 완료 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 <u>사례결정위원회</u> 이전 보호를 실시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시 아동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은 <u>사례결정위원회에 있음을 알리고, 보호자의 희망과 달리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u>사례결정</u> 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u>
- (급여 등) 보호조치에 따른 급여(아동수당, 기초생활급여) 수급 변동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 양육시설(가정위탁 포함)에 보호 조치될 경우, 심의 확정 후 시설 주소지 시·군·구에 사례이관
- ※ 이관받은 시·군·구는 보호시설에 아동정보 공유
- 원가정외 보호기관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내용,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등 상세히 작성
  - 원가정 보호를 위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친부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포함

#### 〈표 11〉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양 등)
<ul> <li>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li> <li>양육상황 점검(계획에 부합하는지 점검)</li> <li>사례회의 개최(주관)</li> <li>주기적인 사례점검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 모니터링</li> <li>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li> <li>원가정 지원(상담, 지원 등)</li> </ul>	<ul> <li>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li> <li>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li> <li>사례회의 참여</li> <li>원가정 지원(상담, 관계개선, 부모교육 등)</li> </ul>

## 참고 작성예시) 아동카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아 동 카 드

※ [ ]에는 해!	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ł.				(앞쪽)
보호의뢰 사유 (※중복 체크 가능)  ]유기 [ ]미혼부모·혼외자 [ ]미아 [ ∨ ]가출 [ ]비행·부랑 [ ]아동학대  ]보호자 빈곤·실직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질병 [ ]보호자 수감  ]부모 이혼 [ ]기타  신원 <u>※ 불명 시 「실종아동법」신상카드 작성</u> 182신고						6.6	
[ ∨ ] 신원 확	인 [ ] 신원	열 불명		[ ]유[V	] 무		
	성명 ○□□					등록번호 )0000-00	000000
	등록기준지 충분	룩 청주시 ○○	구 00로 00-0		나이	11 세 ([	]추정 [∨]확실)
아동	주소 충북 청주시 ◎◎구 ◇◇길 000						
	학교명 ◇<	4 학년	기타				
	발생 일시 🔾	OOO. 9.21		발생 장소 서울	울시 영등	포구 00동 유	흥가 근처
	관계 모	성명 _/		주민등록번호	20000	<b>~</b>	
보호자	주소 서울시 송파국	¹ ⊚⊚로 00길	<u> 1</u> 00	000000	30000		:대전화번호) -×××
	월수입	220만원	(활수준 [ ]상 [ ]중	등 [∨]하 [ ]수급	자	주거 [ ]자기	[ ]전세 [∨]월세
	관계 외조모	성명	00	생년월일 19××년 9	9월 2일(5	55세)	직업 청소노동자
가족관계	관계 동생	성명	00	생년월일 20××년 8	3월 16일(	(5세)	직업 ◇◇>어린이집
	관계 동생	성명		생년월일 20××년 8	3월 16일(	(5세)	직업 ◇◇>어린이집
보호조치 사항	날짜	20××년	· 10월 5일	보호조치 유형 [∨] 가정위탁 [ ] 입양의뢰	[ ]아동		소 는 요양소 입원
710	보호시설명	OO가정	위탁지원센터	주소			

가정환경(성장 과정)	1. 동거 중 아동 출산 및 홀로 양육함.  - 모(△□□)는 고등학교 때 부터 후 남자친구 동거 중 첫째 ○□□ 출산  - 태어난 지 백일이 될 무렵, 남자친구가 가출했고 이후 연락두절  2. 결혼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  - 혼자 아동을 양육 중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둘째 쌍둥이 ○○△, ○○□을 출산  - 남편의 사업부도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양육 문제, 가정폭력으로 결혼 2년 만에 이혼함  3. 첫째 아동과 모의 갈등으로 양육어려움 호소  - 첫째 아동가 모의 갈등으로 양육어려움 호소  -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이 때문에 모와 잦은 갈등 발생, 모에게 꾸중을 듣고 나면 화풀이로 동생을 때려 동생들이 오빠를 무서워 함  4. 양육의 어려움으로 아동을 외조모에게 보냄  - 모는 일방적으로 아동을 외조모가 살고 있는 청주로 보냄으로 갈등 고조됨  5. 외조모의 양육기술 부재  - 외조모는 아동을 어떻게 양육해야할지 몰라 아동을 거의 방임상태로 둠. 아동은 외조모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 서울 친구들이 연락하여 가출함				
상담자 의견	아동과 모의 갈등이 깊어 관계개선이 필요(상담, 기족상담)하며, 외조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가정위탁하면서 아동상담, 가족상담 및 외조모에게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가정 복귀가 필요함				
지도·판정	1. 모와의 갈등 지속_해결의지 부족 - 아동은 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모에 대한 반항과 갈등이 커졌고 모가 동생만 감싸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음. 모와 함께 살기 싫다고 거부했으며, 계속 같이 있으면 가출을 계속 할 것 같다고 함 2. 가정환경 및 경제적 열악 - 모는 현재 상황(근무여건, 수입/집안환경,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아동 셋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다고 함 3. 양육어려움 - 모는 아동과 문제해결 없이 이대로 같이 살 경우 아동을 학대할 것 같고, 아동은 가출일 일삼을 것 같아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함. 시간을 두고 관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 외조모는 첫 손자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훈육에 대해 인지함 상담·교육을 받으며 주변에서 도와주면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금품 지급사항	- 한부모 가족 물품지원				
	작성일 20××년 10월 5일				
소속 청주시청	직위 아동보호전담요원 성명 △△△ (서명 또는				

##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양육상황 점검
  - 위탁아동과 입얏대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지워세터와 입양기관과 협력하여 양육상황 점검
  - 보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다만, 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주소지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협조요청 가능)
- 읍·면·동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 아동담당자(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 위탁가정 및 입양 전 위탁가정 양육상황 점검 협조

## 나 수행시기(점검시기)

- (단기)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1개월 내 점검 및 분기별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의 적응 여부 등 추가 점검
  - ※ 예) 21년 3월 보호조치 → 21년 4월 1차 양육상황점검 → 21년 7월 2차 양육상황점검 ···
- (장기·상시)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분기별 점검실시
  - 필요시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은 수시 실시 가능예) 21년 7월 양육상황점검 → 21년 10월 양육상황점검 → 22년 1월 양육상황점검 실시…

## 다 주요 점검 사항

- 서비스 계획의 달성수준 파악(양육상황점검 서식9)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정도(수립된 목표 일치성) ※특히 아동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아동 의견 반영
  - 보호대상아동에게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양의 충분성,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서비스 제공 방법의 적절성 등 ※ 아동 상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상담 시 아동의 실제 욕구 등을 파악하도록 함
  - 아동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욕구 재조사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정 필요 여부 등
  - 서비스 제공여건,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 여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등



#### 아동 양육상황 점검사항

- 아동이 수립된 목표에 맞게 보호되고 있나?
-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 아동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 아동의 변화에 따라서 보호조치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정이 필요한가?
- 서비스 제공 상의 문제는 없나?
- 아동의 원가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 라 수행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원가정외 보호기관)의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하여, 아동의 욕구 및 상황의 변화를 파악
- 양육상황점검은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그 외 필요시 유선 상담 등을 통해 대상아동 및 보호자의 생활실태 등 파악
  - (아동)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u>입양대상아동, 가정위탁의 경우 해당 입양기관·가정위탁지원</u> 센터와 협력하여 동행 방문 가능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제21조의3)
  - ※ 방문상담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인 경우, 위탁부모 등 보호자를 제외한 단독·대면 상담을 통해「아동의 상황(만족여부, 구성원 관계 등)」을 확인 권장
  - ※ 장기보호(1년 이상)된 아동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며, 최소 연1회 이상은 직접 방문하여 양육 상황점검 실시
  - (친부모 등 보호자) 유선 상담 또는 사례관리 연계 시 연계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 원가정복귀가 불가하거나 입양전 위탁가정 아동의 경우 원가정 점검은 제외 가능
- (재평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아동의 욕구를 재조사하고, 보호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서비스 계획 및 보호조치 변경 또는 보호 종결을 실시
  - 점검결과 서비스의 종류, 횟수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서비스계획을 재수립함

#### 〈표 12〉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점검결과	조치방안
<ul> <li>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li> <li>보호대상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li> <li>* 예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등 문제 발생</li> <li>현행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없거나 아동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li> <li>* 예시)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희망 할 경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희망할 경우</li> </ul>	욕구 재조사 <u>보호계획 변경</u> 보호조치 변경 아동학대신고 등
<ul> <li>서비스의 종류, 양 및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li>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li> </ul>	서비스 계획 재수립
<ul> <li>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li> <li>보호자의 문제가 완화되었고, 아동과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li> <li>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할 경우</li> </ul>	종결을 위한 평가

#### 〈표 13〉 아동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재평가 시 평가항목	점검내용	
원가정복귀 검토 ( 서식10 가정복귀 점검표)	<ul> <li>친부모의 양육 희망정도</li> <li>아동의 가정복귀 희망정도</li> <li>원가정의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안정화 정도</li> <li>친부모의 양육준비태도</li> <li>주변의 평가정도</li> </ul>	
다른 양육시설 혹은 가정위탁으로 변경을 검토	<ul> <li>아동이 원가정외 보호(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li> <li>아동의 보호 목적 달성 정도</li> <li>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와 관계정도</li> <li>원가정외 보호기관(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또래관계 정도</li> </ul>	

- 점검 및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조치 변경 필요 시 <u>사례결정위원회</u> 심의 및 그 결과에 대한 보호결정(변경)통지서( 서식15 )를 보호자에게 송부
  - ※ 보호계획,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변경
  - ※ 보호목적 달성으로 종결할 경우 종결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 <u>재평가에 따라 타 시·군·구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로 보호조치 변경되는 경우, 사례결정</u> 위원회 심의 확정 후 시설 주소지 시·군·구에 사례이관
  - ※ 이관받은 시·군·구는 원가정외 보호기관에 아동정보 공유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사유)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 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가능
  - (절차) 보호기간 연장신청, 일시중지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
- (기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 아동의 상황, 아동의 만족도, 담당자 소견 등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시설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사전 정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 \_※ 아동상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상담 시 아동의 실제 욕구 등을 파악하도록 함

## 참고

####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보호기간 연장사유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 아래의 사유에 한해 교차적용 가능
-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의해 연장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의해 연장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각 연장사유에 의해 연장보호 중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법 제16조제4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li>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어학연수, 1년 이내의 단순휴학</li> <li>- 단, 단순휴학은 1회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보호기간 연장</li> <li>-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학교의 졸업 시까지보호기간 연장</li> </ul>
【법 제16조제4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 제1호】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까지 지원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시행령 제22조 제2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 <u>20</u> 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 제3호】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25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 제4호】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2조제4호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			

## 참고

#### 연장기간 중 보호 일시중지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대학입학으로 보호연장된 아동의 경우 군 복무\*, 어학연수, 1년 이내의 단순휴학\*\*(단, 1회만 가능) 시 보호 일시 중지
  - \* 단, 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 보호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연장 보호,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 신청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 시 단순휴학 처리)
  - \*\* 1년 이내(1회) 휴학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질병·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 보호
-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시 익월부터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연장 보호가 재개된 달부터 재정 지원 지속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보호 일시중지 처리 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례관리를 통해 일시중지 기간 동안의 아동의 변동사항(주소지 변경 등)을 확인하여 일시중지 사유 소멸 이후 연장 보호 지원
- 어학연수·단순휴학 종료로 보호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대학에 복학할 경우 연장 보호
  - \* 일시중지 사유 소멸 후 대학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일시중지 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보호 종결 처리
-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연장 보호

## 참고 아동 관련 복지시설(생활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종류	관련 법령	비고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양육상황점검 (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대상)	
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시설로 보호조치 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장애인담당 부서)로 사례이관 및 종결(사후관리 제외)	
청소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시설로 보호조치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청소년담당 부서)로 사례이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1호	종결(사후관리 제외)	

## 「보호조치 FAO

#### ① 타 시·군·구로 아동을 전원조치 시 업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전원조치 사유 발생 시 현 아동 보호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시설 변경 등 개별 보호·관리계획 변경
  - ※ 가급적 아동을 전원 조치할 시설에 대해서 현황 파악 필요
- ② 현 보호 주소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보호조치 변경 결정 및 전원조치 할 시·군·구로 사례이관
- ③ 사례를 이관받은 시·군·구는 시스템에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1개월 이내 양육상황 점검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A ① 아동을 응급조치 하였으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이 없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및 아동학대전담 공무워에게 보고
  - ② 분리보호 결정 됐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인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 및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되,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
  - ③ 분리보호 결정 됐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결회의 결과를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며, 이후 아동보호전담 요워은 양육상황점검을 단독수행

#### O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이외 전원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타 법에 의한 시설(청소년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로 전원조치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 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토 필요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원 조치 결정
    - ※ 전원 조치 시 사전에 해당 부서(예: 장애인 복지시설로 전원 시 시·군·구 내 장애인 담당 부서)와 협의 하고 심의 결과 전달 필요

####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Α

-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 후 1개월 내 양육상황 점검하고, 이후 보호조치 종료 전까지 3개월 단위로 점검(보호조치 기간과 무관)

#### 어 서비스 계획 수립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Α
- 아동의 보호의뢰 또는 서비스 제공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작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근거로 작성
  - \*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 \* 가급적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전 논의 필요
  - \* 시·군·구는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보호조치 결정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필요
- 의뢰 받은 기관(원가정외 보호기관)은 작성한 서비스 계획을 시·군·구에 제출
  -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외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 주체 및 횟수, 방법 등은 반드시 제출

### O 아동이 거주하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Α
- (폐업·휴업 등)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 (시설 폐쇄·사업정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을 폐쇄·사업정지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아동복지법 제56조제2항)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상정

### ○ 양육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해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변경 심의는 어느 시·군·구에서 하나요?



- A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주소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진행
  - 다만, 입양절차 진행에 따른 주소지 변경(ex 입양 전 사전위탁) 시, 변경된 보호 주소지로 사례 이관하여 양육상황점검 등 실시

#### O 입양 관련 가정법원의 허가 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대상인가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으로 입양대상아동(법원 허가 전까지)을 의미
- 입양 성립 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6회)



## Ⅳ. 종결

### 1. 개요

#### 상담·조사·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 개별보호·관리 - 아동보호 및 - 사후관리 - 접수상담 - 종결 - 일시보호 계획 수립 서비스계획수립 및 - 자립지원 - 사례회의 - 욕구조사/상황점검 제공 - 보호조치 결정 - 양육상황점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예시 :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이 달성되었거나 보호 연령이(만 18세) 달하였을 경우 보호종료(해당 시설 퇴소) 여부 결정

#### 참고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아동복지법 제16조)

-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 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개정 2020. 12. 29.〉

## 참고 가정 복귀 신청(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 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 복지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9.]

####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관련 기관과의 사례회의 →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에 대한 심의

#### 나 수행시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을 받거나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 된 경우
  -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제 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가능(Ⅲ. 보호조치 참고)
- 입양은 법원의 입양허가 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시 종결

## 다 종결 유형별 수행방법

-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비 학대피해아동, 만 18세 미만)
  - 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원가정외 보호기관(예: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의 사례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예: 가정위탁지원센터)은 원가정 복귀 의견서를 시·군·구(아동보호전담 요원)에 제출( 서식11 )
  - ※ 부모의 성품·행실 불량 등으로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보호 필요
  -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자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주체는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 ② 아동의 보호자 등 가정복귀 신청자는 양육계획서( 서식13 ) 작성하여 시·군·구(아동보호전담 요워)에게 제출
  - ③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외 보호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이 복귀하고자 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복귀 점검표 작성( 서식10 )
  -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의견 청취 후 7일 이내 가정 복귀 점검표 (서식10)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 해결여부 확인
  - ※ 아동의 원가정 주소지와 보호시설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아동의 원가정 주소지에 방문 협조

- ④ 아동보호전담요워은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보호종결 안건 상정 및 결정
- 가정복귀 점검 및 아동, 보호자, 원가정외 보호기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 사례회의를 실시 후 종결심사서 작성
- 원가정 복귀 시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 확보하고,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후 귀가 적합성 파악
- ⑤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되면, 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동의 보호 주소지 시·군·구에 가정복귀 신청서( 서식17 )를 제출, 제출된 신청서는 2일 이내 처리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담당할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는 종료 후 거주할 시·군·구로 사례이관
- ⑥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 실시(아동 주소지에서 시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서식 29) 확보 ※ 필요시 원가정외 보호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

#### •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학대피해아동)

- 학대피해로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항2호~4호 근거에 따라 분리 보호한 피해아동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아동학대 행위자 여부 관계없음)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 표 가정복귀 절차를 필수 적용함

####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절차(2020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2권 88p 내용 요약〉

- 아동 및 보호자 가정복귀 의사 확인(보호자의 양육계획서,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 © 가정복귀 요건 확인(해당 사건 법적처분 종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최근 1년간 재학대 발생 없는 경우)
- ⓒ 양육환경 점검 (아동 및 보호자 심리평가 및 면담을 실시)
- ② 가정복귀 계획 수립
- @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발급)
- ⓐ 공공연계 시례회의 실시(필수참석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장 또는 팀장, 담당 상담원, 해당 시설장 등)
- ①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및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출
- ◎ 사례결정위원회 통한 복귀 승인 시 아동귀가조치 실시
- ② 시후관리 실시(1주일 이내 가정방문, 이후 1개월 주 1회, 3개월 간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모니터링)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표 및 가정환경조사 등 바탕으로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례결정 위원회에 보호종결 안건 상정 및 결정(대면심의 필수)
- ※ 단,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제6호(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 등)의 분리 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담당하며, 그 외의 안건상정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사례결정위원회에 직접 안건상정
-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가정 복귀 요건 충족 여부 및 사례결정 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 종료 여부 결정
- ※ 원가정복귀 점검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가정환경조사로 갈음하여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되면, 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u>가정복귀</u> 신청서( 서식17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확인서를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 제출된 신청서는 2일 이내 처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서식 29) 확보 ※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

# {Tip}

- 학대 등의 문제로 보호조치 되었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해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아동의 가정 복귀가 안전한 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받아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
- 아동이 성장하면서 장애소견이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위탁부모가 아동 행동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할 경우 다른 위탁부모에게 재배치 전까지 보호 요청함

#### 참고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가정복귀 시

-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아동학대 사례 판단되지 않아 가정복귀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관계회복 지원 후 복귀
-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중장기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거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하였으나 가정복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축약된 가정복귀 절차를 실시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의견서 제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출받은 의견서 확인, 점검하여 복귀여부 결정함

## 참고 종결 시 고려 사항

- 서비스 계획에 따른 평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원래 수립했던 목표대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부모의 양육 환경 상황점검표를 작성하여 양육환경 등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종결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종결 시 사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별도 안내문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임
-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된 대상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유지 여부 확인

#### •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를 종료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 하거나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 보호조치 종료(퇴소)신청서(서식16: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를 제출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서식 29) 확보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시 시·군·구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함을 안내
- 자립지원·지역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자립정착금 등 지급 여부 등 확인
- 보호종료 후 아동의 주소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종결 후 해당 시·군·구로 사례이관



- 부모가 아동의 자립정착금을 받아 아동 자립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전 요건 부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보호 연령 초과로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학 장학금,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안내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절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u>사례결정위원회</u> 개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변경,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아동을 전원할 시설에 인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피해아동 보호계획 변경 요청서 송부 ⑨ 아동의 전원 조치 결정 내용 확인 후 전원 할 시설에 아동 직접 인계 ⑩ 변경된 피해아동보호계획서 바탕 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계획 재수립	② 피해아동보호계획 변경요청서 확인 ③ 아동보호전담요원 전원조치 필요 내용공유(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⑧ 안건 심의 결과 반영하여 피해아동 보호계획서 재수립 후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통보	④ 전원조치 등 보호체계 변경 등 필요 조치 검토(필요 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청취) ⑤ 아동 및 친부모 상황점검 ※ 친부모상황점검 생략 가능 ⑥ <u>사례결정위원회</u> 안건 상정 ⑦ 안건 심의 결과 해당 시설 통보 ※ 시·군·구 변경 시 사례이관

※ 표의 원문자 번호 순서에 따라 업무 진행



## 보호대상아동이 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중 소년법 처분(제32조)을 받은 경우 사례이관 및 종결방법

구분	기간	방법
소년법 제32조 제6호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3호) 6개월 입소 * 6개월 연장 가능	- 기존 시설 퇴소 조치 등 보호조치 및 보호계획 변경 후 아동보호 치료시설 주소지로 이관하여 양육상황 점검 ※ 이 때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불필요 ※ 기존에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나 소년법 제32조제6호에 따라 보호 치료시설로 입소한 경우는 양육상황점검 대상에서 제외 - 보호처분 종료 후에도 만18세 미만 등 보호 필요 시 보호치료시설 주소지에서 보호조치 또는 사후관리( 아동의 주소지 변경 시 이관) 실시 ※ 보호치료시설 주소지는 아동의 보호조치 또는 보호 종결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u>소년법</u> 제32조 제7호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6개월 입소 * 6개월 연장 가능	- 기존 아동보호 주소지에서는 양육상황점검을 중단 ※ 이 때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불필요 - 보호처분 종료 후에도 만18세 미만 등 보호 필요 시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주소지에서 보호조치 실시
소년법 제32조 제8호~ 제32조 제10호	소년원 송지 32조 제8호~ (1개월~ 2년 미만)	이용을 포모했던 구조시에서 모모되지 될지 ※ 보호처분 전 주소지는 아동의 보호조치 또는 보호 종결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 ○○가정위탁지원센터

ᄉ ᄊᆞ◯◯ ᄊ자

수 신:	OO 시상								
가정 복귀 의견서									
	아동명		추한나			g별 여			
ا ا	생년월일(연령)	2011. 8. 4	2011. 8. 4(11)세		보호	조치일	20	019. 4	. 9
아동	주소	경기도 수원	시 00구 0	○길 00	)0 3층				
	보호시설명	OO가정위 <sup>트</sup>	낙지원센터						
	성명		추성진			성별			남
	거주상태	자기	자가/ <u>전세</u> /월세			과의 관계			부
보호 예정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				(아동과의 지속적인 만남 정도 등)			분기별 1회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경기도 수원	시 00구 0	○길 00	)0 3층				
	성명	성별	연령	-	관계	직업/	/학교		비고
가족	추성진	남	40		부	경찰			
관계	공은숙	여	39		계모	교사			
	추자연	여	5	-	동생	⊚⊚어	린이	집	
아동의 의사 아동은 부에 대한 원망(부모이혼)이 있었으나 계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 복귀를 희망함. 부는 분기별 1회 이상 아동과 만남을 지켰고, 월 1회 이상 전화 통화함									
	거주예정 가정환경 방 3개, 아동방 별도,			거 있음.	아동복귀	계획 일정 노	크름 7	덕에 아	동과 함께 쇼핑하며

필요물품(의류, 학용품, 침구류 등) 등 구입함

#### 의견

####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부와 계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와 계모 모두 부모교육 참여, 양육환경점검 결과 문제상황 없음.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동안 위탁부모에게 아동의 특성 및 자녀양육태도 등을 상담받음

#### 원가정외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부는 모와 이혼 뒤 재혼했는데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뒤 부는 아동 양육에 대하여 걱정하였는데, 계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아동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고, 분리보호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분기별 원가정과의 만남, 부모교육 참여,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2년 성장했으며, 위탁초기 6개월간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한 상태. 2년 동안 위탁부모는 아동이 미술에 관심이 높아 미술학원을 보내 미술대회 등 수상경력이 많음. 위탁부모는 부모교육에 참여, 아동과 함께 캠프, 나들이에 매년 참여함. 원가정 만남 시 아동과 함께 친부모 만남 동행하며 친부모에게 양육기술, 아동의 정보를 제공함

> 작성일 2021.07.17

## 가정 복귀 점검표

작성일 0000.00.00

아동 성명(성별)	조정석	생년월일(연령)	2015.8.8.(7세)	보호자성명(성별)	조우주	생년월일(연령)	1985.6.24.(37세)
보호유형	가정위탁	보호기관(연락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100(0E)	<del>-</del> 11	0022(00)	1000.0.2 1.(0774)
<u> </u>	710117		(0000-000)	이트리아 코레	н	보호예정	경기도 의정부시
보호조치일	2018.4.8	담당자	김미도	아동과의 관계	부	거주지 주소	○○길 00, 5층

번호	평 가 항 목	평기	ነ ∨	형시0루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예 ∨	아니오	과거에 비해 부부싸움은 줄었으나 가끔씩 싸운다고 함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 지적장애( ), 우울( ), 기타( )  □ 신체장애: 장애종류( )  □ 질 환 명:	예	아니오 V	
3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부 □ 직업: 트레이너 □ 근로시간 13:00~21:00 ■ 모 □ 직업: 마트종사자 □ 근로시간 10:00~17:00	예 ∨	아니오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평균 300 만원 ■ 부채: 6천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예 ∨	아니오	아동이 원가정외 보호하는 기간(3년) 동안 약 3천만원 갚았고 현재 6천만원 남아 있음(모의 수입 전부와 부의 소득 일부를 부채 갚는데 사용)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	예	아니오 V	모는 술을 끊고 운동하며 건강회복, 그 이후 마트에서 일하게 됨. 술은 남편이랑 함께 있을 때 마신다고 함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105

 사사 부ルド
 寿부 부8版
 技管 P스I 바사호보공 0 부 1版
 制 0 P스I 바사호보공 10 부 1版

번호		평 가 항 목	평	<b>ነ</b> ∨	특0사항
6		지가 일정하다. ] 전세(보증금: ) ■ 월세: 40만원(보증금: 4,000만원)	예 ∨	아니오	주거지는 일정하며, 부채 갚으며 1년 뒤 전세로 옮길 계획임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예 ∨	아니오	방 2개 중 1개를 아동방 사용계획, 부부가 아동과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때 좋아하는 것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아동물품을 구입하여 방을 꾸몄다고 함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월 1회 정도			아니오	분리보호 초기에는 모의 알콜치료로 6개월 간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가 모의 상태가 호전된 뒤로 평균 월 1회 만남, 아동도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함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예 ∨	아니오	가족과 분리, 모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충격으로 1년 정도 심리치료를 받았고, 모의 알콜치료 완료 후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 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되어 함께 살기 원함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V	아니오	모는 병원 입원 6개월, 통원 6개월 후 일상생활 가능했으며,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및 모임에 3차례정도 참여함. 경제활동 및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아동을 양육할 준비를 함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부모는 양육상황점검 결과 원가정 복귀가 가능함. 특히 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알콜치료에 집중하며 완치 후 부모교육 및 경제활동까지 적극적 으로 실행함. 다만 부부싸움이 가끔씩 있고, 거칠때가 있어 관련 상담지원 및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필요할 것임.					



# 종 결 심 사 서

관리번호	T2	2017030103821		보호유형		가정위탁	
<u>보호조치일</u>	2017 년	4월 3일 ( 월 )요일		종결심사일	2020년	· 2월 17일 (월)요일	
종결유형	■원가정 ≒	븎귀 □연령도래	□기타(	)			
구분			평	기 영 역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ul><li>○ 아동은 오</li><li>○ 위탁부모</li></ul>	개별보호·관리계획, 재사정 등 과정 등 종합하여 작성〉 ) 아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치료(1년) 후 회복됨 ) 위탁부모 및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음. 위탁가정 누나로부터 학업지도로 학업성적 약 20%로 상승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1~2회정 ○ 부(설비기 긍정적 평 부터 아동	부는 재혼하였으며, 아동양육에 대한 고민 중 계모가 아동의 가정 복구에 찬성하여 정기적 만남(분기별 1~2회 정도),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참여, 가정방문하여 가정환경을 점검함 부(설비기사)와 계모(보험설계사)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모교육도 참여함. 양육환경점검 결과 긍정적 평가항목이 8개로 원가정 복귀 가능하다고 판단함. 또한 아동과의 만남 시 위탁부모로 부터 아동의 특성 및 자녀양육태도 등을 상담받음					
종결사례평가	<ul> <li>〈서비스 제공과정, 양육환경 조사 결과 등 종합하여 작성〉</li> <li>○ 가정위탁 배치 시 아동용품구입비로 아동가구, 의류, 학용품 등 구입함</li> <li>○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결을 위하여 1년 동안 심리치료 받음(위탁부모와 상담원이 교대로 함께 참여함) 특이사항 발견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위탁부모와 상의하며 아동을 양육함</li> <li>○ 위탁부모는 부모교육 참여 및 가정위탁 캠프, 나들이, 송년의 밤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연 3회 이상)</li> <li>○ 00기업후원으로 아동에게 매월 5만원씩 결연지원금을 위탁부모는 아동통장에 모두 저축함 (종결 시 약 200만원)</li> <li>○ 아동이 분리보호되어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개별보호・관리계획 95%달성되었으며,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여 원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평가함</li> </ul>						
사후관리계획	○ 원가정 복귀 7일 뒤 가정방문예정(아동 가정환경 조사 및 부모의양육태도 점검) ○ 아동과의 상담하여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점검, 다음 방문 고지(3주 뒤) ○ 아동의 통장관리 및 용돈관리 점검 ○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정보 제공 등						
				작성일	2021년	2월 13일	
소속 □□시청		직급(직위) 아동보호전	선담요원	성명	최서희	(서명 또는 인)	

## [종결] FAO

#### O 보호대상아동을 연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Α
- 연장 사유(대학입학증명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증명서 등) 확인 후 내부 회의(연장사유 충족 여부 검토)를 거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서면·사후심의)
- O 18세 아동이 연령도래로 종결 후 원가정에 복귀하면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인가요?
  - A 연령도래로 인한 종결 원가정복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대상(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충족한 경우)
- O 17세 아동이 조기 취업된 경우 자립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Α

- 원칙적으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제외 단, 심의를 통해 지급결정 가능

#### ○ 사례이관 받은 시·군·구는 원가정외 보호기관에 어떤 서류를 발송해야하나요?

## Α

구분	원가정외 보호기관 발송 서류			
보호조치 후 발송	• 접수(초기)상담지 • 친부모상황점검 결과 • 개별보호·관리계획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아동상황점검 결과    아동카드		
보호변경 후 발송	• 아동카드	• 변경된 개별보호·관리계획서		
보호종료 후 발송	• 기존에 아동을 보호했던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수행하므로 전달 서류 없음			

- 보호결정, 변경, 종결 과정에서 사례이관이 진행되는 경우 이관받은 시·군·구는 아동정보를 반드시 원가정외 보호기관과 공유



## Ⅴ. 사후관리

#### 1. 개요



•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연령 초과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하여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참고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16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입양이 성립된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진행

## 참고 사후서비스 제공(입양특례법 제25조)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한 아동

#### 가 수행주체

- 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사후관리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 ※ 입양된 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 모니터링 실시
  - 해당 아동의 원가정에 대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또는 드림스타트, 희망복지 지워단 등에서 사례관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사례관리 실시기관에서 사후관리
-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 사례관리 담당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나 수행시기

- 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
  -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을 포함한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 원가정복귀 후 일주일이내 가정방문 실시 및 1개월 이내 2회 이상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6개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 (가정위탁지원센터) 최소 6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 실시
- 입양된 아동의 경우
  - (입양기관)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간 의무이행(6회)
    - ※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부과

#### 다 수행방안

-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원가정외 보호기관)으로 하여금 귀가한 아동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가정별 상담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상담 시행) 이행 및 점검
  - 아동을 원가정 복귀전에 작성했던 양육계획서 서식13 및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 서식5·6 )를 참고, 사후관리 점검표( 서식17-1 )활용하여 점검
  - 아동의 분리보호 전과 비교하여 부정적 항목이 증가하였을 경우 사례회의를 거쳐 드림스타트로 서비스 연계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외 보호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
  -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수행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제출받고, 특이 사항 발생 등 필요 시 입양기관과 동행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또는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3. 연령 초과로 종료된 아동(자립지원)

## 가 수행주체

-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원가정외 보호기관
  - <u>(위탁아동) 종결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후관리를 수행하되, 아동 전출 등 필요한 경우 해당</u> 지역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협조할 수 있음
  - (양육시설아동) 사후관리는 아동이 타 시·군·구로 전출되더라도 해당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 요원이 수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점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이 전출한 지역의 자립 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거나 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협조로 수행
- 아동보호전담요워
  - 자립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 미배치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 수행

#### 나 수행시기

- (원가정외 보호기관) 연령초과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사후관리(연 1회 자립수준평가)
  - %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 지원
  - ※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계획 변경(자립수준평가) 및 필요 서비스 연계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연 1회 자립지원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종료 이후 최초 2년 간 연 2회, 이후 연 1회 정기적으로 유선상담을 통해 사후관리 점검표( 서식17-1 )활용하여 점검

## 다 주요내용

- 자립지원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38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 수립
  -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최대 5년)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 지원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하여 사회초기 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 <u>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연 1회 자립수준평가를</u> 실시하며, 필요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적극 협조

## 〈표 14〉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제공주체
소득지원 (자산형성지원)	<ul> <li>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li> <li>디딤씨앗통장(CDA, 아동발달지원계좌)</li> <li>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li> <li>긴급지원(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li> </ul>	
주거지원	청년 전세·매입 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임대료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     보호종료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앙정부
취업지원	<ul> <li>창업성공패키지(전국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지원)</li> <li>내일배움카드</li> <li>대학재학생 직무체험, 대학일자리센터</li> <li>고용복지플러스센터</li> </ul>	
학업지원	• 국가장학금( I , II 유형) • 국가근로장학금(교내, 현장) • 학자금 대출 • 대학진학 시설아동 기숙사 우선배정 • 폴리텍대학(우수 기능인력 양성)	
자립지원금	• 자립정착금(보호종료 당해 연도 지급, 500만원 이상) • 대학입학금 등 지원(지자체별 지원액 상이)	각 지자체
심리정서지원	• 보호종료아동 심리상담 서비스	
기타지원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보북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표 15〉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주요비교

구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근거하여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지급(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지원기준	• 1인당 5백만원 이상(지자체별 상이)	• 매월 30만원
지급시기	• 보호종료와 동시에 지급원칙(당해년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최대36개월)
제출서류	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사이버 강의 이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 구체적인 사항은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참고

## 참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여성가족부)

#### • 개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접수·처리

#### • 추진 체계



####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

### •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ol> <li>① 진찰·검사</li> <li>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li> <li>③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li> <li>④ 예방·재활</li> <li>⑤ 입원·간호</li> <li>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li> <li>*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li> </ol>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①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① 수련활동비② 문화활동비③ 특기활동비④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3 ₽

# 부 록

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11. 아동위원 제도운영

Ⅲ.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Ⅳ. 입양기관 현황





## 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가 개요

• 지역 아동복지정책의 전문성·충실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복지 및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소속의 기구 (아동복지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나 주요 기능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1호) 지역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한 사항
  - (2호)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 (3호)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
  - (4호) 법 제18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5호) 법 제19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6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7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해체 위기에 있는 고위험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기간 연장, 지역 내 아동 정책 수립 및 시행·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발굴·심의(또는 보고)할 수 있음

#### • 위원회의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위원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1호)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시·도 교육청 (시·군·구의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2호)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아동에 대한 친권제한·일시정지 청구 등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관련 분야 경험 있는 변호사
  - (3호)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아동의 장애 여부·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정신건강과 등(권장) 아동 분야 경험있는 의사
  - (4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 팀장급 이상으로, 현장 실무에 능한 사람
  - (5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호)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호) 그 밖에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위원의 임기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
  - ※ 위촉 위원 중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노동관서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 전출, 퇴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다른 위원을 재위촉함
- 위원 연임 여부, 기간은 지자체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 위원의 해촉

- 주체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유: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비밀 유지 준수 의무 위반,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 해촉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르되, 조례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동 지침을 참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해촉 절차 진행

#### • 기타 사항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조례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지침을 참고

#### • 위워회 회의 개최

- <u>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보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이</u> 발생한 경우 적시성·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활용
  - ※ 사례결정위원회를 제외한 소위원회(아동급식 관련사항 심의 등)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다만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위원장 직무 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반드시 민간 위원일 필요는 없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 (법 '17.9.19 개정, '17.12.20 시행)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 보고 사항
  -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2. 사례결정위원회('21.6.30.~)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결정을 중심으로 서술함

## 가 개요

- (의의)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 및 시· 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 (시행 배경)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장 및 유관 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 아동 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12.29 공포, '21.6.30. 시행)

## 나 주요 기능

- (아동 보호)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하여 <u>보호대상아동에 관련한 아래의</u>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 심의의 효력을 갈음함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지역 아동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활용 권고
  - 보호조치 : 아동을 원가정과 분리하여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
  - ② 퇴소조치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아동의 연령도달(만 18세) 등의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종결 결정
  - ③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 부모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성 검토
  -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다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사례결정위원회는 <u>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u> 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인 관계로 개최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라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운영)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아동보호팀 등)에서 운영함
  - <u>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변경·보호종료 외의 안건상정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u> 전담공무원 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사례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함
  - ※ <u>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u> 아동학대전담공무원(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직접 안건상정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6호(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 등)에 해당하는 아동을 담당
- (개최주기) 사전심의 의무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 종료·퇴소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라 워가정 복귀하는 경우<sup>\*</sup>
  - \*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
- 사례결정위원회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u>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실무자는 안건설명을 위해 참석할 수 있음
- (심의방식)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전·대면 심의 의무안건" 외 안건은 지자체가 심의 방식(사전·사후/대면·서면) 결정
  - '사전·대면 심사 원칙'인 안건의 긴급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 중심으로 참석 범위 조절하여 개최 가능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화상회의 가능)
- (심의다위) 워칙적으로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시·군·구 사례결정위워회에서 심의함
  -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시·군·구와 아동 주소지 시·군·구가 상이하거나 아동의 보호

장소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등 <u>시·군·구간 역할 조정 및 총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시·도</u>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시·군·구는 <u>먼저 시·군·구</u> 간 협의 등 <u>자체적 해결을</u>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와 사전 협의하여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시·도는 <u>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시·</u> 군·구와 협의하여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 (심사서류)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8)은 공통 필수로 작성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되. 기타 추가로 첨부하는 서류는 아동의 특성 및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운영함
  - (보호조치 결정) 욕구조시표(서식3), 아동상황점검표(서식6), 친부모상황점검표(서식5), 건강검진· 심리검사 결과서, 사례회의 회의록 등
  - **(보호조치 변경)** 양육상황점검표(서식9)
  - **(보호조치 종결)** 종결심사서(서식12)
  - ※ <u>원가정 복귀인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u> (가정복귀점검표(서식10), 가정복귀 의견서(서식11), 양육계획서(서식13),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서식45-1) 등 활용)
- (후속조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은 후, 보호자 및 보호기관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서(서식15)). 회의록 등 관련자료 시스템 등록 필요
  - ※ 보호조치 종료사유에 따라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서식16) 또는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서식17)

## 마 세부 운영기준

- 보호조치 결정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1~2호) 사례결정위원회 대상안건 아니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의뢰된 경우 <u>내부 사례회의 통해 보호조치 결정</u> 후 <u>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해당 부서로</u> 사례이관, 이관 후 시스템 종결처리
  - ※ 원가정 보호를 우선하되,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도를 안내하여 최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 하도록 노력함 (표 9 사례결정위원회 체크리스트 활용)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6호) <u>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u>이며,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보호조치 결정 심사 안건상정함
  - ※ 아동복지법 이외 장애인복지법(제5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근거한 시설에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될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 및 시스템상 '보호조치-기타'로 등록,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하여 해당 부서로 사례이관 후 시스템 종결처리

※ 입양에 필요한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제4호)를 병행해서 해야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함께 상정·심의함

#### • 보호조치 변경의 경우

- 아동의 가정형 보호조치 위배(예: 가정위탁→시설) 또는 아동 생활반경 변경 등 아동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보호조치 변경은 <u>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u>이며, 가정형 보호 전환(예: 시설 →가정위탁)의 경우 사후·서면심의 가능
- 연령도달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시설 전원조치 등은 사후·서면심의 가능

#### • 보호조치 종결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사례결정위원회 대상안건 아님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친권자·후견인 등 <u>가정복귀 신청이 있는 경우 사례결정 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u>이며, 피해아동이었던 경우 학대전담공무원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등 사례관리·서비스연계 대상아동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종결심사 안건상정\*함
- ※ 해당 부서에서 종결심사서 작성하며, 종결심사서(서식12) 참고하되, 자체 종결심사서 양식 활용 가능함
- ※ 연령 도달, 보호조치목적 달성으로 인한 보호조치 종료인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대상안건 아님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5호) <u>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u>이며,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종결심사 안건상정함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원가정 복귀,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 조치 종결은 사례결정위원회 <u>사후·서면심사 가능</u>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종결심사 안건상정함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4호·제6호 병행 조치되었던 경우, 종결심사시에도 함께 상정, 심의함

## 바 기타사항

아동복지법령 및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



## Ⅱ. 아동위원 제도 운영

#### 1. 목적

-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아동 발굴·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 아동위원을 두어야 함(아동복지법 제14조)

#### 참고 아동위원(아동복지법 제14조)

-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2. 운영 방안

-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아동위원은 시·군·구 단위로 위촉·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운영 가능
- (대상) 신원이 확실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 및 열정이 있는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인권센터 직원, 전·현직 교사 및 경찰관, 시·도 사회복지위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급식이나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단체 소속 인사, 가정위탁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종 지역사회 내 아동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규모) 지역 여건, 아동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요 업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아동 관련 업무를 지원
  -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 관할 구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 추가·변경 가능
-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시·군·구의 경우 아동위원을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매뉴얼 '참고(별도 배포)
- (운영) 아동위원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아동위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및 해촉
  - 아동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경우 또는 기타 인권 보호관으로서 활동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아동위원의 임기, 연임 허용 여부, 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 아동위원 협의회·위원회 운영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결정하며, 지역 내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 담당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소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또는 위원회 내규 등을 통해 규정 가능
  - 아동급식관리위원회 등 유사 협의회·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위원회 등 활용 가능
  - ※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예시) 참고

#### 참고 ○○○시(·군·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예시)

※ 동 조례안은 예시이며, 각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운영 가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으로 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시(・군・구) 위원은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 2. 아동복지 관련 단체, 아동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년 이상 아동복지나 아동인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3. 영양사협회,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급식 관련 업무나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 중 아동인권에 관심이 많고, 인권 관련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아동복지 시설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그밖에 위원 위촉,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아동위원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 2. 아동복지 담당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 3.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 4. 아동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 5.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 6. ○○○시(・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관련 활동
- 7. 기타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 기타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궐위나 사고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시)

② 위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 인구나 접근성, 아동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또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군·구) 아동복지담당 과장 및 ○○○시(·군·구) 읍·면·동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③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⑦ 혐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 제6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 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은 ○○○시 (·군·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아동 인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Ⅲ.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 1.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개요

- (목적) 아동보호서비스 전 과정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서 보호자의 역량강화 및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으로 아동을 원가정 복귀시키기 위함
-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 (시기) 초기상담부터 원가정복귀되어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
- (수행주체) 시·군·구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
- (대상) 원가정복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 ※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 아동의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별도 수행
- (주요내용) 아동 및 보호자 상담, 부모교육, 가족프로그램, 가정방문, 지역사회(학교) 탐방 등
- (사업비) 시·군·구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비-서비스 연계 제공비 활용

## 2.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절차 (예시)

## 가 상담·조사·사정 단계 (보호조치 전)

- (개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조사·사정과정(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에서 원가정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하거나 추후 원가정 복귀 계획에 대한 상담 실시
- (주요내용) 욕구조사,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과정에서 원가정보호·유지 가능성 확인 및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원가정복귀 계획(원가정복귀 시점 및 노력) 점검
  - (욕구조사) 가족관계, 경제, 생활환경 등 보호자(아동)의 원가정 복귀 관련 내용 점검( 서식 3 욕구조사표)
  - (아동상황점검) 원가정 복귀 관련 욕구(부모와의 정기적인 만남 희망정도) 점검 ( 서식 6 아동상황점검표 분리보호 관련 문항에서 확인)

- (친부모상황점검) 가정환경, 양육태도 등 원가정 복귀를 위한 계획·노력 점검 ( 서식 5 친부모 상황점검표)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상담·조사·사정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원가정 지원(복귀) 계획 작성(서식 8 개별보호·관리계획서)
- (공개강좌) 취약계층 보호자, 양육기관 등 종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내 공개 부모교육

## 나 양육상황 점검 단계 (보호조치 중)

- (개요) 보호조치 중인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 상담·조사·사정단계에서 수립된 원가정 복귀계획 이행지원 및 모니터링
- (주요내용) 양육상황점검(보호조치 목적 달성여부 및 원가정 점검) 실시 및 부모(양육기술)교육, 가족 상담, 가정방문, 가족프로그램 등 원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프로그램 지원
  - ①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시설 적응정도 및 서비스 만족도 확인, 원가정(보호자) 가정복귀(양육의지, 태도 등) 상담 실시(분기별)
  - ※ 분리보호 된 후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유선, 문자, 편지쓰기, 만남 등으로 정기적으로 아동근황 확인
  - ※ 원가정외 보호기관: 사진, 동영상 등으로 아동의 일상기록 및 부모와 공유
  - ② 부모(양육기술)교육: 가족 재결합(부모의 의무, 아동정서 다루기 등) 및 양육의지 등 소규모 집합교육(역할극 포함, 반기별)
  - ③ 가족상담(가족참여회의): 보호종결 전 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상담・가족참여회의
  - 부모·아동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 상실에 대한 심리상담 등
  - ※ 가정방문 또는 가족 외식지원 시 병행 가능
  - ④ 가정방문: 보호종결 전 보호자로부터 양육계획 및 가정복귀 점검(가정 복귀 의견서, 가정 복귀 점검표 활용)을 통해 아동의 가정 복귀 의사 및 보호자의 양육태도 확인
  - ⑤ 가족프로그램: 보호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숙박 및 가족외식 지원
  - 부모(양육기술)교육 이수 및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보호자 대상

## 다 종결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 (개요) 원가정 복귀로 보호조치 종결된 경우, 아동의 가정생활 적응정도, 보호자 양육태도 등 모니터링
- (주요내용) 사후관리 실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① 가정방문(점검): 원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자의 가정생활 점검(생활환경 및 아동의 만족도 등)
  - ※ 아동보호전담요원: 양육계획서, 아동· 친부모상황점검, 사후관리 점검표(보호자 양육태도, 보호자의 자립정도 등) 등 활용
  - ※ 원가정외 보호기관: 가정방문 협조, 아동·부모상담(상시) 등
  - ② 지역사회 자원 연계(학교, 돌봄센터 등): 원가정 복귀로 바뀐 교육환경(전학 등)에 대한 아동의 지지체계 확보 및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 연계

## 3.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표준내용 (예시)

## 가 상담·조사·사정(보호조치전)

#### • 공개강좌

구분	내용
목적	● 분리보호 예방, 빈곤이나 이혼이 분리사유가 되지 않도록 원가정보호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 원가정보호 및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
대상	• 보호자(취약계층 포함) 및 양육기관 등 종사자 * 아동의 분리보호를 희망하거나,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양육자(한부모가정, 취약 계층, 일시보호 및 분리보호 경험 등)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서비스 제공받는 대상 포함
주요내용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 안내(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보호대상아동 관련 등)     * 해당 사업별 대상 및 지원서비스 안내(해당 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     - 어린이주간 등 지자체 대규모 행사기획 시 해당 부스 운영     * 아동복지 관련 정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등     • 양육기술, 아동특성을 다룬 공개강좌     - 부모의 의무, 아동의 정서 다루기, 아동안전/권리 교육 등

## 나 양육상황점검(보호조치 중)

## • 부모(양육기술)교육

구분	내용
목적	● 가족 재결합 및 양육의지 및 기술 향상 등으로 안전한 가정환경 보장 - 원가정복귀 및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 - 부모의 자녀양육의 역량강화
대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주양육자)      * 아동과 만남·유선 등으로 연락하는 보호자      *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보호자
주요내용	● 부모(양육기술) 교육(역할극 등) - 부모의 의무, 자녀에 대한 이해, 양육스타일, 의사소통방법 등 교육운영 * 아동복지관련 정책정보 제공 등

## • 가족방문(가족과 생활해보기)

구분	내용		
목적	● 부모(보호자)와 아동의 관계회복 *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함		
대상	● 보호대상아동과 가족 ● 원가정복귀가 확정된 가정		
주요내용	《양육상황점검 중 가정방문》  ● 아동 생일, 주말, 명절, 방학 등 기간 활용  - 아동의 원가정 방문은 반나절→하루→1박2일 등 순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도록 함  - 방문 일정이 길어질 경우, 숙제, 위생관리 등 규칙적인 일과 등에 지킬 수 있도록 안내  《원가정복귀가 확정된 가정》  ● 방문 전 아동에게 사전준비와 교육 실시  - 부모님께 편지쓰기, 요리하기 등 병행 수행 가능  - 아동과 원가정 방문을 위한 약속 확인		

#### • 가족활동프로그램

구분	내용
목적	● 부모(보호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제공 - 가족과 아동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기회제공 - 가족 간 친밀감 유지
대상	● 원가정 복귀가 확정된 가정의 부모(보호자) 및 보호대상아동 - 부모교육 이수 및 원가정복귀를 희망하는 보호자
주요내용	<ul> <li>숙박지원(단체, 가족단위, 체험 등)</li> <li>가족체험 등 당일 프로그램 지원 가능</li> <li>아동(심리치료 및 놀이지원 등)과 부모(양육기술교육, 상황대처기술 등) 대상 교육 및 가족활동 등</li> <li>가족외식(재료비)지원</li> </ul>

# 다 종결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 • 가족방문(점검)

구분	내용	
목적	아동의 안전한 복귀 점검	
대상	● 원가정 복귀 완료한 가정	
주요내용	<ul> <li>방문 전 보호자와 일정확인</li> <li>가정환경 점검(사후관리 점검표)</li> <li>원가정 복귀 시 제출했던 양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가정환경 점검</li> <li>* 아동학대 징후여부 등 점검</li> <li>아동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복귀 후 변화 확인(사후관리 점검표)</li> </ul>	

#### • 지역사회 자원연계(학교, 돌봄센터 등)

구분	내용		
목적	아동의 학교생활에 원활한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학교내 아동의 지지체계 구축    - 지역사회 돌봄 등 서비스 및 자원 연계		
대상	● 원가정 복귀 완료한 가정		
주요내용	<ul> <li>원가정 주소지 학교(어린이집)등 방문 및 이후 모니터링</li> <li>학교 담당교사와 면담(지지체계)</li> <li>원가정 주소지 인근 아동 서비스 및 자원 연계</li> <li>★ 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 안전망, 지역사회복지관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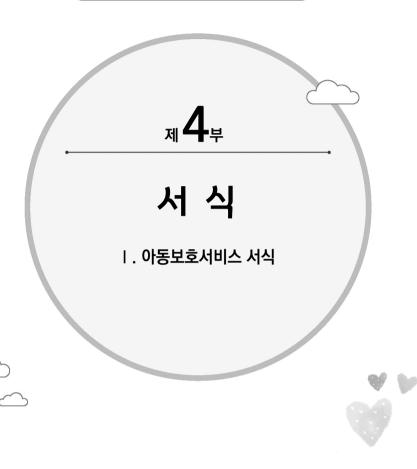
# Ⅳ. 입양기관 현황

(2021년 6월 현재)

			· _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홀트이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2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5-0224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053-756-0183	
홀트아동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복지회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화정동) 홀트광주복지센터 1층	062-227-8877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	031-217-5999	보 건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1017	복
대한사회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지 부
복지회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_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허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02-332-3941	가 기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051-469-5586	관
동방사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053-755-1077	
복지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42-7750	
성가정 입양원	_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02-764-4741~3	
한국사회 봉사회	_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62 가길 42-49	02-908-9191	
광주영아 일시보호소	_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시 도
꽃동네 천사의 집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0-29	043-879-0292	허 가
제주국내 입양센터	_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근내길 42	064-758-0845	기 기 관

<sup>※</sup>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나머지 입양기관은 국내 입양업무만 수행(한국사회봉사회는 입양알선업무 중단)

#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Ⅰ. 아동보호 서비스 서식

# 1.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작성방법 포함)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서식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서식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욕구조사표	
	서식4	일시 보호 의뢰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5	친부모 상황 점검표	
	<u>서식5-1</u>	<u>친생부모 상담기록지</u>	2021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7호
	<u>서식5-2</u>	<u>친생부모 상담확인서</u>	2021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호
	서식6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7	아동카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
	서식8	개별보호·관리계획서	
공통	서식9	양육상황 점검표	
	서식10	가정 복귀 점검표	
	서식11	가정 복귀 의견서	
	서식12	종결심사서(사례결정위원회 상정)	
	서식13	양육계획서(보호자용)	
	서식14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u>서식14-1</u>	<u>사례회의록</u>	
	서식15	보호 결정(변경) 통지서	
	서식1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3
	서식1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4
	<u>서식17-1</u>	사후관리 점검표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서식18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19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20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21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
	서식22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
가정	서식23	위탁부모 추천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1호
위탁	서식24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호
	서식25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3호
	서식26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3의1호
	서식27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2
	서식28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4호
	서식29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5의1
양육	서식3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1호
시설	서식31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호
	서식32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5호
0101	서식33	입양동의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8호
입양 아동	서식34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021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13호
V10	서식35	입양동의 철회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9호
	서식36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2021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20호
	서식37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38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
유기 시조	서식39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2
실종 아동	서식40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4호
10	서식4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별지 1호
	서식42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별지 3호
	서식43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1호
	서식44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5호
학대	서식45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보전용)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8호
피해	<u>서식45-1</u>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아동	서식46	가정환경 조사서(아보전용)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9호
	서식4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 리스트	아동분야사업안내2 서식23호

# 제4부 서식 🔺 141

#### 1.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

#### 서식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 대상아동 정보										
대상자명		성별		주	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아동)								
실거주지							신와'	신오	(보호자)	
□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	관		전화번호			휴대번호	-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접수 정보										
접수구분	□단순안내 □요청접	<u></u>		접수일자		접수	유형			
신원	□신원확인 □신원불	명 18	32신고	ㅁ유 ㅁ무	발생일자			발생	장소	
가구유형										
주거구분	ㅁ자가 ㅁ전세 ㄸ	과자가 p전세 p월세 p임대주택 p무상임대 p기타								
보호의뢰 사유										
주요문제	□안전(학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일상생활유지 문제 □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 등) □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경제적 문제 □교육 및 학습외 문제 □취(창)업 및 직무수행 □생활환경 문제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기타									
접수내용										
접수결과	ㅁ아동보호서비스 접수 (ㅁ일시보호필요) ㅁ타 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 (ㅁ읍·면·동 서비스 ㅁ통합사례관리(희망) ㅁ아동통합사례관리(드림) ㅁ아동학대(의심))									
접수자 의견										
개인정보활용동의	□동의 (□동의서 첨부	₽ □유선/구덕	=) 🗆 🗆	동의						
접수상	담번호				소	속				
연 릭	낙 처				접-	수 담당자				

 나사 무네자
 투부 부인
 木塔 POLINA 호보공 10 부 IM
 비0 POLINA 호보공 10 부 IM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작성시기	- 보호자 의뢰 등 보호대상아동 발굴 시(1일이내)
작성목적	-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통해 보호 필요 및 필요 서비스 여부 파악
작성방법	- 전화상담, 내방, 가정방문 등 통하여 접수상담 작성(복귀 후 시스템 입력) ※ 읍·면·동 및 드림스타트,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실시 후 시·군·구에 의뢰 기능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항 목		작성내용
대상 아동 정보	대상자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아동, 보호자), 전화번호, 주소	○ 대상이동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을 기록 *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기록 * <u>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관리 전산번호 기입</u>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대상자외의 관계	○ 아동보호를 의뢰한 사람의 정보 기록(사례이관 전 담당자의 정보 등)
	접수구분, 접수일자, 접수 유형	○ (단순안내) 단순서비스, 읍·면·동으로 이관 ○ (요청접수) 아동보호서비스 접수결과와 연관 ○ 지역사회기관 방문, 가정방문, 내방, 전화 선택
	신원, 182신고, 발생일자, 발생장소	<ul><li>유기아동일 경우 해당 정보 기록(아동카드 정보)</li></ul>
접수 정보	가구유형	<ul> <li>○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li> <li>-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li> <li>-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li> <li>-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li> <li>-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li> <li>-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li> <li>-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li> <li>-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li> <li>-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가능</li> <li>-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li> <li>- (북한이탈주민가구) 탈북자 가구</li> </ul>
	주거구분	○ 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무상임대, 기타 선택

항 목	작성내용
보호의뢰 사유	○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선택
주요문제	<ul> <li>○ 주요문제에서 아동의 보호자 관련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li> <li>안전(확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 상의 문제)</li> <li>-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li> <li>- 기주 내 폭력 및 확대, 방임이 있는 경우</li> <li>- 기주 내 폭력 및 학대, 방임이 있는 경우</li> <li>- 기타 가족 내외로부터의 안전의 위협이 있는 경우</li> <li>-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li> <li>- 심각한 전강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li> <li>-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정신건강, 자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호 혹은 악물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인터넷·게임 중독,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일상(청화유지 문제(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유지상의 문제)</li> <li>- 일상(식사, 용변처리, 옷 입기, 세탁, 몸 씻기, 시장보기 등)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li> <li>- 신변관리나 일상생활유지 기능(전화결기, 교통수단이용, 복약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li> <li>- 취미 및 여가 활동의 부족 및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li> <li>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의 문제)</li> <li>- 부부·부모-자녀 간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li> <li>자녀양육 및 보육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및 간병 관련 보호부담의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및 간병 관련 보호부담의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가족 가성의 문제)</li> <li>-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li> <li>-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기초적 옥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문제)</li> <li>- 기초적 옥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전체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문제)</li> <li>- 기초적 우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전체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문제)</li> <li>- 기초적 유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전체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문제)</li> <li>- 기초적 유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자원부족의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자산취득 및 관리(저축, 부채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자산경우 등리 등리 문제</li> <li>의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상의 문제 및 직업기능 수행상의 문제)</li> <li>- 기술, 경력, 능력부족 등으로 취(창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li> <li>- 자녀양육, 돌봄, 건강문제 등으로 취(창업에 다음은 경우</li> <li>- 구적 및 직업 활동의 불안정, 비정규성 등의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li> </ul>

항 목	작성내용
	<ul> <li>○ 생활환경 문제(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보장상의 문제)</li> <li>- 주거 및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누수, 가스누출 등 거주지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li> <li>○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상의 문제)</li> <li>-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하여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li> </ul>
접수내용	○ 의뢰자 및 대상아동이 요청하는 주요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기록 * 피면담자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기록
접수결과	<ul> <li>○ 아동보호 서비스(분리보호필요아동), 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읍·면·동 서비스,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아동통합사례관리대상(드림스타트), 피해아동) 선택</li> <li>○ 타 서비스연계·사례관리 연계일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례의뢰</li> <li>○ 단순 정보제공으로 문제 및 욕구해결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서비스 거절, 상담 거부 등으로 초기 상담이 어려운 경우 단순 안내로 종료</li> </ul>
접수자의견	○ 일차적으로 대상자 유형 분류의 사유를 기술하고, 향후 사례관리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상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
개인정보활용동의	○ 서식2에 대한 여부 기록(접수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여부 체크)

※ 동 서식은 동의서 샘플양식으로 각 시·군·구에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이력,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상황내용(건강상태, 주거사항, 경제상황), 가족구성, 가족관계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복지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목적 등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에 의거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서비스 제공기관(기관명: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시설 - 7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노인돌봄기본서비스,방문건강관리,의료급여사례관리,자활 사례관리,중독및정신건강사례관리)수행기관및 시설 - 「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통계구축	- 대상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 사례관리 정보(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로 서비스 종결 후 <b>5년</b>

본 조사 내용은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선별과정 및 사례관리, 「아동복지법」제10조의2 제2항의 아동관련 통계 구축을 위한 사무 등을 위해 활용·보관 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 안내]
①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에서 정한 아동보호 관련 사무 수행 ②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보호종료된 시점으로 5년까지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칸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
○○○ 시·군·구청장 귀하

# TH 아동모호서비스의 이해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입양절차의 진행 및 관리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 부터『입양특례법 시행령』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에 의해 영구적 보유 (입양동의의 철회 및 취소의 경우에도 국가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될 수 있음.)

입양 관련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입양특례법」관련 입양절차의 진행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이용 및 제공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법에 의거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 「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절차의 진행 및 관리,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 정보공개청구 대응, 통계 구축 등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입양특례법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같은 법 시행 규칙 제 23조(입양정보의 제공)에 따른 정보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양특례 법 시행령』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에 의해 영구적 보유 (입양동의의 철회 및 취소의 경우에도 국가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될 수 있음.)

본 조사 내용은 입양절차 진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보관되며, 「입양특례법」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사후서비스 제공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의 아동관련 통계구축을 위한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며,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 보유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 안내]

- ①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
  - :「입양특례법 시행령」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호에서 정한 입양 관련 사무 수행
- ②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영구적 보유
-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칸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

#### ○○○ 시·군·구청장 귀하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안내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
작성시기	- 보호자가 아동을 의뢰 시 또는 분리보호 확정 시
작성목적	- 아동과 보호자의 기존 서비스 내역 확인 및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하기 위함
작성방법	- 보호자가 작성(유선상담 시 구두 확인 후, 내방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직접 작성) - 입양대상아동의 경우 별도 추가된 서식 참고하여 작성
활용방법	-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욕급	2 2	도 사	표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OH=	11-1	전화번호							<del>-</del> 1.4./ )-	-1	
주 소			'					2i	연락처 휴대전화									□치수( )차	
		□단독주 □다세다		·연립		□자기 □전세	(소유주:   (전시	세금 만원	) ¥)				( )7H )7H			스·기름 보일러	†		□ 공용 □ 단독
	주거 형태	ㅁ아파트 ㅁ무허가, 움막, 비닐하우스 ㅁ여관, 고시원, 쪽방		주거 구분		주택 (보증		면, 월세 면, 월세	만원) 만원)			( )7	난방 방법		□연탄·화목보일러 □전기매트·전기온돌 □어의	돌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주거사항		ㅁ여관, ㅁ기타(	고시원	권, 쪽방 )		ㅁ무싱 ㅁ기타		)				□욕실 ( □화장실·욕							□본채 □별채
	주거상타	ㅁ잉	호	ㅁ노후 ㅁ긴급보	수필요	ㅁ폭염취역	약 ㅁ한	파취약 □환	기부적	절 ㅁ채광	부족 ㅁ합	명소한공간 <sub>□</sub>	악취/불결						
	주거환경	를 교소	음	ㅁ유흥가 ㅁ대로	변 ㅁ	기타(	)		0	사계획	ㅁ유	ㅁ무		거주기	간	년 개월			
가구유형		소년소녀	가구	ㅁ한부모가구	ㅁ부부	중심가구	ㅁ조손	가구 ㅁ미	혼모부기	당 대	동체가구	ㅁ기타(	)	ㅁ장애	인가구	□북한이탈주	주민가구 ㅁ다문화가구		화가구
	관계	성명	ļ	주민번호	-	연령	성별	동거여부	결	혼상태	학력	직업	장애		질	博		연락	박처
71711-																			
가족사항	▶구성원	<sup>姐</sup> 세부정	보																
		성명					7	전화번호					휴ር	배전화					
	주민	등록번호					아동	등과의 관계											
		주소					실기	거주지주소											

 나사 부ル
 후부 부SIK
 花室 PO LINA호보공10 부 SIK
 市间 PO PO LINA호보공10 부 III

	성별		학력		학교망	령/학년		
	직업		월평균 소득		생홀	수준		
	결혼여부		기혼/미혼 사유		근로능	력유무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건강	상태		
	장애유형		질병종류					
	비고							
	등록기준지							
대상아동	가정환경 (성장과정)							
	수혜자	개시일~종료일	급여·서비스명	서비스유형	제공주기	제공기	관	서비스상태
서비스이력								

	2700	<b>エ</b> の売れ	CII A LT I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기	다		조 O SIOI
=	욕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sup>경사</sup>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주요원인 수유				
		폭력							1. 정신질환 9. 무관심/의지없음
		성추행/성폭력							2. 음주문제 10.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3. 약물 오남용 11. 가족내차별
	①가 <del>족</del> 내	유기							4. 폭력적 성향 12. 가족구성원 간 갈등
	안전유지	방임							5. 왜곡된 성의식 13. 가정해체
		학대							6. 치매 14. 경제적 빈곤 7. 무기력감 15. 종교문제
인 안전		실종							8. 성격차이 16. 이유 없음
		폭력							1. 자기보호능력미약(정신지체 등)
	②가족외부로	성폭력							2. 꾀임/악용
	부터의 안전	협박·위협							3. 친인척 간 불화 4. 타인과 불화
	유지	학대							5. 원한관계
		착취							6. 부채/금전거래
		신체장애							1. 유전적(선천적)원인 9. 운동 부족
		일시적 질병 및 상해							2. 사고 10. 질병에 노출된 환경 3. 자해 11. 경제적 빈곤
	①신체적	만성질환							4. 방임 12. 적절한 치료 부재
	건강유지	희귀·난치성 질환							5. 학대 13. 정보 부족
		비만							6. 신체 질병 및 질환 14. 치료 기피 7. 스트레스 15. 원인 미상
		영양결핍							8. 잘못된 식습관
1		환청/환각/망상							1. 음주문제(주정, 알콜중독 등)
건강		자해(자살)행위							2. 약물 오남용·중독
		약물오남용·중독							3. 스트레스 4. 정신분열증
	②정신적 건강유지	식사거부							5. 우울증
		수면문제							6. 신경증(공황장애·PTSD) 7. 기타 정신질환 의심
		음주문제 (주정·과도한 음주·알 <del>콜중</del> 독)							7. 기대 당년 3년 8. 치매 9. 성격장애 10. ADHD

 나사 부ル
 후부 부SIK
 花室 PO LINA호보공10 부 SIK
 市间 PO PO LINA호보공10 부 III

	2744	조 O 클니니			: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기	다 다	¥0801		
=	옥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주요원인	순위
		공격적 행동 (싸움걸기·반복적 민원제기·폭력행동)									
		대인기피								11. 불안감	
		은둔/칩거								11. 물건님 12. 이성문제	
		의사소통장애								13.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 및 중독	
		위생관리문제									
		이상한 행동									
		불안감									
		식사 및 준비 곤란								1. 신체질병/장애	
		의복착용 곤란								2. 정신질환	
	①의식주 관련	외출 곤란								3. 지적장애	
	일상생활	약물복용 곤란								<ul><li>4. 신체허약/노환</li><li>5. 무기력감/의지없음</li></ul>	
2 일상	유지	위생관리 곤란 (용변처리 등)								6. 교육·학습 부족 7. 상해	
생활 유지		긴급상황 대처 곤란								8. 보호자의 부재(기출 및 사망 등)	
	②여가생활	여가활동 부족								1. 시간 부족 5. 적절한 치료 부재 2. 정보 부족 6. 가족의 무관심	
	활용	부적절한 여가활동 (게임 도박 등)								3. 경제적 빈곤       7. 주변의 꾀임         4. 가족의 통제 및 교육       8. 무기력감/의지없음         미흡       9. 여가시설 부족	
		부부갈등								1. 실업 12. 가족 내 차별	
		부모자녀 갈등								2. 폭력 13. 학업성적 부진	
3		고부갈등								3. 탈선 및 가출 14. 자녀 이성문제 4. 성격차이 15. 교우관계	
가족	①관계형성	형제(자매)갈등								5. 배우자 외도 16. 재산상속 갈등	
관계	-ui	가족간 관계소원								6. 자녀양육 갈등 17. 금전거래	
		가족간 관계단절								7. 종교 갈등 18. 경제적 빈곤	
		가족간 갈등								8. 가족부양부담 19. 정보부족	

	2744	조이하사	CII A FT I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	자		Z090I	
	옥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주요원인	순위
		장애인돌봄 곤란								9. 다문화가구 20. 무관심	
	②가 <del>족돌</del> 봄	노인돌봄 곤란								10. 시간부족 21. 장애	
	Ø∕I¬≥=	아동돌봄 곤란								11. 보호역할 가구원 22 질병 부재	
		환자돌봄 곤란								구제	
	①친인척 및 친인척 관계 이웃 간	친인척과 갈등									
		친인척 관계소원								1. 친인척 부양부담 6. 쓰레기 방치	
		친인척 관계단절								2. 대인기피       7. 정신질환         3. 소란·위협       8. 음주문제	
		이웃간 갈등								4. 금전거래 9. 지역개발	
		이웃간 관계소원								5. 위험물 방치 10. 종교갈등	
4 사회적	4   회적	이웃간 관계단절									
관계		직장생활 어려움								1. 정신질환 9. 상습범죄	
	②소속된 집단	학교생활 어려움								2. 지적장애       10. 학업수행 부진         3. 대인기피       11. 탈선 및 가출         4. 적응력 부족       12. 경제자 비교	
	및 사회생활	종교생활 어려움								5. 지원 거부 12. 성세식 민준	
		기타 사회생활의 어려움								6. 따돌림     13. 지외국 지지지에 부족       7. 폭력     14. 시간 없음	
		식비 부족									
		주거비 부족								1. 실직/휴폐업 7. 건강보험 미가입	
_		의복비 부족								2. 파산 0. 전이그/스이	
5 경제	①기초생활 해결	난방비 부족								3. 신용돌당   4. 사고 미 한대   10. 부양의무자의	
		공과금 체납								5. 일시적 질병 및 상해 11 그리느려자 보재	
		통신비 부족								6. 중한 질병 (사망/기출/실종)	
		의료비 부족									

 나사 무사
 투부 부인
 지점
 우스비사호보공
 부가
 바이 (우스비사호보공)
 부 바이

	27dd	조이청사	CII X FTI		<u>:</u>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b>\</b>		⊼O9 0	우선
=	옥구영역 -	주요현상	대상자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주요원인	순위
							1. 지적장애 8. 실직/휴폐업 2. 치매 9. 파산				
	②자산관리	부채								3. 정신질환 10. 신용불량 4. 음주문제 11. 사고	
		과태료·벌금								5. 습관성 도박 12. 의료비과다 6. 보호자 부재 13. 교육·학습 부족	
		과소비·낭비								(소년소녀가정)14. 타인에 의한 세금체납7. 근로능력자 부재(명의도용 등)	
	①기초지식	읽기·쓰기· 말하기 문제								1. 언어능력 부족 4. 학습의지 부족 5. 학습지도자의 부재	
	습득 및	수리계산 능력 부족								Z. 신세식·성신식 상배 - G. ㅂㅎ쟈이 ㅁ과시/	
	향상	그 외 기초 학습능력 부족								3. 학습능력 부족 인지부족	
6 교육		수업료·급식비 등 부족								1. 경제적 빈곤 5. 이성문제 및 교우관	41
	②교육환경	특수교육 문제								2. 교육완성 시원사의 6 타서 및 가추	"
	개선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부재     0. 달년 및 기울       7. 본인의 무관심/     의지부족       4. 보호자의 인식/     의지보조	
		무단결석								4. 도오시의 한식/ 무관심/의지부족 8. 정보부족	
		학업성적 부진								120, 111 1	
		실업·실직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10. 교통문제	
		열악한 근로환경								2. 부채 11. 자금부족	
		저임금								3. 가족 간병부담 12. 정보부족	
7	⊕±1/±1/04	비정규직								4. 자녀 양육부담 13. 복지서비스 의존	
고용	①취(창)업	구직의 어려움								5. 조직생활 부적응14. 잦은 실패경험6. 따돌림15. 낮은 자존감	
		창업의 어려움							,	7. 경험 및 경력 부족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기술교육의 필요								8. 직업기술/훈련 부족 17. 신체적 장애	
		취업동기 부족								9. 저학력	

욕구영역		조이청사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 4	<del>1</del> 784	주요현상	41671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수요현인	순위
		잦은 직장 이동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10. 교통문제	
		반복적인 재취업/ 창업 실패								2. 부채 11. 자금부족 3. 가족 간병부담 12. 정보부족	
	②고용유지	실업상태에 익숙해짐								4. 자녀 양육부담13. 복지서비스 의존5. 조직생활 부적응14. 잦은 실패경험6. 따돌림15. 낮은 자존감	
		취업동기 부족								7. 경험 및 경력 부족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사업체 유지의 어려움								8. 직업기술/훈련 부족 17. 신체적 장애 9. 저학력	
		화장실 열악									
	①주거내부 환경개선	주방시설 열악									
		위생환경 열악									
		도배·장판 열악								   1. 시설부족	
		냉난방 열악								2. 시설낙후	
		전기/가스 시설 열악								3. 시설위험	
	20 112	상하수도 시설 열악								4. 시설부재(장애인 편의시설 등) 5. 쓰레기 방치	
		지붕노후(누수 등)								5. 쓰대기 링시 	
8		벽/담 등 노후									
생활		주택 내 이동 곤란									
환경		사생활 공간 부족									
		학습환경 열악									
		교통접근성 열악								6. 편의/기반시설	
		상습침수								1. 도서산간지역 낙후·부재 2. 유흥업소 밀집지역 7. 위험물 방치	
	②주거외부	철거 등 공공수용								2. 유흥합소 할답시작	
	환경개선	거주지 이전								4. 자연재해 다발 지역 9. 정보 부족	
		화재·폭발 위험물에 노출								5. 우범지역       10. 도시계획         (강제철거·퇴거)	
		생활환경 열악									

 나사 무사
 추부 부
 大陸 PO IN 호보공 10 부 IN
 취임 PO IN 호보공 10 부 IN

Ç	270404	주요현상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이	우선
욕구영역		구표연경	내경시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구요전인	순위
		법률처리(재산/ 위자료 등) 문제								1. 법률지식 및 정보 부족 5. 사고(의료·산재· 고 병적증경이 발표 교통사고 등)	
9		신분상실								2. 합식우선인 무세 6 결호이미/이즈/	
법률	①법률적 지원	사고보상 처리								(성에'미성된 등) 3 포려/버지 난민/탈북	
및		파산/신용불량								/, 이호 /. 수민등록 밀소	
권익 보장		국적문제								. <sup></sup>	
Ξ.9		차별대우								1. 고용기회 차별	
	②권익보장	권리침해								2. 관련 법률조항의 문제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	
10	/     /										
기타											

우선순위 욕구명 욕구내용 주요욕구 종합의견 요청 서비스 내역 사회적 지지자원 첨부파일 관리번호 소 속 연 락 처 담당자

**샤딸 P스l바사호보공10 부SIM** 

[1] 이 [2] 바시호보공에 부대자

게3片 뉴물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시 기 - 상담·조사·사정과정 중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욕구(아동과 보호자)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작성방법	- 접수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과 보호자를 상담하여 작성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 아동상황점검 중 반드시 1회는 가정방문하여 실시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등					

항 목	작성내용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욕구조사대상자의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차수를 기재
주거사항	○ 대상자의 주거 형태, 가옥구조, 주거구분, 난방방법, 화장실, 주거상태, 주거환경, 이사계획, 거주 기간 등을 기록함
가구유형	○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 -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 - (북한이탈주민가구) 탈북자 가구
가족사항	○ 욕구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정보(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장애유형, 질병 등)를 기록함 ※ <u>'동거여부'</u> 에서 함께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주소 기록함
대상아동	○ <u>아동의 등록기준지, 가정환경 등 기록</u>
서비스 이력	※ 시스템 내에서 해당 정보 자동 연계 출력 가능

항 목		작성내용					
	<ul> <li>○ 사례관리 후보자에게 10대 욕구영역 세부 20개 욕구 항목을 순차적으로 질문하여 사례관리 후보 및 가족구성원이 보유한 문제영역이 누락이 없도록 조사하여 기입함</li> <li>- 세부욕구 영역별의 각 주요현상에 해당하는 대상가구원을 파악하여 욕구조사표의 '대상자 칸기입(※ 시스템에서는 기 입력한 가구구성원이 대상자 리스트로 조회)</li> <li>- 대상자가 노출되어 있는 각 주요현상별 원인을 파악하여 중요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주요원인 해당항목 번호를 '원인 1, 원인 2, 원인 3'에 기입함</li> <li>- 각각의 원인을 야기 시키는 원인제공자를 파악하여 최대 3개까지 '원인제공자1 ○○○/원인제공자 ○○○를 기입함(※ 시스템 입력 시에는 원인제공자 리스트 중에서 하항목을 체크)</li> <li>※ 현상에 따라 원인제공자 및 원인이 없거나 불분명 할 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 - 욕구조사 후, 욕구 별 우선순위를 가장 시급한 문제 순으로 파악하여 기입함</li> </ul>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	<ul> <li>○ 욕구 영역(10대 욕구영역)</li> <li>- (안전 욕구)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의 욕구</li> <li>- (건강 욕구)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li> <li>- (일상생활유지 욕구)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또는 신변관리와 여가활용 및 개선욕구</li> <li>- (기족관계 욕구) 가족구성원의 갈등완화 및 긍정적 관계형성 욕구와 보육·간병 등의 가족 보호 욕구</li> <li>- (사회적 관계 욕구)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주변인물 및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 성과 유지를 위한 욕구</li> <li>- (경제 욕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기본적 자산관리 욕구</li> <li>- (교육 욕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습득에 관한 문제와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li> <li>- (고용 욕구) 취업/창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업(무)기능 수행상의 문제</li> <li>- (생활환경 욕구)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안정상의 문제</li> <li>- (법률 및 권익보장 욕구)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과 관련한 욕구</li> <li>○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각 욕구영역별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와 현상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입</li> </ul>						
	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대상자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시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						
	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후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원인 전남편, 전부인,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제공자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지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 (기타)						
		근제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예, 취업의지 강함, 신체건강 등) 문제해결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예, 무기력, 신체건강 불량, 자녀와의 갈등 등)					

항 목	작성내용
종합의견	<ul> <li>○ '주요욕구'는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10개의 욕구 항목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6하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기술함</li> <li>- 종합의견은 대상자가 진술한 표현된 욕구를 기반하되,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욕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작성함</li> </ul>
사회적 지지자원	○ 야기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완화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개인의 내적자원, 가족이나 지역사회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파악하여 기록함
요청 서비스 내역	○ 사례관리 대상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요청한 서비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일시 보호 의뢰서

보호 의뢰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	주소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니는기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그 밖의 사항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를 의뢰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탁보호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년

월

일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분리보호하기 위함 (아동학대, 보호자 부재 등)					
작성방법	방법 - 접수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일시보호는 대면 상담 후 결정)					
활용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참고자료					

항 목	작성내용
보호의뢰 아동	- 아동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아동의 주소 기재 <u>※ 아동이 일시보호시설로 주소를 옮겼어도 아동의 원 주소지 작성</u>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재 [확인 가능한 경우 작성]
보호자	-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기재 예) 친부, 친모, 외조모, 이모, 삼촌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과 현재 직업 기재 - 보호자(부, 모 모두 기재)의 주소(실거주지) 기재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재
그 밖의 사항	-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또는 위탁부모) 기재 - 일시보호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작성 예) 보호자 없이 아동이 가정내에서 방치되어 있어 긴급분리 보호 필요 - 아동의 특이사항(질환, 복용해야할 약, 장애 등)이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예) 아동이 00질환으로 취침 전 00약 복용해야함

# 친부모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sup>\*</sup>을 수립하기 위해 친부모 상황 점검표 활용
  - \* 원가정 복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작성일	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번	호	평 가 항 목	평가 ∨			특이사항
	1	부모는 동거중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3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직업: 근로시간: (모) 직업: 근로시간: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소득: 평균 만원
가정 환경	5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채: 만원
	6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능력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전세 (보증금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7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질병 또는 장애유형: (모) 질병 또는 장애유형:
	8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종류: 치료여부: (모) 종류: 치료여부:

 나사 부ル
 투부 부SIK
 花室 PO LINA호보공 10 부 (IR)
 市 PO PO LINA호보공 10 부 (IR)

번	호	평 가 항 목	평가 ∨			특이사항
	9	과거 사회복지서비스(희망복지지원단 등)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종류: 이용기간:
주변 환경	10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1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를 도와주었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2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대 등 내용:
	13	부모는 음식 제공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불충분 시 필요한 돌봄 내용: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양육 태도	14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언어적인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아니오	불분명함	
	15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예	아니오	불분명함	
	16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친한친구: 좋아하는 음식: 반 / 번호:
보호	17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희망자: (예) 부모 모두 희망, 부모 중 1인 희망 (부 또는 모)     희망보호형태: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시설보호 (그룹홈, 양육시설), 입양 등
조치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기간 : , 보호형태:
관련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만남 주기:
	20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가 부모 본인이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모가 아니었을 경우, 주양육자: 사유: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 ∨		특이사항
21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3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개월 이다.	개월			
	소견						

- ◆ 부모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경우, 원가정 유지를 위하여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하도록 조치
- ◆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약할 경우,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고, 부모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나사 무사
 추부 부원
 木塔 우리바시호보공
 무보 부원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u>(고유 업무)</u>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친부모 상황(가정 및 주변환경, 양육태도, 보호조치)을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							
- 상담·조사·사정 <u>내용을</u> 바탕으로 작성(※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 점검 중 1회 이상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실시) -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측성으로 작성금지								
활용시점 및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원가정 복귀 가능성,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 원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 우선 체크되어야 하며, [불분명함] 답변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확인필요 - 평가항목에서 [아니오]가 대다수이거나, 8번[예] & 12번[예] & 13번[아니오] & 17번[예]를 체크한 경우 분리보호 적극 검토 - 친부모상황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의심 상황 발견(관찰, 보고)시 즉시 신고							
<u>기타</u>	_ <u>친부모·보호자</u> 부재, 연락두절되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생략 기능							

		항목	작성내용						
	1	부모는 동거중이다.	- 이혼, 별거, 사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가정 등의 경우 '아니오' 체크						
	2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 잦은 싸움, 가정폭력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혼, 별거, 미혼부모, 한부모가정 등 '아니오' 체크						
	3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부모 중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무직일 경우 특이사항 기재						
가정환경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아니오' 체크 및 사유 기재 ※ '소득이 안정적'이라 함은 정기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5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 부채가 없거나 소득에서 일정부분 탕감이 될 경우 '예', 부채가 많거나 소득으로 해결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니오', 보호자가 부채가 있으나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사실확인하여 기재						
	6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능력이 있다.	- 자가, 전·월세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보호자가 지불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사실 확인하여 기재 ※ 전·월세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용(월세) 비율 검토						

		항목	작성내용						
	7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아니오', 보호자 명확하게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꺼려할 경우 집안환경 체크(예: 약봉지, 병원 관련 영수증 등) ※ 부모의 질병 또는 장애유형 강도에 따라 주변지지 자원 수준 반드시 파악, 필요시 분리보호 적극 검토						
	8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ul> <li>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소지하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호 능력, 의지 등을 고려 분리보호 필요성 검토</li> <li>본 항목 답변을 꺼려할 경우 추가조사 필요하며, 가정방문 시 환경 체크(예: 술병, 안주류 종류옥봉지, 술 냄새, 본드 등)</li> <li>※ 알코올이나 약물문제를 현재 상태 중심으로 기재, 문제가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할 경우 면밀한 검토 필요. 다만 과거시점 문제일 경우 특이사항에 기재(예)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아 완치됨</li> </ul>						
	9	과거 사회복지서비스(희망복지지원단 등)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 서비스를 이용여부에 따른 문제해결여부 등을 특이사항으로 기재 ※ 과거 이용이력에 대해 해당 담당자 확인가능 할 경우 서비스 종류 및 이용기간 확인						
주변환경	10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 조부모, 친인척과 지속적으로 긍정적 관계 유지할 경우 '예', 조부모·친척 계시더라도 관계가 안 좋은 경우, 조부모·친척 안 계실 경우 '아니오' ※ 되도록 조부모·친척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기본정보 확보(분리보호 시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가능성 확인을 위함)						
	11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를 도와주었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 도움사례, 이름이나 연락처 등 기본정보 확보(분리보호 시 일반가정위탁 가능성 확보하기 위함)						
	12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 과거 학대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우 신고 - 재발생위험이 감지되거나 우려가 높은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 본 항목은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접질문방법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						
양육태도	13	부모는 음식 제공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 음식제공 및 돌봄 둘 중 하나라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아니오', 둘 다 충분히 제공할 경우에만 '예'라고 체크						
	14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언어적인 신호에 적절 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 보호자가 체벌,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하거나 주장할 경우 '아니오' 아동상황점검 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교차 확인 필요						

		항목	작성내용						
	15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내용, 횟수 등 기재						
	16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 관련 질문 외 항목을 아는 경우 기재 ※ 아동상황점검 시 교차 확인 필요						
	17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ul> <li>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아동을 위해 안전한 선택한 경우인지, 부모가 아동양육을 기피하는 경우인지를 기재. 특히 부모가 학대경험, 질병, 근로수입 등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키울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특이사항에 기재</li> </ul>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이 있다.	- 원가정외 보호 경험이 있을 경우 기간 및 보호형태, 사유 등 기재 ※ 원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을 경우 추후 장기보호에 대해 가능성 고려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 아동과 만남을 희망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장기보호 가능성 고려)하며, 정기적 만남을 희망 하더라도 만남 주기가 너무 길 경우 사유, 상황 등 기재						
11575	20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는 부모 본인이었다.	- 부모가 주 양육자 아닌 경우 사유 기재						
보호조치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 한다.	- 보호자의 아동학대 경험, 체벌방식의 훈육,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 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 기재 ※ 보호자의 현재 상황(예: 직업특성상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수감) 확인 ※ 분리보호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 확인(추후 원가정 복귀에 대한 의지, 방향 등)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본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하기 보다는 보호자가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해결의지(경제활동 재개, 부모교육 참여 의지, 아동에 대한 애정정도 등) 고려하며, 보호자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근거바탕으로 이야기 할 경우 '예', 분리보호 이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리보호에 대한 불만 또는 인지부족, 아동 양육 의지가 부족할 경우' 아니오' 체크 ※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사유 확인하여 기재						

		항목	작성내용					
	23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 <u>개월</u> 이다.	-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분리보호 기간이 너무 길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보호기간이 짧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분리보호 조치 해결기간 등을 고려					
소견			- 친가정 상황 점검표는 평가항목에서 '아니오'(8, 9, 12, 17, 18번의 경우 '예'의 개수) 체크가 많을수록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검토 필요 예) 친가정 상황 점검한 결과 23항목 중 18개가 '아니오'로 평가항목에 체크했으며, 특히 가정 폭력 경험이 수시로 발생, 부의 수입 불안정과 알코올 중독, 모의 정신적문제 등 고려하여 분리보호조치를 고려					

 나사 무사
 추부 부원
 木塔 우리바시호보공
 무보 부원

<b>친생부모 상담기록지</b> 사례번호								-				
상담의뢰처	상담장소 상				담일시							
내담자		상담차수			ڔ	상담원						
=	친 모				친 부							
	이 름											
	생년월일											
	출생지											
	현거주지											
	연락처											
	최종학력											
인적 사항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별거 ④사별(배우자사망일 : ) ⑤이혼(이혼일 : )						①미혼 ②기혼 ③별거 ④사별(배우자사망일 : ) ⑤이혼(이혼일 : )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 여!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가족관계											
	키 / 체중	cm / kg						cm / kg				
신체특성	혈액형		RH	H /	형				RH	/	형	
	기타 신체특성											
	성장시 병력											
병력 및 건강상태	현재 건강상태											
	가족의 병력											
	가족관계		가족구성 및 가족과의 관계 기록									
성장배경	형제자매 관계	형제자매의 구성 및 각 구성원과의 관계 기록 (가장 친한 형제자매 등)										

ā	구 분			친 모					
	분만경험	무/ 유 (	)명	분만아동 상황	양육 ( )명	, 입양 ( )명			
	이전 분만형태		자연분민	( )회, 제왕	· 랑절개 ( )회				
	산전진료	시기와 횟수를 기록							
	산전진료 결과	예상되는 위험상황 기록							
		병명							
	임신기간 중 질환	발병시기							
<b>_</b>		치료여부							
임신 및 출산 관련			복용여부	빈도	종류 및 복용량	현재 복용여부			
	임신 중 음주 및	음주							
	흡연, 약복용	흡연							
		약복용							
	임신기간 중 건강상태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체중증가 상황 등 기록							
	최초 인지시기			임신 (	)주				
	직접 양육가능성	매우 가능( ) 가능함( ) 잘 모르겠음( ) 불가능함( ) 절대 불가함( )							
양육관련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i>도와줄 수 있는 .</i> ' 경제적 수입원이					
	입양진행 시 바람								
기타 사항	비고								

※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내담자	주 소		아동과의 관계							
	성 명		총 상담횟수		회					
	ᇫᄼᄀᄓᄀ			1 차	상담횟수만큼					
상담원	소속기관		みにいけて	2 차	기록하며					
	지그		상담일자	3 차	4회 이상인 경우					
	직 급			4 차	복사하여 사용함					

본 내담자는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4. 입양절차
-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청구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괄호 안에 친생부모가 자필로 밑줄 친 내용을 똑같이 옮겨 적도록 함)

년 월 일

친생모(부) 서명 (인)

# 아동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상황 점검표 활용**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 ∨	,	특이사항
정신	1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성장발달 지연, 제한된 신체기능, 인지영역 문제, 시각 또는 청각의 문제).	예	아니오	불분명함	장애유형: (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건강	2	만성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다(응급실을 분기별 1회 이상, 질병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잘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 부족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질병명:
의료적 욕구	3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 <u>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지루해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u>	예	아니오	불분명함	
	4	향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u>IT매체(인터넷, 스마트폰)에</u> 과의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비원되	5	성인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성인이나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사회적· 교육적 욕구	6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또래와 비교적 잘 어울리고, <u>또래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관심을</u> 표현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del>"</del> T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u>(모와의 분리 상황에서 심하게 떼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u>	예	아니오	불분명함	

제4부 서식 🔺 173

게3片 뉴물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 ∨		특이사항
	8	자아존중감이 높다 <u>(아동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u>	예	아니오	불분명함	
	9	정학·유급·퇴학 경험이 있다( <u>학교폭력의 문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다).</u>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업성취도가 높다 <u>(학습에 대한 의욕 및 동기가 높다).</u>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업 외 기타 교육적 욕구:
	10	<u>어려운 단어를 잘 읽는다.</u> 학업과제를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며, 학업수행에 대한 보람과 유능감을 느낀다.				
	11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섭식 문제가 있다.				
	12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떼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 <u>분노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행동,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있다).</u>				
문제 행동	13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14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15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밥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하게 서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 ∨			특이사항
	16	학습의욕이 저조하다.(학습 장애 포함, <u>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게 어렵거나, 숫자를 다루거나</u> <u>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u>	예	아니오	불분명함	
	17	아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 <u>지능이 낮거나(경계선급 지능수준) 적응행동에</u> 문제가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분리	18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희망보호유형: (예) 친인척,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관련	19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만남 주기:
소 견						

 나사 부ル
 투부 부인
 木塔 (2) 나사호보공 (0 부기)
 취임 (2) 나사호보공 (0 부기)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u>(고유 업무)</u>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을 보호자(친부모)로 부터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보호자(시설관계자, 위탁부모 등)가 알아야 할 아동의 상황, 치료해야할 부분 등을 알기위한 점검표로 현재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 아동의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호유형을 결정
작성방법	- 상담·조사·사정과정 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 점검 중 1회 이상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실시) - 해당 아동(취학아동) 또는 미취학아동의 경우 보호자(친부모)를 대상으로 본 상황 점검 실시 -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측성으로 작성금지
활용시기 및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원가정 복귀 가능성,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 원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에 대하여 1~4번 [예], 5~8, 10번 [아니오],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검토 [불분명함] 답변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필요

		항목	작성내용
	1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성장발달 지연, 제한된 신체기능, 인지영역 문제, 시각 또는 청각의 문제).	-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경우 체크 및 해당 장애 또는 질환 기재 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 건강 ·	2	만성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다 (응급실을 분기별 1회이상, 질병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잘 움직이지 않 고 활동량 부족하다).	- 병명에 따른 치료 주기 기재 <u>예) 품행장애로 주1회 병원상담</u>
의료적 <del>욕구</del>	3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영유아·초등) 놀이에 집중 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지루해 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 주의집중, 과잉 행동 여부에 따라 체크 및 새로운 양육자(양육시설)가 알아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아동 면담 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불분명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아동양육에 관심이 없는 보호자의 경우도 '불분명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아동의 비언어적 행동 관찰함.

		항목	작성내용
	4	향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u>IT매체</u> ( <u>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u>	- 경험이 있는 경우 체크 및 음주, 흡연량 정도 기재 - 영유아의 경우 IT매체 이용시간 정도 기재 ※ 본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환경 관찰(재떨이, 담배 냄새, 술병, <u>양육자가 상담 시 아동 행동</u> 등)
	5	성인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성인이나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사유, 특징 기재,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의 주요 특징, 이유 등 확인
	6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또래와 비교적 잘 어울리고, <u>또래가 갖고</u> 노는 장난감에 관심을 표현한다).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사유 기재(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피해자, <u>어린이집에서</u> <u>놀이시간에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못함 등</u> ),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의 주요 특징, 이유 등 확인
사회적・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u>(모와의 분리 상황에서 심하게 때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u>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자기통제력이 안되는 경우(상황) 기재 예) 원하는 것을 얻고자할 때 떼를 쓰고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운다.
교육적 욕구	8	자아존중감이 높다 <u>(아동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u>	- 자아존중감이 높다(낮다)고 평가하는 이유 또는 자아존중감 검사한 경우 해당 결과 주요 특징 기재
	9	정학·유급·퇴학 경험이 있다 <u>(학교폭력의 문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다).</u>	- 경험이 있는 경우 횟수, 기간 등 기재
	10	학업성취도가 높다(학습에 대한 의욕 및 동기가 높다).	- 높다(낮다)의 학업성취도의 근거, 학업점수, 등수 등 기재, 별도의 재능이 뛰어난 경우 해당 내용 기재 예) 교과목 시험에서 전과목 80점 이상 받음. 영어수업을 좋아하며, 영어시험에서는 항상 90점 이상이다.
	11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 필요한 특수교육 및 사유 기재

 나사 부ル
 추분 부위
 大隆 PO HV호보공 PO 부 NK
 所 PO PO HV호보공 PO 부 NK

		항목	작성내용
	12	섭식 문제가 있다.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 섭식문제 있는 해당항목 체크 및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13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분노 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 행동,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인터넷 등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향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	- <u>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u>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문제행동	14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 <u>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u>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15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밥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하게 서툴다.	- 해당 항목 있을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16	학습의욕이 저조하다.(학습 장애 포함, <u>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게 어렵거나,</u> 숫자를 다루거나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u>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u>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학습의욕이 저조하다는 사유 기재
	17	아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 <u>지능이 낮거나(경계선급</u> <u>지능수준)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다).</u>	- <u>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u>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지적정애가 의심되는 사유 기재

		항목	작성내용
분리보호	18	아동은 원가정외 보호를 희망한다.	-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 이유 등 기재(부모와의 애착정도) ※ 아동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따라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시 반영 예) 조부모, 친인척,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관련	19	아동은 원가정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 아동과 부모의 애착정도에 따라 희망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사유 기재필요 정기적 만남 희망과 주기가 너무 길 경우 이유, 상항파악 기재
소견		예) 아동상황 점검한 결과 정신건강·의료적 욕구에서 주의 집중을 하지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검토 못하고, 사회적·교육적 욕구에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문제행동으로 충돌조 정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거나

 나사 무사
 추부 부8版
 杯室 P스비사호보공 0 부1版
 市 Polity
 市 Polity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아 동 카 드

※ [ ]에는 해당	<u>당되는 곳에 "√"</u>	표시를 합	합니다.								(앞쪽)
보호의뢰	[ ] 유기	[ ] [	기혼부모·혼	일 [	] []0						
사유	[] 가출	[ ] E	비행·부랑	[ ]	아동학대						
(※중복	[ ] 보호자	빈곤・설	실직 [ ] 년	보호자 사당	망 [ ] 보호자	질병	\$				
체크 가능)	[ ] 보호자	수감	[ ] 부모	이혼 [	] 기타				발생 당시	사진	
	[ ] 신원 호	학인	[ ]	신원 불명					2001		
신원 확인	* 신원 불당	명 시, 「a	실종아동법,	제6조에 대	다른 신상카드 작	성					
여부	182 신고	[ ] [	유 [ ] 두	<u> </u>							
	_	L J I	1 [ ] [								
	성명						주민등	록번호			
	등록기준지						나이				
	0 71 1211						-1-1	세	([ ]추정 [	]화식)	
01 ⊏	주소							* 11	(1101	]72/	
아 동	1 —										
	학교명				기타						
			학교	학년							
	발생 일시		발생 일시 발생								
		성명					주민등	로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				
<del></del>	관계 주소	성명						록번호 호(휴대전화	화번호)		
보호자	주소	성명	새화 스즈				전화번호		화번호)		
보호자			생활 수준		 	<u>-</u>				· 1 대전 [	]원세
보호자	주소 월수입	원	생활 수준 [		5 [ ]하 [ ]수급	급자	전화번호		[ ]자가 [	· ]전세 [	]월세
보호자	주소		생활 수준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거	호(휴대전		[ ]전세 [	]월세
보호자	주소 월수입 관계	원성명	생활 수준 [		생년월일 년	급자	전화번호 주거	호(휴대전	[ ]자가 [ 직업	[ ]전세 [	]월세
	주소 월수입	원	생활 수준 [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월	전화번호 주거 일 (	호(휴대전 <u>화</u>	[ ]자가 [	[ ]전세 [	]월세
보호자 기족관계	주소 월수입 관계 관계	원 성명 성명	생활 수준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전화번호 주거 일 (	호(휴대전 <u>화</u>	[ ]자가 [ 직업 직업	[ ]전세 [	]월세
	주소 월수입 관계	원성명	생활 수준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월	전화번호 주거 일 ( 일 (	호(휴대전호 세) 세)	[ ]자가 [ 직업	[ ]전세 [	]월세
	주소 월수입 관계 관계	원 성명 성명	생활 수준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월	전화번호 주거 일 ( 일 (	호(휴대전호 세) 세)	[ ]자가 [ 직업 직업	[ ]전세 [	]월세
	주소 월수입 관계 관계	원 성명 성명	생활 수준 [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월	전화번호 주거 일 ( 일 (	호(휴대전호 세) 세)	[ ]자가 [ 직업 직업	[ ]전세 [	]월세
	주소 월수입 관계 관계 관계	원 성명 성명 성명	]	]상 [ ] R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월	전화번호 주거 일 ( 일 (	호(휴대전호 세) 세)	[ ]자가 [ 직업 직업 직업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보호조치	주소 월수입 관계 관계 관계	원 성명 성명 성명	년	<u>월</u> 일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월	전화번호 주거 일 ( 일 (	호(휴대전호 세) 세)	[ ]자가 [ 직업 직업 직업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주소 월수입 관계 관계 관계 보자 보호조치	원 성명 성명 성명	년 /정위탁	<u>월</u> 일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생년월일 년	월	전화번호 주거 일 ( 일 (	호(휴대전호 세) 세)	[ ]자가 [ 직업 직업 직업	[ ]전세 [	]월세

	 				(	뉘쏙)
가정환경 (성장 과정)						
상담자 의견						
지도·판정						
금품 지급사항						
	7101	작성일	Ę	<u> </u>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Д	너명 또는	: 인)

297mm×210mm[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완료)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분리보호 확정된 직후
작성목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함
작성방법	-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 개별보호·관리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보호조치 변경 시 현행화됨
활용방법	- 보호대상이동의 필수서식으로 아동 보호조치 시, 사례이관 시 기초자료

	항목	작성내용			
보호의뢰 사유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가출, 비행·부랑, 아동학대, 보호자 빈곤·실직, 보호자 사망, 보호자 질병, 보호자 수감, 부모 이혼, 기타	보호의뢰 사유 해당 항목 확인			
신원	신원확인, 신원불명 182신고 유, 무	- 아동의 신원확인 유·무 - 실종아동 신고 유·무			
아동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학교명, 기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 신원확인 유에 해당 시 관련 내용 기록 - 유기된 아동일 경우 해당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월수입, 생활수준, 주거	- 보호자 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 확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u>보호조</u> 치 사항	날짜, 보호조치 유형, 보호시설명, 주소	- 보호조치일 - 보호유형 예)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양 등 - 보호시설명 및 주소 기재			
	가정환경(성장과정)	- 가족관계, 형제·자매관계, 경제적상황 등 기록			
	상담자 의견	- 보호자 상담을 통해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종합적 의견			
	지도 판정	- 가정환경 및 상담자 의견을 통해 주요 욕구 등을 반영한 최종 내용			
	금품지급사항	- 이전에 받은 지원 내역 확인			
	작성일, 소속, 직위, 성명	- 시·군·구 담당자 정보 기재			

#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기 [ ]	마유 (※중복 체크 가능) [ ]미혼부모·혼외자 [ ]미아 [ ]가출 [ ]비행·부랑 [ ]아동학대 빈곤·실직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질병 [ ]보호자 수감 [ ]부모 이혼 [ ]기타									사진
		<u>    신상카드 작성</u>		182신고						
[ ] 신원 확인 [ ] 신원 불명			[ ]	유 []무						
아동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피해아동)	주민등록주소자						연락처(집	/휴대전화	)	
	실거주지									
	관계	성명		성별 [	]남	[ ]0	4	생년월일		
보호자 (아동학대 행위자)	주민등록주소자			'			연락처(집	l/휴대전화	)	
ଅମଧ୍ୟ)	실거주지						직업			
	ㅁ소년소년가		브루주스	  가구 ㅁ조손	가구 c	] 미호무	부가구 c	고동체가	구 ㅁ기	EH )
가구유형		ㅁ북한이탈주민가구						00 " 1		, ,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				년	월	일 (	(세)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아동의 욕구(우	2서수의)								
	이용의 국가(국 [ ]안전	- [ ]건강	[	]일상생활 f	 우지	[ ];	 가 <del>족</del> 관계	[	]사회적	 관계
	[ ]경제	[ ]교육	[				생활환경	[	-	_ " 및 권익보장
	[ ]기타(	)								
	관찰된 (피해)C	) 동의 특성:								
욕구조사										
결과	보호자의 욕구	**								
		[ ]건강		]일상생활 유					]사회적	
	[ ]경제	[ ]교육	[	]고용		[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								
	관찰된 보호자	의 특성: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계획										
	보호조치 일자			보호	의뢰기관	기관(시설)명: 기관(시설)종류:				
	욕구영역		단기목표		5	당기목표	서비스내용			
아동 서비스										
계획										
	[ ]상담 [	]사례관리 연	년계 [ ]금품X	급	[ ]기타 (	) ※ き	등복체크 가능			
원가정 지원(복귀) 계획	지원 내용 <b>원가정 지원(복귀)</b>									
담당자 의견										
수립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 <u>보호유형 변경, 위탁가정 변경, 타 시·군·구 사례이관 시 보호계획 변경</u>
작성목적	- 접수상담 및 이동·친부모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이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이동을 보호하게 될 보호기관(가정)에서 제공할 서비스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사례관리 계획
작성방법	<ul> <li>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li> <li>원가정지원(복귀)계획의 경우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피해아동보호계획 갈음의 경우</li> <li>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중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피해아동보호계획으로 갈음</li> <li>아동·친부모상황점검, 욕구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li> <li>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 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li> <li>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등 칸에 작성</li> <li>예) 출생 시 몸무게 2.5 이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만성적 질병으로 빈번한 입원, 치료, 알레르기, 지속적 약복용, 아토피,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 불가,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li> </ul>
활용방법	- 원가정외 보호기관 서비스 계획수립, 아동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등 아동의 보호종료(원가정 복귀)시점까지
기타	- 개별보호·관리계획(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항목	작성내용			
아동, 보호자, 가구유형, 가족사항, 욕구조사 결과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등 칸에 작성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록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 체크 후 드림스타트로 사례이관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제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요양원, 입양	-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대상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보호계획	기타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쉼터, 장애인거주시설로 보호조치 시 관· 내용을 공문으로 해당 부서로 사례이관(아동보호팀에 이관하지 않으며, 시스· 에서는 심의결과까지 입력 후 종결)			
	보호조치일자, 보호의뢰기관	- <u>시설입소 날짜 등</u> , 해당 원가정외 보호기관명 및 시설종류 기재 예) 기관(시설)명: 하늘 천사원 기관(시설)종류: 양육시설			
아동 서비스 제공계획	욕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포	-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성장 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등 칸에 작성 ※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에 2021년 건강검진 사업 안내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계획 등			
원가정 지원 상담, 사례관리 연계, (복귀)계획 금품지급, 기타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기재예) 분기별 상담 및 취업정보(국비지원 미용자격증 취득과정) 제공 - 입양아동의 경우 작성 제외			
	담당자 의견	- 아동과 보호자와 종합적인 보호계획 의견 정리			
	<u>수립일</u>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개별보호·괸	리		=	월 '	ΩI		관리번호					
계획 수립일	일		큰	걸	일	아동녹	취시설 담	당자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아동정보	보호2 (아동복지	•					보호	기관				
	보호조	<u>치일</u>		년	월 일		점 검	일	년	월	일 (	차)
	욕구영역	단기	목된	<del>I</del> 장기	서비스	느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비스 제공에 서비스 적절성			
개별보호・												
관리계획점검												
_ , , ,												
 아동	 ·의 상황		(아동	등 <u>보호조</u> 치의	 나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서비 <u>-</u>	 _ 만족 등	 : 기술〉			
(만족도, 보호		노등)			. – ,		_ ,,		,			
	[ ] 아동의	.l 원가정방	,문 ( 	)회 [ ]	외부장소	만남( )호	[ ] 전	화( )회	[]기타(	) <u> </u>	총[	] 회
원가정점검	아동과 보 관계향성			동과 보호자	의 심리·정/	서적 변화 정	迂〉					
	원가정지	원내용	(원	가정 지원계	획 대비〉							
	① 현 보호	유지										
점검 후	② 보호계	획 변경(							)			
조치계획	③ 보호조	치 변경(							)			

④ 보호종결([]연령도래[]원가정복귀[]기타(

직급(직위)

〈조사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 의견 작성〉

담당자 의견

소속

양육상황 점검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u>(고유 업무)</u>
시기	- 아동 분리 보호조치 1차(1개월 이내) 이후 3개월 주기로 실시 - 보호 중 아동의 다른 욕구 발생 시(서비스 변경) -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거나 보호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의 제공서비스 및 아동 변화 정도 점검 - 원가정 점검을 통한 가정복귀 시점, 가족 변화 정도 파악
작성방법	- 아동, 친부모(보호자),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 상담(유선, 대면 등)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항목 기록 -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여부 등 ※ 필요시 아동, 친부모 상황점검표 활용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차수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결과 등
활용방법	- 보호계획 변경,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u>보호종결</u> 등

	항목	작성내용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아동 담당자(상담원, 생활복지사) 성명 기재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보호조치	-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의 보호(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호~6호 해당)조치사항			
아동정보	보호기관	- 아동이 보호되는 기관명 예) 00가정위탁지원센터, 00보육원			
	<u>보호조치일</u>	- 시설입소 날짜			
	점검일	- 아동을 보호조치이후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날짜			
	욕구영역 및 목표	- 욕구조사 결과(시스템 자동 연동)			
개별보호·관리 계획 점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에 따른 욕구점검 및 평가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한 아동서비스 제공 계획에 맞게 받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기관 기재 - 아동 및 양육자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적절성, 목적 달성, 아동의 변화(신체변화, 심리·정서 상황, 교육 상태 등) 등을 기재			

항	목	작성내용
아동으 (만족도, 보호조	상황  치, 서비스 등)	<ul> <li>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 등을 기재 (아동의 실제 욕구 등 파악)</li> <li>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li> <li>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등</li> </ul>
		- 아동이 보호자가 있는 원가정 방문횟수(보호기관에서 확인), 식당, 카페 등 외부장소에서 만남 횟수, 전화회수 등 확인하여 체크
원가정점검	아동과 보호자 간의 관계향상 정도	- 아동과 보호자 만남, 전화통화 등을 통해 관계향상 정도, 아동의 보호자심리· 정서적 변화 정도 기재(아동의 변화에 대해 보육사, 상담원, 위탁부모를 통해 확인 가능)
	원가정지원내용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했던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의 달성 정도 및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 정도 기재
점검 후	조치계획	<ul> <li>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후 종합적인 양육상황 결과 기재</li> <li>① 현보호유지: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아동의 변화가 긍정적인 경우</li> <li>② 보호계획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원가정외 보호기관 해당사유 확인 후 보호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 계획 변경 실시(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거쳐 변경해야함)</li> <li>③ 보호조치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아동이 부정적이거나, 아동이 현보호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변경 실시(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거쳐 변경해야함)</li> <li>④ 보호조치 종결: 아동이 원가정 복귀하거나 연령도래로 종결할 경우(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종결함)</li> </ul>
담당자	↑ 의견	- 양육상황점검 결과에 따른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종합적 소견(객관적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 추측성 작성 금지)
소속, 직	급, 성명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의 소속, 직급, 서명 기재

# 가정 복귀 점검표

작성일 0000.00.00

아동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보호유형	보호기관(연락처)		보호예정	
보호조치일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아동과의 관계	거주지 주소	

번호	평 가 항 목	평기	ŀV	특이사항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예	아니오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 지적장애( ), 우울( ), 기타( )  □ 신체장애: 장애종류( )  □ 질 환 명:	예	아니오	
3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직업: □ 근로시간	예	아니오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평균 만원 □ 부채: 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예	아니오	

번호	평 가 항 목	평기	ŀV	특이사항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	예	아니오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 월세: (보증금: )	예	아니오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예	아니오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예	아니오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예	아니오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예	아니오	
	소견   원가정 복귀 합성 여부)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분리 보호된 아동이 <u>원가정복귀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비학대아동)</u>
작성목적	- 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원가정 복귀의 적합성 여부 판단
작성방법	- 친부모 면담(가정방문) 등 통해 기재 -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운영,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자료(원가정 만남, 지원내용,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점검 - 친부모 연락 및 점검사항에 대해 필요시 원가정외 보호기관 협조
활용방법	- 본 점검표는 학대이외의 아동이 원가정 복귀시 활용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며, 본 점검표는 해당사항 없음

	항목	작성내용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해당 항목 체크 및 특이사항에 정도 및 강도 등 기재 ※ 해당항목의 횟수, 강도가 높을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해야함. 특히 - 피해아동으로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면밀히 검토 -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된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면밀히 검토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 지적장애( ), 우울( ), 기타( )      신체장애: 장애종류( )      절 환 명:	- 해당항목 체크 및 해당 장애의 등급 또는 강도, 해당 장애로 인해 아동 양육 가능여부를 기재(사후관리 시 해당 문제로 아동양육 확인) - 해당항목의 강도가 높을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3	부모(최소 1인)의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다 부 다 직업: 다 근로시간  다 모 다 직업: 다 근로시간	- 아동양육 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근로시간이 길 경우 아동양육 공백시간에 대한 계획에 기재

	항목	작성내용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소득: 평균 만원	- 부모의 총소득금액 기재, 소득은 안정적이나 부채의 정도가 클 경우(부채탕감 방식 확인) 특이사항 기재, 소득이 불안정이나, 부채비율이 없거나 낮을 경우 '아동양육계획서' 확인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	- 해당 항목이 아동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해당 문제에 대해 치료계획 여부 확인,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된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자가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 소득대비 월세비율확인, 부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ul><li>거주지 안정, 위치, 해당 층수, 위생상태, 아동의 독립공간 등 확인(양육계획서 참고)</li><li>거주지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이전 계획 등 확인</li></ul>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 분리보호 시점이후 아동과의 만남 정도 체크(활동 내역), 만남이후 아동의 태도 등 확인(아동이 친부모 만남 이후 아동태도 변화는 담당 상담원(위탁부모) 확인) - 서식9 '양육상황점검'에서 원가정과의 만남 및 지원 등 확인 - 분리보호조치 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 사유 작성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 재결합 사유 확인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물품, 아동의 독립 공간 여부 등 확인 - 아동물품 구입 필요성 및 구입계획, 아동의 독립공간이 없을 경우 주거지 활용계획, 이사 계획 등

 나사 무사
 투부 부
 大陸 Р
 변
 P
 비
 P
 비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

원가정외 보호기관 공통서식(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환경 조사서' 별도 작성)

### ○○○기관

수 신∶○○ 시장

가정 복귀 의견서									
	아동명			성별					
이동	생년월일(연령)	( )세		보호	호조치일	0000. 00	. 00		
시승	주소								
	보호시설명								
	성명					성별			
	거주상태	자기	·/전세/월세		강이	라의 관계			
보호 예정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과의 지속적인 정도 등)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	학교	비고	
   가족									
관계									
	아동의 의사〈부모와의 관계 포함〉								
0174	거주예정 가정환경								
의견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원가정외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소속	작성일 직위	0000.	.00.00 직급	성명			

작 성 자	-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						
시 기 - 분리 보호된 아동이 <u>원가정복귀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비학대아동)</u>							
작성목적	- 원가정의 점검 및 아동의 복귀 의사 확인						
작성방법	- 원가정외 보호기관 담당자는 보호예정자의 면담(가정방문)을 통해 작성 - 가정 복귀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						
활용방법	- 가정 복귀 점검표, 종결심사서 등 <u>※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며, 본 의견서는 해당사항 없음</u>						

	항목	작성내용
아동	아동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조치일, 주소, 보호시설명	- 아동 정보 기재 - <u>시설입소 날짜</u> 등
보호예정자	성명, 성별, 거주상태, 아동의 관계, 수급 여부, 기타	- 보호예정자 정보 기재
가족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 함께 거주하게 될 가 <del>족구</del> 성원의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등 기재
	아동의 의사	- 가정 복귀를 원하는지, 부모와의 관계 및 감정 등을 상담 후 기재
	거주예정 가정환경	- 방 개수, 크기, 위치(안전여부, 층수), 아동물품 등 준비상황 등 기재
의견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 양육계획서 또는 친부모상황점검표 내용 확인(직업, 수입, 근로시간), 아동 양육태도(양육태도 점검리스트 질문 확인)
	원가정외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 아동과 부모의 변화정도 및 원가정 복귀에 대한 담당자 의견 기재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 아동이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내용 및 최종 평가를 기재

# 종 결 심 사 서

관리번호				보호유형					
<u>보호조치일</u>	년 월	월 일		종결심사일	년	월	일		
종결유형	<u>□ 원가정                                   </u>	복귀	□ 연령도래에 ( )	다른 퇴소 □ (	<u>입양성립</u>				
구분				평 가 영 역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개별보호·관리계	획, 재평가 등 과정 등 종현	합하여 작성〉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종결사례평가			〈서비스 제공과정, {	양육환경 조사결과 등 종학	합하여 작성〉				
사후관리계획									
기타									
				작성일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 인)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분리보호 된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
작성목적	- 사례결정위원회 상정하여 아동의 보호종결을 심사하기 위함
작성방법	- 양육상황점검, 가정 복귀 점검표, 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 원가정 외 보호기관 담당자(상담원), 친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통해 작성
활용방법	-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자료,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

항목	작성내용
관리번호 보호유형 <u>보호조치일,</u> 종결심사일	- 관리번호 자동 연동 - 현재 보호되고 있는 유형 기재 예)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u>시설입소 날짜</u> , 심사일 기재
종결유형	- 원가정 복귀, 연령도래 , 입양성립 등 기재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수립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의 일치성, 재사정 단계(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 및 평가)확인 후 작성 - 아동이 장기 보호되었다가 종결할 경우 최종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만 작성(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상황점검표 참고)
종결사례평가	- 원가정외 보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과정(원가정외 보호기관), 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계획서, 양육 상황점검표, 가정 복귀 점검표 등을 바탕으로 작성
사후관리계획	-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 1년이내 4회 사후관리 계획 등 내용포함 - 연령도래로 종결하는 아동의 경우 사후관리 계획(5년) 등 포함(자립지원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주택마련, 취업, 학업 등) 작성

# 양 육 계 획 서

□ 귀가 아동의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입소시설명 (위탁→입양포함)	신청인과의 관계	비고						
□ 귀가신청인(보호자)	□ 귀가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 양육계획										
○ 주거계획 										
	□ 자가	□전세(임대)	□ 월세							
아동과 함께 생활 힐	가주지 주소 :									
○ 생활비 조달계획										
직업:	□ 정규직 □ 계	예약직 □ 일용직 □자	남영업 □ 기타(	)						
월수입: 출퇴근 시간 (										
현재 수입 없는 경우 양육비 마련 계획 :										

### ○ 양육계획

- 교육 계획
- 등·하교(원) 계획 :
- 주변에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 이 외 보호자의 기타 양육 계획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해당 정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하거나 위탁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작성

작 성 자	- 보호자
시기	- 보호자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원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보호자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함
작성방법	- 보호자가 직접 작성
활용방법	- 가정 복귀 의견서, 가정 복귀 점검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후관리 시 참고 자료
기타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

항목	작성내용
귀가 아동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입소시설명, 신청인과의 관계 등 작성
귀가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 성명(친권자, 후견인 등), 생년월일, 주소 등 기재
양육계획	- 주거계획, 생활비 조달계획, 양육계획 작성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 복귀 점검표 작성 시 가정방문하여 '양육계획서' 작성된 내용 점검

#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회의종류		] 보호조치 결정	□ 보호조치 변경	□ 보호종료 결정	□기타		
안건							
참석자	이름(소속)					충	西0
회의내용							
	보호조치 결정						
의결사항	보호조치 변경						
	보호종료 결정						
특이사항 등							

# ● <u>작성방법</u>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아동을 분리보호조치 시,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보호종료 시
작성목적	- 심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함
작성방법	- 심의 과정 작성
활용방법	- 분리보호조치, 변경, 종료의 결정 근거자료

항목	작성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 사례결정위원회의 일자 및 장소 기재
회의종류	- 아동별로 해당사항에 체크 ※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은 아동별로 기재
안건	- 회의 종류에 따른 상세 안건 기재 예) 가정위탁보호 중 아동 비행으로 인해 위탁부모와의 잦은 갈등 발생, 위탁부모 소진으로 가정위탁 보호 종결 요청하여 아동을 양육시설로 보호조치를 변경하고자함
참석자	- 사례결정위원회 명단 기재
회의내용	- 안건에 대한 과정 및 주요내용 기재
의결사항	- 회의내용의 결과 기재
특이사항	- 회의내용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기재

# <u>사 례 회 의 록</u>

회의 일자		회의 장소		
업무단계			· 관리계획 □ 보호조치 결정/변경 :종결 □사후관리 □ 기타	
안건				
참석자	이름(소속)		ā	· Bo
회의내용				
특이사항등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시·군·구 사례회의 시(아동보호 모든 단계)
작성목적	- 내부 사례회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함
작성방법	- 사례회의 과정 작성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관련 모든 과정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항목	작성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 사례회의 일자 및 장소 기재
업무단계	- 아동별로 해당사항에 체크 ※ 사례회의록은 아동별로 기재
안건	- 회의 종류에 따른 상세 안건 기재 예) 보호자가 수감됨 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 계획 논의
참석자	- 사례회의 참석 명단 기재
회의내용	-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 및 주요 결과 기재
특이사항	- 회의내용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기재

		보호길	멸정( <u></u>	변경) 등	통지서			(앞쪽)
대 아	상동	성명 주소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보 시 (기	호 설 관)	보호유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시설(기관)명 ( <u>피해아동의 경우 미기재</u>						
결정(t	변경) 일	자		조치 일자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약	위와 같이	아동보호를	결정(변경)히	i'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연	일
야동	•보호	자 귀하	시장・	군수ㆍ	구청징	인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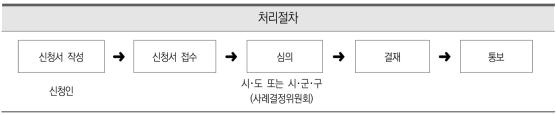
- 1. 보호기가 동안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 전입신고 처리 시 현재 가정 내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중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 3. 시설입소 후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으로 전학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설 적응 등으로 인해 전학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시적으로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에 교환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 아동은 입소한 시설 내 생활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규칙은 시설마다 상이함(휴대폰 사용 금지 등)
- 5. 시설 입소 후 보호자의 아동면회가 아동의 시설 부적응 및 정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 동안 아동에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의 동의를 통해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7.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입소한 시설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을 재확인하여 전원조치 될 수 있습니다.
- 8. 추후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정복귀 점검 등)에 따라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심	의 후 2일	
117101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아동	가정위탁 또는 입소 (	겨월일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노 예정	연월일	
	시설명			전화번호			
대상 시설 	주소(소재지)						
퇴소 사유							
	시행령」제21조의2제 소[ ]를 신청합니다.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저	11조의5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u>!</u>	보호조치의	종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	E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m²]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1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HEIOL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아동	입소(가정위탁) 연월일 퇴소(가정			복귀) 예정 연월일		
	시설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상 시설	주소(소재지)					
가정 복귀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Character State Control of the Contr	첨부서류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 안내사항

- 1. 아동이 학대행위자가 거주하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상담·교육·치료 등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상담·교육·치료 등에 참여한 경우 처리기간 산정 기준을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후 2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m²]

# 사후관리 점검표

							사우판다	I일	닌	펄	일	(	1^(
	아동명(성별)			(□남	□여)		생년월일(	연령)				( )	)세
	연락처				학교((대	학)	(	)₫	㎞(어린	<u>-</u> l이집)(	) 5	학년(	과)
) 아동	주소	시	·도 ,	시・군・국	구 <u></u>	읍·면·	동	5	1				
*10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부,	피해아동,	질환 등)									
	성명(성별)					생년월	월일(연령)				(	)세	
	아동과의 관계					거	주상태		자	가/전세	/월세	/기E	ł
보호자	주소	시	·도 시·	·군·구	읍·[	변·동		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수	급 🗀	수급		월	실소득		만원		원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1)			비.	ユ	
가족 관계													
	보호자의 양육태도				·								
	아동학대 의심상황	□언어학	대 [	□신체학	·대 [	그방임		학대					
아동 면담	아동 외 가족 갈등상황	□언어폭력 □신체폭력 □부부싸움 □심각한 갈등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직장생활 및 사회적 관계)		1 -	<u> </u>	, L				IL EC				
보호자	아동과의 관계	아동에 대	한 감정, 양	육참여, 성	상호작용 등	5							
면담	아동양육의 어려움 유무												
	기타	필요 서비	스(부모욕구,	, 아동 <del>욕</del>	구), 출퇴근	시간 등	+						
	종합의견												
	년 월 일 ○○○시·군·구 소속 직급 성명: (인)												

# ● <u>작성방법</u>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원가정복귀 후 1개월 이내 1차 이후 분기별 점검
작성목적	- 아동이 가정복귀(자립)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함
작성방법	- 가정방문, 유선 등 진행 후 작성
활용방법	- 사후 관리 중 타 서비스 필요 시

	항목	작성내용
	아동	- 아동의 기본 정보 및 현재 학교 정보 기재
	보호자	- 보호자 기본정보 기재, 양육계획서와 변경된 사항 확인 ※ 자립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기재
	가족관계	- 가족구성원의 기본 정보 기재, 양육계획서와 변경된 사항 확인
	보호자 양육태도	- 아동 면담을 통해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를 작성 예) 모는 아동의 자기 전에 아동과 대화를 함
아동	아동학대 의심상황	- 부모(보호자)가 아동학대 의심행동을 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 예) 부가 아동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함
면담	아동 외 가족갈등상황	- 보호자 이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여부 등 작성 ※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아동양육이 부정적영향이 있는지 확인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 (직장생활 및 사회적 관계)	- 아동이 학교(어린이집)생활 및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여 작성 - 자립아동의 경우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 작성
	아동과의 관계	- 보호자가 가정복귀 후 아동과의 관계정도(아동에 대한 감정, 양육참여, 상호 작용 등)를 작성
보호자 면담	아동양육의 어려움 유무	- 아동 양육의 어려운 점 확인하고 작성, 보호자가 양육교육 등 원할 경우 해당 정보 제공
	기타	- 필요 서비스(부모욕구, 아동욕구), 출퇴근시간 등 작성
	종합의견	- 아동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종합적 의견 작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712 UHH.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				생년월일			
	부	주소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신청인		직업				월수입			원
(위탁부모)		성명				생년월일			
	모	주소				전화번호(휴대전	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부동산								
가구·재산 대의 [건물: 매] [기타: ]									
기구 세년	농산   기수				전세[]월	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기조기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위탁 아동과의 관계	[ ] 친인	<u>l</u> 척 외	[] 친조모 [] 외조부 의 혈족, 4촌 이내의 인		조부모 외(관기	네:))			
위탁유형		· 가정위탁		가정위탁		[ ] 일시기	가정위탁		
「아동복지법 시형	뱅령」제14	조제1항 및 깉	는 법 시행규칙 저	5조제1항0	베 따라 위외	같이 가정위틱	t보호를 신청합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탁부모)	부 모		또는 인) 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	는 시장	·군수·구	<b>청장</b> 귀하						
			-	기자리					
신청서 작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부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모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가족 관계	관계	[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71710151114								

가정위탁보호 동기(사회적 이타심, 가족체계 강화, 종교적 이념 실천 등)

가정환경(가족관계, 가족분위기, 물리적 양육환경 등 전반적 가정환경)

가구소득(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수준)	충족	미충족
양육 및 교육환경(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 인정 여부 등)	충족	미충족
위탁부모 나이(25세 이상(부부 모두 해당),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충족	미충족

(뒤쪽 <u>)</u>	
 충족	

자녀 수(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4명(위탁아동 포함) 이내, 단 18세 이상 자녀 제외)	충족	미충족
가구원 전력(가구원의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마약·알코올·약물중독·정신질환 전력 여부)	충족	미충족
(해당 서류 제출 시) 전문위탁가정기준 충족여부		항목
	(가옥, 나   다목 중	목(1)~7)), 중 표기)
※ 필요서류 별첨		
특이사항		

조사자 의견			충족	미충족
조사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	명 또는 인)
			· ·	0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한 예비위탁가정에 대해 가정조사를 회신합니다.

> 년 일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3. 19.〉

#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직	위			
요청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u>\$</u> :		)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 여권번호 또 등록번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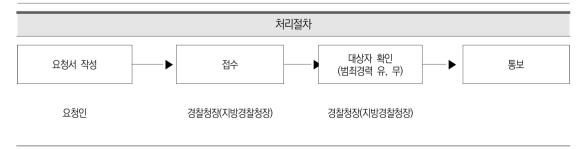
「아동복지법」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19.〉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대 상 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 - 여권번호 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아동복지법」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OF2Z)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요국)
	성명			직위		
요청인	기관명					
	주소			(전호	화번호:	)
		한글	, , , , , , , , , , , , , , , , , , ,	다국어		
	성명	한자	Ç	 경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0	기국인인 경우: 부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주소		·			
아동 [	대상 성범죄	[ ] 있음		[	] 없음	
성인 [	대상 성범죄	[ ] 있음		[	] 없음	
 가정폭력 관련 범죄		[ ] 있음		[	] 없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		[ ] 있음		[	] 없음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한함)		[ ] 있음		[	] 없음	

「아동복지법」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일

# 위탁부모 추천서

OIF.I I I	성명(부)		생년	월일				
위탁부모	성명(모)		생년	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자택전화		휴대관	프번호				
	주 소			관계				
추천자	추천사유							
본인은 위탁부모와년개월 동안 알고 지내고 있으며, 상기 위탁부모는 위탁부모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기	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주소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1. 위탁기간 : 년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위탁유형 : □ 일반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 일시위탁가정

본인은 아동복지법에 제15조에 의하여 아동 (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귀 센터에 위임하며, 기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20 월 일 년

(인) 보호자:

#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우리 가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리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에 있어 가족 전원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위탁양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6				

20 년 월 일

신청인: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치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아동복지법」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제2호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탁아동	주 소	주 소							
	자택전	화							
		성명	생년월일						
	부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위탁부모		성명	생년월일						
	모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위탁유형	[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일							
위탁아동과의		[ ] 친인척 ([ ]친조부 [ ]친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조부모 외(관계:))							
관계		인척 외 착: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P CHO SE STIFFE II SE STIFFE I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						
발급용도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음.	(11— 12—2021 1 - 112)						
위 아동은 「아동		_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또는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일시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이름	
FILLIOIT	주민등록번호	
대상아동	주소	
	연락처	
	이름	
위탁부모	주민등록번호	
TIÄTI	주소	
	연락처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연장신청 정보	보호 연장기간	
	보호 연장사유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ما⊏	성명		생년월일						
아동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e-mail(사이브	_ 10(10/01	로 □ 시설·: 	기관 내방					
사후관리 주기	□ 년1회 □ 6	6개월마다 🗆 3개월마다	□ 기타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말한다. 사후관리 7 하며, 불가피한 경약 ※ 연령도달로 보호 <u>하는 것에 대한</u> ※ 상기의 개인정보	본 동의서는 보호종료 후 5년(1년)간 사후관리(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내용은 내부 자료로 보관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연령도달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5년, 원가정 복귀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1년간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함께 노력한다. 사회 옹호하기 위해 최선	회복지사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아동과	날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공유해야 하며, 아동의 권익을 을 요청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아동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아동과 사례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동의확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	다. 동의권자 동의획득자	( .0 = =/					

		복지	대성	상자	시설 입	소(0	)[용)	신청사	†		처리?	간 10일
	성	명			민등록번호			시설입소(			전화번호	
신청인				2)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1관계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II 서	01	성 명			주민등록반 (외국인등록:					업소 :)시설		
시 설 입 소	01	주 소								입소		
(이용)		' <del>-</del>			スロニュル	ı <del>s</del>			기	<u>간</u>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반 (외국인등록)					입소 :)시설		
	02				(-11201)	/				<u>// IE</u> 입소		
		주 소							기	간		
	노	-인복지시		① 양로 ④ 노인	!시설  요양공동생활기	정	② 上的 ⑤ 기E	민 <del>공동</del> 생활가 나(	정 )	(3	) 노인요양	시설 
				① 아동	양육시설			5일시보호시	설		아동보호	
	0	사자부러			지원시설  생활가정		⑤ 아는 ⑧ 기E	등전용시설 나(		)	) 아동상담 <u>:</u>	<u></u>
				① 지처		<u></u>	2 /	기각장애인 7	<sup></sup> 선주시설			
입 소	장애인			③ 성식 ⑤ 중증	t•언어장애인거 ·장애인거주시실	수시설 I	(4) <i>J</i> (6) <i>Z</i>	시적장애인거 당애영유아거	수시설 주시설			
(이용)		복지시설	≐	⑦ 장아	l인공동생활가정	3	8 7	상애인단기거	추시설	`		
시 설					l인직업재활시설 l가 <del>족복</del> 지시설		(I)		디이워 ㄷ	) ¬ тігілій	발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안 내	,	한부모가	족	<ul><li>② 부자</li></ul>	가족복지시설	(□ 기본	생활지원형	□ 공동생활기	「원형 [	] 자립생		
		복지시설	4	③ 미혼 ④ 익사	모자가족 복지  지원 복지시설	시설 (🗆	] 기본생활	지원형 🗆 공	동생활지원	<sup>일형)</sup>		
	0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	숙인복지	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 E	1									
입소(												
(이용) 사 유												
<u></u> 통지		TITIOT	H/F	.17			(01.40)			7 7151/		
방법	Ш	선사우년 	년(E-M	iail <i>)</i>	□ 문자메시지	서비스(	(21/15)	□ 시번 	L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처이	· <del>-</del>		월 <i>(</i>	일 ᄱᄪᄄᆈᅅ	
특별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건강진단사 기타, 관련		_	설 및 노인요양공	동생활기	 남정에 입소	하고자하는 경	  우에 한	함)		
		1 1, 11	- 00.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입원 (입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뢰 아동	주소		
보 호 시 설	시설(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장 성명	
시 <u>결</u> (기관)	소재지		

입원(입소) 의뢰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아동을 귀 시설(기관)에 입원(입소)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전문치료기관・요양소의 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시설명				대표자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	주소			보호 개시일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 연월	일					
공고		H0101771	[ ] 있음		(의견)						
사항	공고 결과	부양의무자 출현	[ ] 없음								

「입양특례법」제9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대상 아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년

첨부서류	없음
------	----

#### 유의사항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입 양 동 의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		
아동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호		
동의자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u></u> 호		
동의자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	조제1항에 따	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영	5에 동의합 월	나다.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	<u>-</u> 는 인)
	귀하					
「입양특례법 것에 동의합L	」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형 IC.	방에 따라 본인	<u>기</u> 은		에게 입영	양되는
X " O 12				년	월	일
☞ 아동이 1	아 3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동 성명			(서명 또	드는 인)
10 1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로 친생부모의 등	동의를 받을 수 없	없음을 증명하는	: 서류 1부(후	<sup>호</sup> 견인이
				210mmv′	007mm[HHAFT]	00~/m²l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아동	성 명	생년월일										
VI <del>S</del>	주 소											
	구 분	[ ] 배치결정 [ ] 보호방식변경 [ ] 원가정 복귀										
	내 용	·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사 유	ㆍ 상황 변경 발생 사유를 상세히 기록										
	계 획	·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기록										
「입양특	례법」제38조제1	항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장 [인]											
시장・급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입양동의 철회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아동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	록번호			
동의자	<b>주</b> 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합니다.		제3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	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u></u> 철회
				년		월	일
		동의 철회자 성명				(서명 또	는 인)
	귀하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치

입양기관보관용 시·군·구제출용

##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ㅇㅇㅇ 아동의 부모인 ㅇㅇㅇ, ㅇㅇㅇ는 *가정방문/면담(으)*로 xx(입양기관), ㅇㅇㅇ(으)로부터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아동 적응 및 발달 등 상태 확인 ( )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
- 수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제공 ( )

년 월 일

부: 000 (인) 모: ○○○ (인)

## [별지 제1호서식]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성명					성별		남·여		연령		
실종	소재지	소재지			'							
아동 등	연락처											
	중요특정	중요특징										
	신장	체	격	얼굴	형		두빌	ļ		착의사	항	그 밖의 신체특징
신체 및 외적사항	cm	1. 야 2. 비 3. 보	대	<ol> <li>등근형</li> <li>긴형</li> <li>삼각형</li> <li>역삼각</li> <li>네모형</li> </ol>	형	1. 장발 2. 단발 3. 삭발	2	1. 곱슬 2. 파마 3. 카트	상의	하의	신발	_
신고 내용												
처리 결과												
		성	명									
		소:	속									
신고자		주:	소									
		연르	낙처									
	실종0	등	등과의	관계								
				접수자 직	년 · 소속 급(위) 성명	:	일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							
	성	명			성별	(	번호 )	1.남	2.여 🗦	주민등록	록번호	호	(당시	.  서	, 추정/확·	실)		
	발견	<u> </u> 일자		년	월	일	발견 (주	[지역 소)				'				•	사진	부착
     인적	발견 장소	번호 ( )	9. 터미	l트 2. 빌 l널·역 10 상 16. P(	). 종교	J시설(j	· 4. 놀 교회·성	이터 5. 당·절 등	<del>5</del> ) 11.	공원 1	12	산 13.	버스	-정류장				×4cm)
사항	부층	장소	시설(기	관)명:				번호 (		아동독 부랑인		시설 (1시설 !	2. 전 5. 노	인복지	지시설 3. 시설 6. 정	정신요 신의료	양시설 기관	
및			연락처	:				주소 :										
기본	입소(원	원)동기																
사항	응급	진료		초입원일자	ł				진료 <i>/</i> (전화:	<u> 년호</u> )					응급진료조 행정기관망			
		1		병 명					응급진료	<u> 사항</u>								
	확	<u>!</u> 고자 인		확인일자					확인기	' 관								
	행려 선	l병자 정	5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격병자 <u></u> 선호	<b>\</b>			'급여 별	) 종
	치	0}	번호 ( )	1. 정상 8. 때운	2. 틀 이빨	니 3. 9. 임플	뻐드렁! 플란트	니 4. 용 10. 기E	남 5. K	금니 6 )	. 은	니 7.	의치	J	네아 특징	서술:		
	눈 !	로 양	번호 ( )	1. 특징	없음	2. 쌍7	쌤풀 있	음 3. 씽	항께풀 입	남음 4.	기E	H(		)				
	얼글	굴 색	번호 ( )	1. 보통	2. 검	은 편	3. 흰	편 4. 기	타(		)							
	ਭੌ	터	번호 ( )	1. 머리 9. 발 1(	2. 얼 ). 기태	굴 3. 計()	팔 4	손 5. 등	6. 몸	통 7.	둔부	8. 다	리	모양	서술:			
	수술	자국	번호 ( )	1. 머리 7. 둔부	2. 얼 8. 다	굴 3. 리 9.	팔 4. 발 10.	손 5. 등 기타(	6. 몸	통 )				모양	서술:			
신	7	점	번호 ( )	1. 머리 7. 둔부					6. 몸	통 )				모양	서술:			
체	문	신	번호 ( )	1. 머리 7. 둔부					6. 몸	통 )				모양	서술:			
징	병	력	번호 ( )	1. 뇌질환 4. 그 밖 6. 기타(	의 내		_		글절 등)		장애 유형	(	<u>[호</u> ) -2	2. 지 3. 정	적장애(1a  폐성장애(  신장애(1a  복장애(  타(	1급, 2급	급, 3급)	
	신장	CM	체 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절 귈 형	1. 삼 2. 역 3. 계 4. 사	삼각형 란형	두발 색상	1. 를 2. 빌 3. 빈 4. 길	백 백	두발 형태	4. <del>1</del>	긴 곱슬 긴 퍼머	긴 생머리 머리 5. 쩗 머리 7. 찗	은 곱 은 퍼	합은 생머 슬머리 버머리	리
	체 중	kg	번호 ( )	5. 특이치 6. 기타 ( )	ll형	번호 ( )	5. 둥	근형 름한형	변호 ( )	⊣қ о	택 타 )	번호 ( )	10. 12.	짧은 스 대머리	9. 묶음( 포츠형 11 13. 기타	. 보통	가르마머	리 )
	그 밖의	의 특징												·전자 INA)	번호 ( )	1. Ā		미채취

(뒤쪼)

												(117/		
		전체 옷차림	빈오  -		H 8. 속옷차	3. 작업복차림 4. 원 림 9. 투피스 10. 원				넴	)			
			번호 ( ) 예)1-4	1. 긴팔         2. 반팔	8. 유니폼 9.	바 3. 캐주얼 4. 운 와이셔츠·남방 10. 4. 브라우스 15. 기	코트류 1	1. 티셔츠						
	실종	상 의	신호	7. 녹색계통		통 3. 회색계통 4. 발 통 9. 풀색계통 10. ( ) 15.		통 11. 분			5			
	(입소) 당시			1. 가로줄두 3. 알 수 G		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	5. 물방울·	무늬 6. 꽃무늬	7. 기타(		)		
			상 표	- 명										
	옷차림			1. 긴										
옷 차	X 10		( <sup>-</sup> -)	1. 성성마시 2. 분용복 3. 삼옷 4. 시마 5. 유니폼 6. 언마시 7. 성마시 7. 성마시 1-4 2. 짧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12. 알 수 없음										
림 · 소		하 의	건호  -	7. 녹색계통	통 2. 검은색계 통 8. 노란색계 계통 14. 기타	통 3. 회색계통 4. 별 통 9. 풀색계통 10. ( ) 15.	발간색계통 보라색계 알 수 없	통 11. 분	색계통 6. 갈색계 분홍색계통 12. 주	통    황색계통	Ē			
고 지 품			( )	7. 기타(	일의 2. 세로줄 ) 8.	무늬 3. 체크무늬 4. 알 수 없음	민무늬 !	5. 물방울	무늬 6. 꽃무늬					
			상 표	상 표 명										
고		번호	1. 운동화	.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발길이 발길이 발길이 발길이 했다.										
	실종	( )	8. 단화 9	.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sup>멜길이</sup> 때										
밖 의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	8. 노란색; 14. 기타(	계통 9. 풀	색계통 3. 회식 색계통 10. 보 ) 15. 알 수	내계통 4. 빨간색계통 라색계통 11. 분홍식 · 없음	5. 파란  계통 12.	색계통 6. . 주황색계	갈색계통 7. 녹  통 13. 하늘색계	색계통   통	·			
정			상 표 명											
보	안경	번호 ( )				네 5. 무테 6. 선 <del>글</del> 리								
	모자	번호 ( )		통 9. 노란	색계통 10. 풀	1통 4 회색계통 5. ' 색계통 11. 보라색? ) 16. 알 수 없	통 12. 분							
	시ᅰ	₩₩			8. 귀걸이 4. 필	달찌		не	1. 휴대폰 2. 7	가방 3.	시계			
	신체	번호 ( )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소지품	번호 ( )	4. 기타(			)		
	장신구	( )	상세설명(			)		( )	상세설명(			)		
		가다하	<u>                                     </u>			ı						·		
	보호													
	개요		당시 상황											
			경위 등			=								
	보호	Ç	견월일	<u></u>	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E	기고		
	아동등													
	조치													
	사항													
							성명 :			(서명	또는 '	날인)		
작							소속:			, ,0				
	THHOI		13	ଥା ଠା		작 성 자								
성	작성일		년	월 일			직급 :							
자							연락처 :							
						관할경찰서명								

[별지 저	2호의	2서식]〈신	<u>년</u> 설 20(	08.7.3	31>									(앞쪽)
						신	상	카 .	<u>=</u>					
		성명			성팀	를 <u>번호</u>		l. 남 2. 여 주	민등록	번호			출생신고	당시
	인	주소			,			'		,			사진 부	착
	적	출생 일자			년 월	월 일						(3cm × 4	cm)	
	사	출생	1. 지	·택:		시(도) 구(군)					동(읍, 년	면)		
	항		2. 병	원(병원	원명:	담당의:				전화:		)		
		장소	3. 7	타(					)					
		치아	번호 ( )	1	상 2. 틀니 치 8. 때운					6. 은니	)	치0 특정	) 서술:	
		눈모양	번호 ( )	1. =	투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깨풀	없음	4. 기타(		,	)	
		얼굴색	번호 ( )	1. 5	보통 2. 검은	은 편 3.	흰 [	면 4. 기타(			)			
		흉터	번호 ( )	1	H리 2. 얼굴 탄부 8. 다리				몸통	)	모양	서술:		
     아동		수술 자국	번호 ( )		H리 2. 얼굴 E부 8. 다리				몸통	)	모양	서술:		
	신	점	번호 ( )	1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다리 9. 발 10. 기타( )				)	모양	서술:		
	체 특 징	장애 유무	번호 ( )	1	유 2. 무		·애 ·형	번호 ( ) 예)1-2	2. 3. 4.	지적장애 자폐성장 정신장애 중복장애 기타(	애(1급, (1급, 2	2급, 3급)	급) )	
		신장	CM	체 . 격	1. 비만 2. 건장	절 권 형	2. 9	남각형 격삼각형 계란형	누 발 색 상	1. 흑색 2. 백색 2. 반배	ᆲ	3. 짧은 상 4. 긴 곱슬 5. 짧은 곱	:머리 ) ) )	
		체중	kg	번호 ( )	3. 보통 4. 왜소 5. <b>爭糖</b> 6. 기타 ( )	번호 ( )	5. 등	사각형 5근형 '남름한형 'IFF )	번호 ()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번호 ( )	6. 긴 퍼( 7. 짧은 파 8. 단발머리 10. 짧은 : 11. 보통 2 12. 대머리 13. 기타(	(머머리 리 9. 묶음머리 스포츠형 가르마머리	
		그 밖의 특징												

(뒤쪽)

	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비고
부 모	부							
	모							
	성명			신고	일자	ı	년 1	월 일
신고인	아동과의 관계	번호 ( )	1. 부 2. 모	3. 동거	친족 4.	기타(	)	
	주소					전화번호		
	※ 육하원	칙에 따라 상서	하게 기록					
출생신고								
기간경과								
사 유								
					성명:		(서명 또	는 날인)
エレノナリ	작 성		ଥ ଠା	<b>エレ</b> ルエリ	소속:			
작성자	연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연락처:			

[별지 제4호서식]

	실종(	아동등 인숙	수확인	·L서	
	성명				
	주소				
인수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종아동 등과의 관계				
	성명			성별	남·여
실종아동 등의	주민등록번호				
관련사항	실종 년월일				
	발견일자				
「실종이동 등의 인수함을 확인합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저	1항의 규정()	의하여 실종아동 등을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9.〉

	보	호시설에 있	!는 미성	년자 후	견인	지정신	청서	
		주소						
	I 서 I 크T L	보호시설명		보호경	경위			
	성년자	성명		성발	<u> </u>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서	, 월)		
		주소						
	년인 지정 신청자	직업		직장명	<b>d</b>		직위	
	-0.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있는 미성년자의 후 <sup>.</sup> 후견인의 지정을 신		· 법률」제3조	제2항·제	3항 및 같	은 법 시형	행령 제3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틀	[별자치시	장·시장·군수·구	<b>청장</b> 귀하					
구	미세크	10. 기즈교게기로 나	ᄢᄱᅝᅜᄶᄜ	ᆸᄼᄀᆝᄌᄀᄓᆌᄀᆝᅧ	크 나랑이다.	교육 소대 니·	기 어느	수수료
비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없 음				

210×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단사의 후선 식	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멸시 세3호서식 	] (개성 2	014.11.19.7			
	부임	당의무자 확인 공고	<u>1</u>			사진	
	성명		성별	남ㆍ여		3cm×4cm	l
   미성년자	00		연령	人	1		
인적사항	주소						
	특징						
부양의무자, 그 밖의 보호자	성명			미성년자 와의 관계			
나동니서	시설명			대표자			
보호시설 	보호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후견인	성명						
TUU	주소						
참고사항							
	    있는 미성년/ 신고하여 주시	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기 바랍니다.	제4조0	따라 부양의두	가 확인	공고를 i	하오니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개별보호·관리계획서)

1. 아동 기:	본 정보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피해아동 (아동)	등록기준지							연락처(집/휴대전호	화)
, , , ,	실거주지								
	관계	성명		성별	[ ] [	<u> </u>	여	생년월일	
아동학대	등록기준지							연락처(집/휴대전호	站)
행위자 (보호자)	실거주지	01.	V 01	1112				T 71	
( 1)	직업	결 <sup>2</sup>	<b>-</b> 입	생활 원	수준 [ ]		[ ]하	주거 [ ]수급자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유형	[ ]일반가정 [ ]모자가정(/ [ ]미혼모가정 [ ]친 부+동/	걸 [	11 110	(이혼) 1가정	[ ]. [ ].		(기출) 모	[ ]부자가정(가출) [ ]모자가정(별거) [ ]친모+계부 [ ]입양가정	[ ]부자가정(별거) [ ]미혼부가정 [ ]친인척보호 [ ]시설보호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일 월	일 (	세)	직업	동거여부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 년	일 월	일 (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일 월	일 (	세)	직업	
Ⅱ. 사건 및	조치 정보								
	신고접수일시				접수경.	로			
				F	12 행정전화	<u> </u>		[ ]129 [ ]내방	
	신고접수내용			L ] (	50L-	4		[ ]410	
사건개요 (피해아동)	아동학대조사내용	2							
	사례판단결과 (중								
	[ ]신체학대 사례판단 소견		[ ]정서학대	H	[	]성학대		[ ]방임(빙	(임유형 : ) 

	피해아동 조치계획								
	[ ] 보호체계 유지								
	[ ]사례관리 연계								
	[ ] 아동보호전문기 (아보전명:	' 관 [ ]드림스타트 [ ]& )	G·면·동서비스 연계 [ ]	희망복지원단					
	[ ]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 ]상담·지도 [ [ ]가정위탁 [	]연고자 대리양육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상황 점검 주기	[ ] 개월					
	[ ]전문치료기관(0 [ ]입양 [ ]기타 :	동보호전문기관)・요양소	원가정 점검 주기	[ ] 개월					
	보호조치 일자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기관(시설)종류:							
	[ ]응급조치 (아동혁	l대처벌법 제12조)							
		[ ] 2호(격리)	[ ] 3호(보호시설 인도) (보호시설명:)	[ ] 4호(의료기관 인도) (병원명:)					
	응급조치 일시	1/01 = =1-11 = 1	응급조치자						
보호계획		형(아동학대처벌법제47조)	[]임시보호명령						
"-	청구일자 [	]	-17/74T/WOL [	1					
	결정일자 [		청구(결정)법원 [	J					
	결정결과	인용[ ] 기각 [ ]	[ ]2층/펀기트시그	TI) [ ]45/H50FH					
	[ ]1호(퇴거·격리) [ ]2호(접근금지) [ ]3호(전기통신금지) [ ]4호(보호위탁)								
	[ ]5호(치료위탁) [ ]5의2호(상담·치료위탁) [ ]6호 (가정위탁)								
	[ ]7호 (친권행사 제한·정지) [ ]8호(후견인권한 제한·정지) [ ]9호(의사표시 갈음결정)								
	아동학대행위자 조치	계획 							
	[ ]지 <del>속</del> 관찰								
	[ ]법적조치 및 관리		ו אודומן						
	[ ]고발 사건담당 경찰서(검찰	[ ]고소 알) 사건처리결과	[]인지수사 []수사중 [	]내사종결 [ ]송치					
		물/ 시민시니말되 동학대처벌법 제13조)	[ ] 7/16 [	]4K105 [ ]0N					
	[ ]1호(격리)	[ ]2호(접근금지)	[ ]3호(전기통신금지)						
	[ ]임시조치(아동학	대처벌법 제14조,15조)							
	요청(신청)일자	[	]						
	결정일자	[	]						
	결정결과	인용[ ] 기각 [ ]	결정법원						
	[ ]1호(퇴거·격리)	[ ]2호(접근금지) [	]3호(전기통신금지) [ ]4호	호(친권·후견인 제한,정지)					
	[ ]5호(상담・교육)	[ ]6호(의료기관 등위탁) [	]7호(유치장·구치소 유치)						

	[ ]친권 제한·상실(아동복지법 제18조)							
		[ ]친권행사 제한						
		[ ]기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타 시설 또 (시설 또는 쉼터	는 쉼터입소 려명:)	[ ]가출	[ ]이 외 (	)			
	[]가정복귀							
	종료 법적 근거	[ ]0	동복지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2	제47조			
Ⅲ. 대상자 기	지원 정보							
	아동의 욕구(우	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대상자 욕구	[ ]기타(			)				
(욕구조사결과)	보호자의 욕구(	우선순위)						
	[ ]안전	[ ]건강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			)				
	개입필요	ГЫЛ	자기모표		א וטנו			
	욕구·문제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명			
대상자								
지원 계획								
	[ ]상담 [	]사례관리 연계 [	]금품지급 [ ]기타	.∵.즈	복체크 가능			
가정복귀	지원 내용	]시네한 <u>니</u> 전계 [		×6.	<u> </u>			
지원계획								
담당자	소견							
	_							
수립	일		통보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가정복귀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 가. 가정복귀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동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경우 동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및 가정 복귀가 진행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 (친인척 가정위탁, 대리양육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보호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이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절차에 따라 아동 및 보호자의 전반적인 양육 환경 및 상황 등을 확인하고,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가정 복귀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나. 가정복귀 절차

### ① 아보전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절차) △아동 및 보호자 의사 확인 △가정복귀 기본요건 확인 △양육환경점검(심리평가 및 면담, 가정환경조사, 가정복귀 계획 수립) △가정복귀프로그램 이수확인서발급 등 진행 (약 3개월 이상 소요)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보호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적응 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기능 유지 등을 위해 진행되는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발급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 해당 절차에 거부·회피 하시는 경우 가정복귀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② 아동가정복귀 신청

(신청) 아동입소중인 쉼터 또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

#### (구비서류)

- 아동귀가신청서
- · 가정복귀프로그램 이수확인서

## ③ 시·군·구 가정복귀 여부판단 결정

### ④ 아보전 사후관리

### (시청인)

아동가정복귀 이후 아동 안전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상담(유선,방문등) 진행협조

#### 다. 사후관리 안내

- 1.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가정복귀 진행 이후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아동의 안전여부 확인 위한 아동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상담 (유선 또는 방문)이 진행됩니다.
- 2.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3. 필요 시 아동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 또는 문제해결 위해 본 기관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절차에 대해 동의하고, 위 절차에 따른 귀 기관의 조치에 대해 적극협조 할 것을 약속합니다.

> 월 일 년

> > (인) 신청인 :

제 2020 - ○○호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입소시설 소재지	입소시설명	비고
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비고
보호자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기간 및 결과

일자	대상	진행기관	프로그램 내용
01.03	<i>아동</i>	서울아보전	1회기 : 가족의 의미
01.10	<i>아동</i>	서울아보전	2회기 : 재결합 관련 정서 다루기
01.12	공통	서울아보전	1회기 : 기관 내 만남
01.03	보호자	은평아보전	1회기 : 아동에 대한 이해

본 대상자는 00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과정을 성실히 이수완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직인

제 2020 - ○○호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입소시설 소재지	입소시설명	비고
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비고
보호자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기간 및 결과

일자	대상	진행기관	프로그램 내용

본 대상자는 가정복귀 프로그램 과정을 성실히 이수완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가	정환경	조사사	†						
※ [ ]에는 해당도	는 곳에 "√" 표시	를 합니다.									
담당자				제출	들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령 만 ()사	1					전화번호				
아동 (귀가대상자)	교육기관 명	학교	학년	기타							
(11: 1-110: 1)	보호조치 내용			보호조치 날	짜						
	보호시설 명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직업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귀가신청자)	소득(월수입)	원	생활수준 [ ]일반 [ ]차상위	[ ]수급지 [ ]저소득			주거	[	]자가 [	]전세 [	]월세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 점검결과 내용(	에 따라 아래 해		 3								
	[1.아동]										
	1-1. 심리평가	및 면담 실시 결과	(심리정서상타	1)							
아동 및 보호자 심신상태	□ 실시 - 검사기관명 - 검사일자 : - 관련 심리 당	: 평가자 소견 작성 :									
	□ 미실시 (사	유기재) / (미실시현	<u> 경</u> 우 1-2문학	항 체크하지	않음)						

	1-2. 심리치료 진행 결과
	□ 실시 (아래내용 작성) - 치료기관명 :
	- 치료내용 :
	- 치료기간 :
	- 관련 심리치료 소견 작성(심리치료사 작성) :
	□ 미실시(사유기재)
	1-3. 신체건강상태 (질병 또는 장애 여부)
	□ 해당 없음
	□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 )
	1-4. 가정 복귀 의사
	□ 있음 □ 없음 □ 확인불가 (사유)
•	1-5. 보호시설에서 아동 적응상태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 보호자]
	2-1. 심리평가 및 상담 결과
	□ 실시
	- 검사기관명 : - 검사일자 :
	- 관련 심리 평가자 소견 작성 :
	□ 미실시 (사유기재)
	2-2. 심리치료 실시 여부
	□ 실시 (아래내용 작성)
	- 치료기관명 :
	- 치료내용 :
	- 치료기간 : - 관련 심리치료 소견 작성(심리치료사 작성) :
	- 미실시(사유기재)
	2-3. 신체건강상태 (질병 또는 장애여부)
	□ 질병 (질병 명 : )
	□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 )
	2-4. 가정 복귀 의사
	□ 있음 □ 없음

	[1. 보호자 요인]
	1-1.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내용 및 결과
	□ 이수 - 프로그램 진행기간 : □ 미이수 (사유작성)
	1-2. 가정복귀 프로그램 참여의지 및 태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1-3. 검찰처분·법원 명령 결정에 따른 이행 결과
	□ 검찰처분 또는 법원 명령 결정 없음 □ 검찰처분 또는 법원 명령 결정 있음 - 결정내용 : - 이행내용 :
	1-4. 보호자가 학대가 발생했던 당시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
	- 긍정적 변화 내용 기재
양육 환경	1-5. 양육 계획
	- 교육계획  • 교육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  • 등,하원(교) 계획 :  • 방과 후 계획 :  - 아동이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 계획 :
	1-6. 다른 보호자 여부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있음 -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사 확인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없음
	[2. 환경 요인]
	2-1. 가정 내 청결 상태(※ 사진 필수 첨부)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2. 양육 환경 조성 정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종합 소견	- 아동보호솔루션회의 결과 및 담당자 소견 (가정환경 확인 위해 파악 및 수집한 모든 자료 첨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여번 체크항목 체크라(√)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1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Ø □ 아니오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아니오 🗆 4 예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13 예 🗆 아니오 □ 두려워 한다. 예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오 □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15 아니오 🗆 경우 예 🗆 (학대 의심 상황 : 1개 문항 이상 "예"로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 행 월**: 2021년 6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http://www.mohw.go.kr